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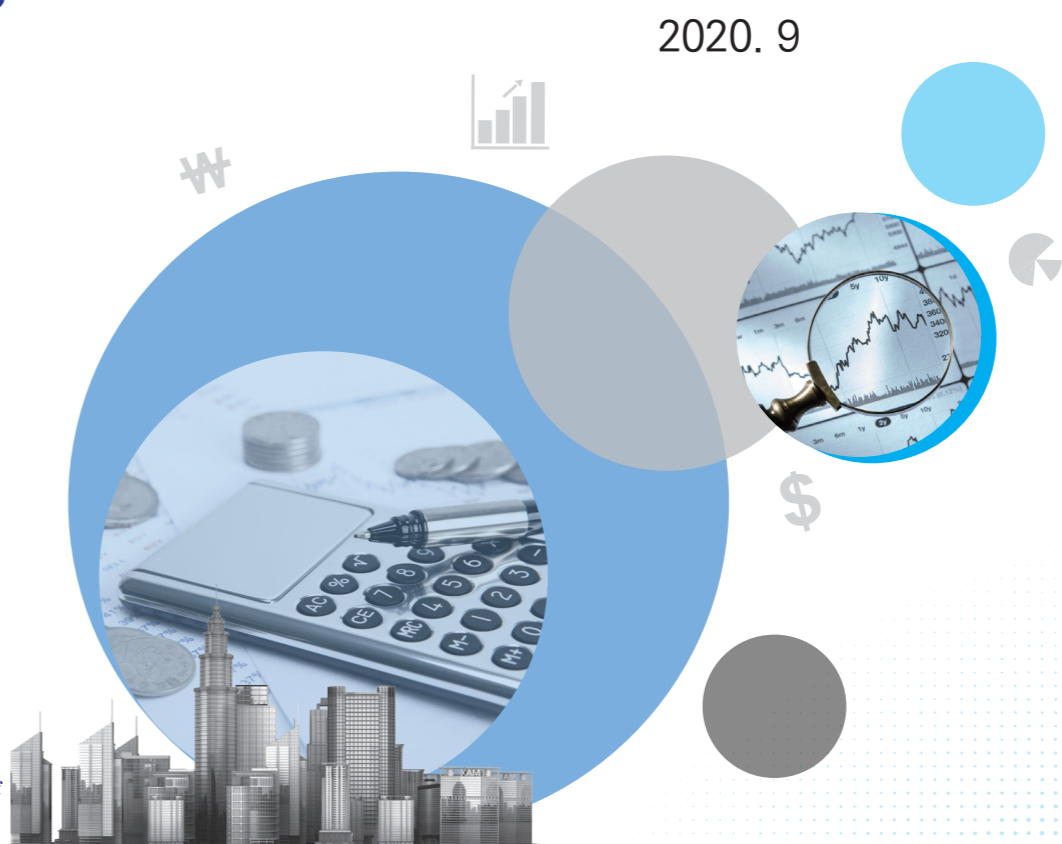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0.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020.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조교수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1. 연구개요

- 본 연구는 본 특례제도의 주목적인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달성 여부를 분석하고 본 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종합평가를 수행함
 - 본 특례제도는 2020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2018년 9월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무화 법안이 도입되어 적용기한 종료 전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본 특례제도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제도임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0.1%(지급기일 15일 이내) 또는 0.2%(지급기일 15일 초과 60일 이내)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 단,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
 - 본 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2억~4억원 수준으로 작음

- 상생결제제도란 거래기업(협력사)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를 말함
 - 동 제도는 잘못된 자금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대금지급 안정성 등을 확대하고 연쇄부도 가능성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됨

2. 효과성 평가

가.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 및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전체 흑자법인 대비 제도의 활용 정도를 보여주는 절대적 활용도를 분석한 결과, 본 특례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기업 수 및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0.01%도 되지 않는 수준임
-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기업, 중소기업 경영안정 부문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한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특례제도를 활용한 기업 등 세 가지 기준 대비 본 특례제도의 상대적 활용도 역시 0.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개인사업자의 절대적, 상대적 활용도도 매우 낮은 수준임

<표 1> 법인기업의 절대적 활용도

(단위: 개, 억원, %)

구분	수혜기업 수와 전체 흑자기업 수 대비 비중		수혜금액과 총 산출세액 대비 비중	
	2017	2018	2017	2018
신고연도				
전체 기업	29(0.007)	40(0.009)	2(0.0003)	3(0.009)
중소기업	29(0.008)	39(0.010)	2(0.0015)	3(0.0019)

주: 1. () 안은 비중임

2. 중견기업은 2017년 12월부터 본 특례제도 적용 대상임

3. 중견기업의 전체 흑자기업 대비 비중은 자료 없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8-2019)

<표 2> 법인기업의 상대적 활용도

(단위: %)

구분	수혜기업 수 기준				수혜금액 기준			
	기준1 ¹⁾		기준2 ²⁾	기준3 ³⁾	기준1 ¹⁾		기준2 ²⁾	기준3 ³⁾
신고연도	전체	중소	중소	중소	전체	중소	중소	중소
2017	0.06	0.07	0.02	0.01	0.003	0.014	0.02	0.02
2018	0.07	0.08	0.02	0.02	0.004	0.017	0.03	0.02

주: 1) 세액공제 신청 전체 기업 대비 본 특례제도 활용도

2) 중소기업 경영안정 부문 조세지원제도 대비 본 특례제도 활용도

3)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제도 대비 본 특례제도 활용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8-2019)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뿐 아니라 낮은 공제혜택 수준과 비현실적인 적용 요건 등이 제도 이용 유인을 저해한 때문으로 파악됨

- 백강(20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설문표본의 38.7%가 본 세액공제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제도이용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것은 공제대상금액이 크지 않을뿐더러 공제율 수준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본 특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거나 기업 경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 본 특례제도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본 특례제도의 세제 혜택 외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대비 상생결제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의 비중은 10~14% 수준이고,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증가분 대비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증가분의 비중은 14~26% 정도로 나타남
 - 상생결제 세액공제제도의 낮은 실효성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기여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표 3〉 상생결제 활용도에 대한 본 특례제도의 기여도 추정

(단위: %)

구분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대비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비중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증가분 대비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증가분 비중	
	2017	2018	2017~2018	2016~2018
신고연도				
개인사업자 미포함	9.6	10.6	14.1	19.3
개인사업자 포함	12.6	14.0	19.2	25.6

주: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와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8~2019)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중소기업 결제환경 및 경영성과 개선 효과

- 본 특례제도가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 이는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의 어음결제 비중은 감소하고 현금결제 비중은 증가해 온 것을 볼 때,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상생결제제도 이용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

- 하지만 업종, 매출액 규모, 수·위탁 여부 등에 따라 어음결제 비중이 여전히 10%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상생결제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제조업이 건설업, 서비스업에 비해 어음결제 비중이 더 높음
 -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어음결제 비중이 높고, 매출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평균 어음결제 비중은 18% 수준에 이릅니다
 - 수탁기업의 경우 평균 어음결제 비중이 16% 수준으로 위탁기업이나 수·위탁이 없는 기업의 비중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준임
- 본 특례제도의 어음 수취·지급·결제기일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 수취·지급기일은 30일, 결제기일은 60일과 90일로 나타나고 연도별 변동이 거의 없음
 - 이는 기업경영 현장에서 관행상 또는 기업운영 편의상 따르는 수취·지급·결제기일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함

〈표 4〉 판매대금 평균 수취비율

(단위: %)

사업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금	76.1	78.7	82.1	81.8	86.9
어음대체용 현금 ¹⁾	10.6	7.3	6.2	9.2	3.5
어음	13.3	14.0	11.7	9.0	9.6

주: 1)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2014~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5〉 판매대금 평균 수취비율(제조업, 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매출액 규모별			수·위탁기업별		
		25억 미만	25~100억	100억 이상	위탁	수탁	없음
현금	85.2	87.3	83.6	76.2	89.2	78.6	91.0
어음대체용 현금 ¹⁾	3.7	3.5	3.5	5.5	2.2	5.8	1.8
어음	11.1	9.2	12.9	18.2	8.6	15.6	7.2

주: 1)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본 특례제도의 중소기업 경영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이나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세특례 공제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간 성과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공제혜택 경험이 있는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공제혜택 경험이 없는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두 집단 간 매출액 격차는 2014년 286억원에서 2018년 375억원으로 확대됨
 - 영업이익 격차 역시 2014년 20억원에서 2018년 28억원으로 확대됨
 - 당기순이익의 경우, 두 집단간 격차는 2018년 20억원으로 2014년 21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음
 - 하지만 매출액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향을 보여 본 조세특례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 간 성과지표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매출액, 영업이익 등의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혜기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성은 제도 설계상 경영성과지표가 낮은 수준인 기업들에 본 특례제도 이용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시사하므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6〉 본 특례제도 수혜 유·무 경험 중소기업 간 성과지표 비교

(단위: 백만원)

신고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차이	28,600***	28,325***	29,726***	30,371***	37,528***
영업이익 차이	1,998**	2,452**	1,946	1,685	2,841**
당기순이익 차이	2,056***	2,474**	1,786*	2,053*	2,001*

주: 1. 수혜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고 비수혜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은 있으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의미

2.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타당성 평가

가. 정부 개입의 필요성

- 경제 및 경영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금융의 관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본 특례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됨
- 최근 경제 및 경영 상황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악화되고 어음 활용 및 부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들은 최근 악화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상황은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과 경기 악화로 이어져 어음 활용 및 부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본 특례제도는 어음의 대체수단 중 하나인 상생결제 이용을 장려하여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많고 부도 위험이 높은 어음의 이용 비율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어음 이용과 부도율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이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업종,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여전히 어음결제 비중이 높은 경우가 존재함
 - 어음의 경우 늦은 결제일로 인한 자금 운용의 어려움, 할인에 따른 비용, 연쇄부도 위험 등 여러 부작용이 존재함
 - 이에 반해 상생결제는 할인비용이 낮고 현금 유동성이 높으며 연쇄부도 위험이 없는 등 중소기업 결제환경을 개선하기에 많은 장점이 있음

나.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다른 제도와의 중복성

- 상생결제제도는 특정 기업집단 간 거래가 아닌 대·중견·중소기업 간 일반거래에 적용되므로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하여 본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조정이 요구됨
 - 상생결제제도의 특성상 최상위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가 발생해야만 1~N차 협력기업 간 거래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으로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세특례의 적용 요건인 현금성 결제 비중 및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제도 이용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상생결제를 많이 이용하면 오히려 본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는 현금성 결제 비중 산출 시 상생결제가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지 않아서 현금성 결제 비중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 따라서 상생결제를 현금성 결제로 간주하여 현금성 결제 비중을 산출하거나 현금성 결제 비중 산출 시 전체 결제금액에서 상생결제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은 기업이 성장하거나 거래 규모가 증가할 경우 어음 결제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어음결제 비중은 유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
 - 따라서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을 삭제하거나 기준을 금액이 아닌 비중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동 요건을 삭제하더라도 현금성 결제에 상생결제가 포함된다면 현금성 결제 비중이 유지 또는 증가할 것이므로 어음 비중은 유지 또는 감소할 것임

- 본 조세특례의 공제혜택 수준은 다소 낮아 제도 이용 유인을 제공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므로 공제혜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현행 공제율 수준이 낮아서 일정 수준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규모가 상당해야 함
 -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기준 본 특례제도 수혜기업의 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최소 1,840억 원에서 최대 3,680억원으로 추정됨
- 하지만 중소기업의 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15억원 수준이고, 하위 거래단계의 협력기업들의 경우는 1억~3억원 수준에 불과함
-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되 기업 규모 또는 상생결제 지급금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 또는 지급금액 규모가 작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우선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평균적인 매출액 규모와 여러 결제수단 중 상생결제 이용 비중 등을 고려하면 현행 공제율 수준에서 중소기업의 공제혜택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
- 낮은 공제율 수준으로 공제혜택 수준은 이미 낮은데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더욱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므로, 공제율 인상과 최저한세 적용 해제에 대한 검토도 함께할 필요가 있어 보임

<표 7> 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과 세액공제액(2018년 기준)

(단위: 백만원)

상생결제 지급금액(추정)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액 (최저한세 적용 전)	실질 세액공제액 (최저한세 적용 후)
최댓값	최솟값		
368,000	184,000	368	7

주: 최솟값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액/0.1%, 최댓값은 상생결제 세액공제 대상액/0.2%로 산출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지급기일에 따른 공제율 적용구간을 세분화하여 지급기일 단축을 유도하고 공제율 적용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제조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60% 이상은 어음 지급·수취기일이 평균 30일로 나타남
 - 상생결제 이용기업의 평균 지급기일도 31~35일로 나타남
 -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행태를 기준으로 지급기일 구간을 15일 이내, 15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60일 이내로 세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새로운 구간을 적용하게 되면 지급기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지급기일을 30일 이내로 줄이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
- 15일 초과 30일 이내 구간의 공제율은 다른 두 구간의 공제율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음

<표 8>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 및 수취기일 분포(제조업, 2013~2019)

(단위: %)

구분	15일 이내	16~29일	30일	31~59일	60일	60일 초과
지급기일	8.9	6.7	66.1	6.9	8.8	2.7
수취기일	7.8	5.2	65.0	6.2	12.8	2.9

자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재정지출제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본 제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 하지만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1~N차 협력기업 간 거래에만 상생결제 이용 유인이 존재하고, 최상위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에는 유인이 없음
 - 본 특례제도는 최상위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상생결제 이용 유인을 제공하므로 두 정책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음

4.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될 필요가 있음
 -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결제 환경과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본 특례제도를 통해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최근 악화된 경제 및 경영 여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어음 결제 및 부도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본 특례제도는 현재 그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고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세특례의 실효성이 낮은 것은 기업들의 제도이용 유인을 저해하는 제도상 문제들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면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 특례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적용 요건, 공제율, 지급기일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만 함
 -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중견·중소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으로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존재하지 않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금액 유지요건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함
 - 상생결제를 현금성 결제로 인정하거나 현금성 결제 비중 산출 시 전체 결제금액에서 상생결제금액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은 삭제하거나 금액이 아닌 비중으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공제율 인상을 검토하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우선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공제혜택의 수준은 상생결제 지급금액 규모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급금액의 규모가 작은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공제율 수준 결정 시 본 특례제도 이전에 운영되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참고할 수 있음
 -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은 0.5%로, 본 특례제도의 최대 공제율인 0.2%보다 2.5배 높은 수준임
 - 또한 다양한 현금성 결제금액을 고려하는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액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므로, 본 특례제도의 공제혜택 수준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공제혜택 수준에 상응하기 위한 공제율 수준은 0.5%를 초과할 수도 있음

- 하지만 공제율의 급격한 인상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최대 공제율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율 인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공제율 인상과 함께 최저한세의 적용 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중소기업들의 어음 지급·수취기일이 평균 30일인 것을 감안하여 지급기일 구간을 15일 이내, 15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60일 이내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때 15일 초과 30일 이내 구간의 공제율은 최대 공제율과 최소 공제율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음

<표 9> 본 특례제도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비교

(단위: %)

구분	적용대상액	공제율		
		15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상생결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	0.2	0.1	0.1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환어음 등 ¹⁾ 지급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0.5	0.5	0.15

주: 1) 환어음 등에는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7조의4

목 차

I. 서론	19
II.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및 현황	23
1. 제도 개요 및 연혁	25
2.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의 위상	27
III. 상생결제제도 개요 및 현황	31
1. 제도 개요	33
2. 운영 현황	37
IV. 효과성 평가	49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목표 달성 여부 평가	51
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활용도	51
나.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에 대한 본 특례제도의 기여도	69
2. 경제적 효과성	72
가.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효과	72
나.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선 효과	86
V. 타당성 평가	91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93
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94
나. 자금조달 여건	97
다. 경제상황에 따른 어음의 활용 및 부도	106
라. 소결	109

2.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의 적절성	111
가. 지원 대상	111
나. 지원 방법 및 지원 규모	114
다. 소결	119
3. 재정지출 및 다른 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121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23
참고문헌	130
부 록	133

표 목 차

<표 II-1> 제도 주요 연혁	27
<표 II-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 추이	27
<표 II-3>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조세지출 현황	28
<표 II-4> 조세지출의 중소기업 귀착 규모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29
<표 III-1>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기업 수	37
<표 III-2> 기업규모별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기업 수	39
<표 III-3>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금액	39
<표 III-4>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기업당)	40
<표 III-5> 기업규모별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기업당)	41
<표 III-6>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건수	42
<표 III-7>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건수	43
<표 III-8> 기업규모별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건수	44
<표 III-9>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발행건당)	44
<표 III-10>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45
<표 III-11> 약속어음 이용 중소기업 수와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 수	46
<표 III-12>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와 상생결제	47
<표 IV-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절대적 활용도(법인세)	54
<표 IV-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절대적 활용도(종합소득세)	55
<표 IV-3>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기업 수 비중(법인세)	56
<표 IV-4>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수혜금액 비중(법인세)	59
<표 IV-5>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사업소득자 수 비중(종합소득세)	61
<표 IV-6>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수혜금액 비중(종합소득세)	62
<표 IV-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경영안정 지원 부문 항목별 공제 적용 중소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법인세)	63

<표 IV-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경영안정 지원 부문 항목별 공제 적용 사업소득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종합소득세)	64
<표 IV-9>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항목별 공제 적용 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법인세)	64
<표 IV-10>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항목별 공제 적용 사업소득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종합소득세)	65
<표 IV-1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67
<표 IV-12> 상생결제 세제혜택 미선택 이유(복수 응답)	68
<표 IV-13>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대비 본 특례제도 이용기업 수 비중	70
<표 IV-14>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증가분 대비 본 특례제도 이용기업 수 증가분 비중 ..	71
<표 IV-15> 특례제도 수혜 유·무 경험 중소기업 간 성과지표 비교	87
<표 IV-16> 특례제도 수혜·비수혜 중소기업 간 성과지표 비교	88
<표 V-1> 기업의 성장성	95
<표 V-2> 기업의 수익성	96
<표 V-3> 기업의 안정성	97
<표 V-4> 판매대금 및 구매대금 결제수단	102
<표 V-5> 2018년 업종별 판매대금 결제수단	102
<표 V-6> 연도별·업종별 약속어음 비중	103
<표 V-7> 수취 약속어음 활용방법	105
<표 V-8> 기초통계량	107
<표 V-9> 경제여건과 어음 활용 및 부도 간의 관계 추정 결과	108
<표 V-10> 상생결제 최상위 구매기업 수	113
<표 V-11> 협력기업의 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	116
<표 V-12>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과 후자 중소기업의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	117
<표 V-13> 기업 평균 상생결제공제액 및 한도	117
<표 V-14>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공제 혜택 수준	118
<표 VI-1> 본 특례제도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비교	129

그림 목 차

[그림 III-1] 상생결제 흐름도	34
[그림 III-2] 환출이자와 장려금 발생(예시)	35
[그림 III-3]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예시(1차 거래기업 기준)	36
[그림 IV-1] 상생결제제도 이용 만족 이유	69
[그림 IV-2] 판매(공사, 용역)대금 평균 수취비율	74
[그림 IV-3] 판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수취비율(제조업)	75
[그림 IV-4] 구매대금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76
[그림 IV-5] 구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77
[그림 IV-6] 구매대금 구매금액 규모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78
[그림 IV-7] 판매대금 거래형태별 평균 수취비율(제조업)	79
[그림 IV-8] 구매대금 거래형태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80
[그림 IV-9]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추세	82
[그림 IV-10]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추세	83
[그림 IV-11] 어음 수취 및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분포	85
[그림 V-1] SBHI 추세	98
[그림 V-2] 자금사정 실적 SBHI 지표: 제조업	99
[그림 V-3] 자금사정 실적 SBHI: 비제조업	99
[그림 V-4] 지급수단별 어음 및 수표 비중	100
[그림 V-5] 지급수단별 어음교환금액 및 장수	100
[그림 V-6] 어음부도율	101
[그림 V-7]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일: 전체	103
[그림 V-8]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일: 소기업	104
[그림 V-9]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일: 중기업	105
[그림 V-10] 리스크 프리미엄 추세	109

[그림 V-11]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2013~2019)	119
[부도 1] 판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수취비율(건설업)	135
[부도 2] 판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수취비율(서비스업)	136
[부도 3] 판매대금 수탁단계별 평균 수취비율(제조업)	137
[부도 4] 구매대금 수탁단계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138
[부도 5]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매출액 규모별 추세 (건설업)	139
[부도 6]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매출액 규모별 추세 (서비스업)	139
[부도 7]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수탁단계별 추세 (제조업)	140
[부도 8]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수탁단계별 추세 (제조업)	140

I. 서론



I. 서론

-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0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2020년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대상임
 - 본 특례제도로 인한 2017~2018년 조세지출 규모는 약 2억~4억원 수준으로 작고, 2018년 9월 상생결제제도 이용 의무화 법안이 도입된 상황임
 - 따라서 적용기한 종료 전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를 진단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심층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개선방안 분석 및 종합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심층평가의 일차적인 목적은 동 세액공제제도의 주목적인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 달성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음
 - 타당성, 효과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또는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일몰 연장 시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와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대한 기여 정도를 분석하고, 본 특례제도가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통해 상생결제제도의 목적인 중소기업 결제환경과 경영성과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함
 -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와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는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등을 기준으로 분석함
 -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개선 효과는 결제환경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함
 - 본 특례제도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도록 유인하여 여러 부작용이 있는 어음 결제의 이용을 줄임으로써, 중소기업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선 효과는 경영성과 관련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함
 - 본 조세특례는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 개선, 부도 위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상생결제제도의 이용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 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을 점검하고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의 적절성과 제도 간 중복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함
 - 정부 개입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경제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금융의 관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 여부를 점검함
 - 지원 방법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의 적절성을 평가함
 - 지원 대상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제도 이용 유인 제공의 필요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수혜 요건의 적절성도 평가함
 - 지원 규모의 적절성 평가에서는 공제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함
 - 제도 간 중복성 평가에서는 유사 목적의 조세·재정지출제도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 본 특례제도와 비교 검토함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개요와 현황을 살펴봄
 - 제Ⅲ장에서는 본 특례제도와 관련 있는 상생결제제도의 개요와 현황을 살펴봄
 - 제Ⅳ장은 본 특례제도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함
 - 제Ⅴ장은 본 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
 - 제Ⅵ장에서는 일몰 또는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일몰을 연장할 경우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및 현황



II.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및 연혁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하청 간 원활한 구매대금 지급을 유도하는 상생결제제도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본 특례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시행하는 사업 중 하나인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 제도임¹⁾

- 정책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²⁾
 - 상생결제제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함³⁾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일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⁴⁾
 - 해당 과세연도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현금성결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⁵⁾

1) 상생결제제도에 대한 내용은 제III장에서 다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

4)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 해당 과세연도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할 것

□ 본 제도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다음 두 항목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임(단,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한도)⁶⁾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금액 × 0.2%
-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 중 지급기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 × 0.1%

□ 그 외 조세특례제한 및 보칙규정으로 다음 사항들이 있음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 배제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한세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
- 세액공제액의 이월 공제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규정을 적용받아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본 조세특례는 2015년 12월에 도입되었고 2017년 12월 한 차례 개정을 함

- 최초 도입 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가 2017년 12월 개정으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
- 2017년 12월 개정 시 적용 기한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5) ‘현금성 결제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 론(loan), 네트워크론 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함

6)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표 II -1〉 제도 주요 연혁

연도	개정 내용
201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상: 중소기업이 상생결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 공제율: 지급기일 15일 이내 0.2%, 15~60일 이내 0.1% - 적용기한: 2017. 12. 31. - 적용 대상: 중소기업
201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적용기한 연장: 2017. 12. 31. → 2020. 12. 31.

2.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의 위상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는 약 2억~4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임
 - 신고연도 기준 조세지출 규모는 2017년 2.5억원에서 2018년 3.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이후 8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세지출의 대부분은 법인세 감면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로 인한 조세지출 비중은 2017년 88%, 2018년 74%이었고, 2019년과 2020년에는 88%가 될 것으로 전망됨

〈표 II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의한 조세지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신고연도	규모			비중	
	합계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법인세
2016	-	0.6 ¹⁾	-	-	-
2017	2.5	0.3 ¹⁾	2.2 ¹⁾	12	88
2018	3.9	1.0 ¹⁾	2.9 ¹⁾	26	74
2019(전망) ²⁾	8	1	7	13	88
2020(전망) ²⁾	8	1	7	13	88

주: 1) 『조세지출예산서』상 수치와 국세청 자료상 수치에 차이가 있어 본 제도의 2016~2018년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실적은 국세청 자료상 수치를 사용함

2) 2019~2020년 전망치는 『조세지출예산서』상 수치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국세청 제공 자료

- 신고연도 2017~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조세지출에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 특례가 차지하는 비중은 0.01%로 나타남
 - 이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조세지출 중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함
 - 두 번째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도 본 특례제도 규모보다 30배 이상 큼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0.41%와 0.57%의 비중을 차지함
 - 본 특례제도의 비중은 2019~2020년에 0.0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조세지출 중 여전히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으로 2017년과 2018년 각각 90.46%와 85.36%의 비중을 나타내었고, 2019년 이후에도 84% 수준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 -3〉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

조세지출 내역	2017		2018		2019(전망)		2020(전망)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 ¹⁾	0.01	4 ¹⁾	0.01	8	0.03	8	0.03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583	2.56	647	2.49	922	3.82	888	3.5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93	6.56	3,009	11.56	2,643	10.96	2,763	10.98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603	90.46	22,214	85.36	20,357	84.43	21,311	84.70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세액공제	94	0.41	149	0.57	182	0.75	190	0.76
합계	22,776	100.00	26,023	100.00	24,112	100.00	25,160	100.00

주: 1) 『조세지출예산서』상 수치와 국세청 자료상 수치 간 차이가 있어 본 제도의 2017~2018년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실적은 국세청 자료상 수치를 사용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조세지출 중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01% 미만으로 작음
 - 구 기업분류 기준으로 중소기업 귀착 규모 대비 본 특례제도의 비중을 살펴보면, 신고연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0.004%와 0.006%로 나타남
 - 그동안 개인으로 분류했던 항목들(의제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을 기업으로 재분류한 기준을 사용하면, 본 세액공제제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작아짐
 - 신 기업분류 기준으로 2018년 본 특례제도의 귀착 규모는 조세지출 중소기업 귀착 규모의 0.003%로 나타남
 - 신 기업분류 기준, 본 특례제도의 조세지출 중소기업 귀착 규모 비중은 2019년 이후에도 0.01%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표 II -4> 조세지출의 중소기업 귀착 규모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단위: 억원, %)

신고연도	2017	2018	2018 ¹⁾	2019(전망) ¹⁾	2020(전망) ¹⁾
조세지출 중소기업 ²⁾ 귀착 규모	66,501	66,644 ³⁾	121,644	135,191	141,75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3 ⁴⁾	4 ⁴⁾	4 ⁴⁾	8	8
중소기업 귀착 규모 대비 비중	0.004	0.006	0.003	0.006	0.006

주: 1) 수혜자가 사업자임에도 그동안 개인으로 분류했던 항목(의제매입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을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부터 기업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조세지출 귀착 규모가 크게 증가함

2)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3) 의제매입 세액공제(2.7조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1.9조원), 재활용폐자원 매입 세액공제(0.9조원)를 제외한 추정치임

4) 『조세지출예산서』상 수치와 국세청 자료상 수치 간 차이가 있어 본 제도의 2016~2018년 소득세 및 법인세 공제 실적은 국세청 자료상 수치를 사용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Ⅲ. 상생결제제도 개요 및 현황



Ⅲ. 상생결제제도 개요 및 현황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중견·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본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기 앞서 상생결제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본 장에서는 상생결제제도의 개괄적인 내용과 운영 현황에 대해 살펴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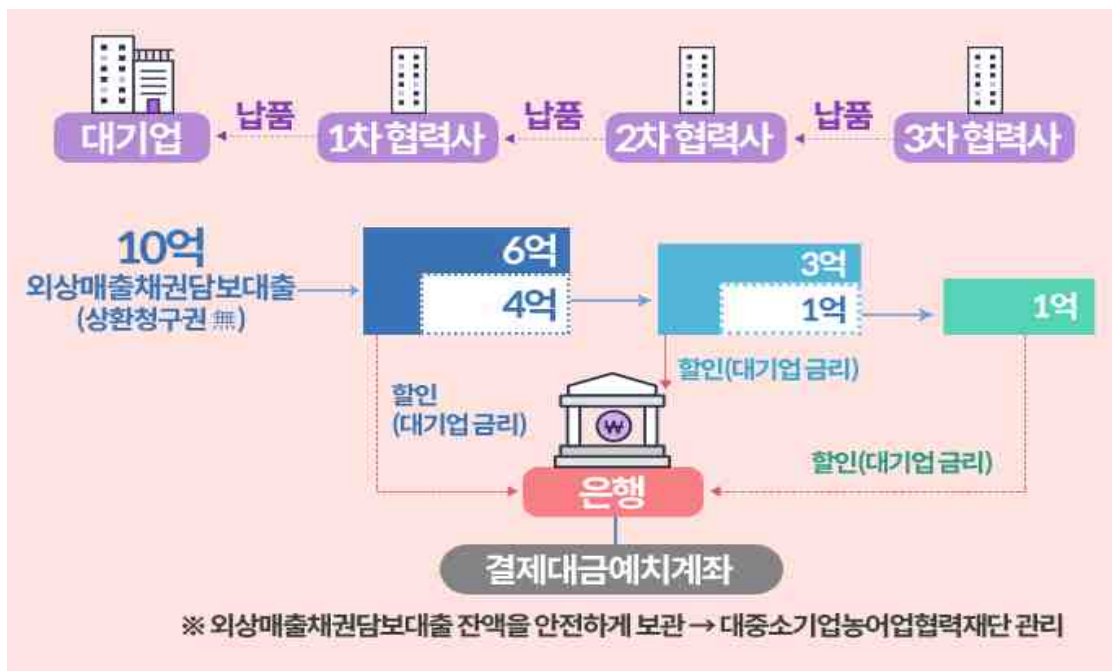
1. 제도 개요

-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제27조 등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잘못된 자금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안정성 등을 확대하고 연쇄부도 가능성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기존 결제시스템하에서 납품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현금화할 때 높은 금융비용이 소요되는 전자어음 등으로 대금결제를 많이 함)
 - 예를 들면, 1차 협력사가 자금이 필요하여 구매기업인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전자매출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경우 평균 금리는 4~5% 정도인데,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을 평균 6~7%의 금리로 할인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3차 협력사는 평균 8~15%의 금리로 2차 협력사의 전자어음을 담보로 할인함
 - 즉 하위 납품단계로 갈수록 전자어음의 안정성은 낮아지고 할인비용은 높아져서 자금난과 경영 악화 가능성이 커짐
 - 또한 대기업이나 1차 협력사가 도산하여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상환 청구권으로 인해 연쇄부도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불공정한 자금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하위 납품기업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연쇄부도 피해 방지를 위해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됨

7) 이항구(2014), pp. 10~13 참고

- 상생결제제도란 거래기업(협력사)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기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제도를 말함⁸⁾
 - 거래기업은 납품단계에 있는 기업들로 납품단계에 따라 1~N차 거래기업이라 함
 - 대·중견·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구매기업과 거래기업이 될 수 있음(공공기관도 구매기업이 될 수 있음)
 - 구매기업의 대부분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거래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임
 - 거래기업은 구매기업(또는 상위 거래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상생매출채권’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구매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액 내에서 분할 발행하는 형태라 할 수 있음

[그림 III-1] 상생결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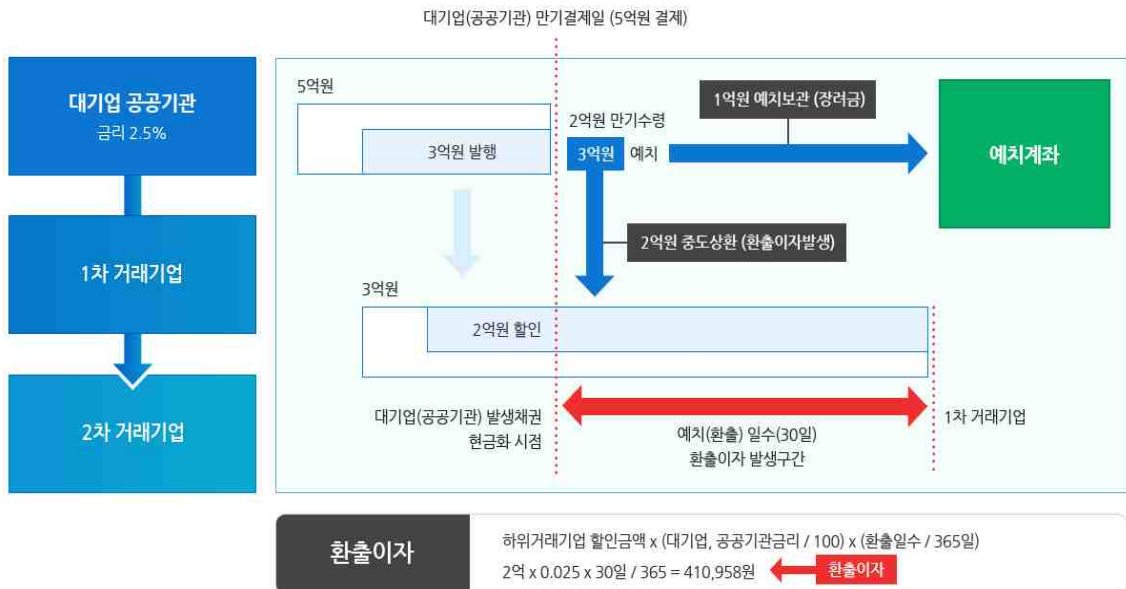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222701921>, 검색일자: 2020. 4. 2.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8의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http://www.winwinpay.or.kr>)에 공개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결제 환경의 새로운 패러다임’) 및 브로슈어(‘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의 상생결제제도 정책홍보 웹페이지(‘[중소벤처기업부] 아직도 어음결제를 만나요? 이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세요!’),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222701921>, 검색일자: 2020. 4. 2., ‘상생결제 100조 시대, 협력기업에 안전하고 이익이 되는 결제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422777792>, 검색일자: 2020. 4. 2.) 등을 참고

- 이때 하위 거래기업들이 발행한 상생대출채권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대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으로 발행함
 - 즉 결제일 이전에 구매기업 수준의 낮은 금리로 할인하여 현금화 가능함
 - 납품대금은 상위 거래기업을 거치지 않고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보관 후 하위 거래기업에 직접 지급되고 상환청구권은 없음
 - 따라서 연쇄부도 위험 없이 결제일에 대금지급이 보장됨
- 거래기업의 경우 대금회수의 안정성 및 저금리 할인에 의한 금융비용 절감 외 환출이자, 장려금, 세제혜택 등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환출이자는 하위 거래기업이 할인했을 경우 상위 거래기업이 받게 되는 은행 할인수수료의 일부를 말함
 - 구매기업이 자신이 발행한 외상대출채권 만기일에 대금 결제를 하게 되면, 하위 거래기업의 할인금액은 중도상환 처리됨
 - 이에 따라 상위 거래기업의 상생대출채권 만기일까지의 잔여일수에 대한 이자가 상위 거래기업에 지급됨

[그림 III-2] 환출이자와 장려금 발생(예시)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www.winwinpay.or.kr/content/view.do?menuKey=27&contentKey=8>, 검색일자: 2020. 4. 2.

9)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http://www.winwinpay.or.kr>) 참고

- 장려금은 상위 거래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하위 거래기업이 할인하지 않고 만기일까지 보유할 경우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예치된 금액에 대한 MMDA 수준의 이자로 상위 거래기업에 지급됨
 - 세제 혜택은 본 심층평가의 대상인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함
- 구매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대금지급 흐름을 추적하여 거래기업의 대금지급을 관리할 수 있고 동반성장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¹⁰⁾
- 상생결제 이용을 2~N차 거래기업으로까지 확산하기 위해 2018년 9월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이 시행됨¹¹⁾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을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이때 하위 거래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중 현금과 상생결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중 이상이어야 함

[그림 III-3]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예시(1차 거래기업 기준)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www.winwinpay.or.kr>, 검색일자: 2020. 4. 2.

1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http://www.winwinpay.or.kr>) 참고

1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

2. 운영 현황

- 2019년 기준 공공기관을 제외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구매기업의 수는 328개이고, 거래기업 약정 수는 20만 355개(기업 및 은행 간 중복 포함)임¹²⁾
 - 구매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은 135개사, 중견기업은 161개사, 중소기업은 32개사로,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우수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가 많음
 - 상생결제제도 도입 이후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된 결제금액은 4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118조원이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결제됨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기업의 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포함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한 기업의 수는 2019년 기준 947개로, 도입연도 2015년 이용기업 수 336개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함
 - 상생결제 이용 거래기업의 수는 2015년 182개에서 2019년 701개로 증가하여 구매기업의 경우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음
 - 상생결제 이용 구매기업의 수는 2015년 154개에서 2019년 246개로 증가함
 - 거래기업의 거래단계별로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 수를 살펴보면, 1~3차 모든 거래단계에서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하지만 2019년 기준 상생결제 이용 1차 거래기업의 수는 627개인 데 반해, 2차와 3차 거래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가 각각 70개와 4개로 나타나, 2차와 3차 거래기업의 상생결제 활용도는 미미한 수준임

<표 III-1>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기업 수

(단위: 개)

연도	전체	구매기업	거래기업			
			1~3차	1차	2차	3차
2015	336	154	182	155	27	0
2016	498	188	310	256	53	1
2017	602	212	390	329	60	1
2018	760	238	522	453	64	5
2019	947	246	701	627	70	4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1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현황을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상생결제를 이용한 기업 수가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 수는 2015년 155개에서 2019년 550개로 성장하여 전체 이용기업 수 증가를 가장 큰 폭으로 견인함
 - 이에 따라 상생결제 이용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 역시 2015년 46%에서 2019년 68%로 증가함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가 2015년 각각 67개와 114개에서 2019년 각각 114개와 190개로 증가하였고, 중견기업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나타남
 - 상생결제 이용 구매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구매기업인 중견기업의 수는 126개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이 99개로 두 번째로 많았음
 -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기업의 수가 21개로 적는데, 이는 신용등급이 충분히 높은 중소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됨
 - 상생결제 이용 거래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1~3차 거래기업인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 수는 622개로, 그 비중이 89%에 이룸
 -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 수의 빠른 증가는 중소기업 거래기업 수 증가에서 기인하고 특히 1차 거래기업 수 증가의 기여가 큼
 - 상생결제를 이용한 1차 거래기업 중소기업의 수는 2015년 115개에서 2019년 550개로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함
 - 하지만 2차 거래기업인 중소기업의 수는 1차 거래기업 중소기업 수에 비해 적고 증가 속도도 느림
 -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상당수 1차 거래기업으로서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함
 - 2019년 기준 상생결제를 이용한 1차 거래기업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는 각각 15개와 62개로, 상생결제 이용 전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수 대비 각각 13%와 33%의 비중을 보임

<표 III-2> 기업규모별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기업 수

(단위: 개)

연도	전체			구매기업			1~3차 거래기업		
	상호 출자	중견	중소	상호 출자	중견	중소	상호 출자	중견	중소
2015	67	114	155	57	81	16	10	33	139
2016	73	143	282	64	103	21	9	40	261
2017	93	144	365	82	103	27	11	41	338
2018	106	169	485	94	121	23	12	48	462
2019	114	190	643	99	126	21	15	64	622

연도	1차 거래기업			2차 거래기업			3차 거래기업		
	상호 출자	중견	중소	상호 출자	중견	중소	상호 출자	중견	중소
2015	10	30	115	0	3	24	0	0	0
2016	9	36	211	0	3	50	0	1	0
2017	10	38	281	1	3	56	0	0	1
2018	11	44	398	1	3	60	0	1	4
2019	15	62	550	0	1	69	0	1	3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2019년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발행된 매출채권의 규모는 116조원으로 2015년 25조원에서 4배 이상 성장한 규모임

- 구매기업과 거래기업 모두 발행금액 총액은 상생결제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매출채권 발행금액 총액의 99%는 구매기업에 의해 발생함
 - 이는 구매기업이 거래기업에 비해 상생결제를 통한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 빈도도 높기 때문(평균 발행금액과 평균 발행건수 현황 참고)
- 2019년 기준 거래기업의 발행금액 총액은 1조 6,924억원이고, 이 중 98%인 1조 6,515억원은 1차 거래기업의 발행금액 총액임
 - 이 역시 1차 거래기업의 상생결제 거래 규모 및 빈도가 2차와 3차 거래기업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

<표 III-3>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금액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구매기업	거래기업			
			1~3차	1차	2차	3차
2015	245,929	242,716	3,213	3,134	79	0
2016	666,644	658,026	8,618	8,246	371	1
2017	935,991	925,797	10,194	9,683	509	2
2018	1,074,324	1,061,231	13,093	12,660	415	18
2019	1,155,800	1,138,876	16,924	16,515	405	4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한 기업들의 평균 상생결제 발행금액은 2017년 1,555억원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19년 1,220억원에 이룸
 - 2019년은 제도 도입 이후 평균 발행금액이 두 번째로 낮은 해로 나타남
 - 평균 발행금액이 가장 낮았던 해는 도입연도인 2015년임
 - 구매기업의 평균 발행금액 규모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기준 구매기업의 평균 발행금액은 4,630억원으로 전체 상생결제 이용 기업 평균 발행금액의 4배에 가까운 규모임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은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반해 거래기업의 평균 발행금액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거래기업의 평균 발행금액은 2016년 28억원에서 2019년 24억원으로 감소함
 - 2차와 3차 거래기업의 경우 평균 발행금액 규모는 2019년 기준 각각 6억원과 1억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임
 - 거래기업의 평균 발행금액 규모가 감소 추세인 것은 상생매출채권 발행건당 평균 발행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영향으로 파악됨(발행건당 평균 발행금액 현황 참고)

<표 III-4>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기업당)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구매기업	거래기업			
			1~3차	1차	2차	3차
2015	732	1,576	18	20	3	0
2016	1,339	3,500	28	32	7	1
2017	1,555	4,367	26	29	8	2
2018	1,414	4,459	25	28	6	4
2019	1,220	4,630	24	26	6	1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기업 규모별로 기업당 평균 발행금액을 살펴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평균 발행금액이 크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의 평균 발행금액은 8,503억원으로 중견기업의 평균 발행금액 747억원과 중소기업의 평균 발행금액 26억원에 비해 상당히 큰 규모임

- 이러한 기업의 규모에 따른 평균 발행금액의 양상은 구매기업, 거래기업 전체, 1차 거래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나타남
-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거래 규모가 클 것이므로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거래하는 규모도 클 것으로 예상 가능함
- 대기업의 평균 발행금액은 2017년 8,724억을 정점으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대기업의 평균 발행금액의 감소 추이는 구매기업, 거래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남
 - 따라서 상생결제 이용기업 전체의 평균 발행금액이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한 것은 대기업 평균 발행금액 감소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중견기업의 평균 발행금액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임
-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발행금액이 2016년 이후 소폭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감소폭이 3억원 정도로 크지 않음
 - 구매기업 또는 1차 거래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 발행금액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표 III-5> 기업규모별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기업당)

(단위: 억원)

연도	전체			구매기업			1~3차 거래기업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2015	3,265	212	18	3,814	287	113	137	28	7
2016	7,969	521	29	9,048	699	224	298	64	13
2017	8,724	712	28	9,872	963	191	166	83	15
2018	8,684	710	25	9,772	956	228	157	92	15
2019	8,503	747	26	9,768	1,086	341	149	81	15

연도	1차 거래기업			2차 거래기업			3차 거래기업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2015	137	30	8	0	10	2	0	0	0
2016	298	66	15	0	58	4	0	1	0
2017	181	84	17	15	69	5	0	0	2
2018	171	95	17	1	74	3	0	1	4
2019	149	80	17	0	177	3	0	0	1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발행된 매출채권의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옴
 - 전체 발행건수는 2015년 19만건에서 2019년 97만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함
 - 상생결제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구매기업에 의해 발행됨
 - 2019년 기준 구매기업의 발행건수는 95만건으로 전체 발행건수의 98%에 해당함
 - 거래기업에 의해 발행된 매출채권의 건수는 2019년 기준 2만 196건으로 거래기업은 구매기업에 비해 상생결제 이용 빈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 거래기업 발행 매출채권의 대부분은 1차 거래기업에 의해 발생됨
 - 2차와 3차 거래기업에 의해 발행된 매출채권의 건수는 500개가 안 됨

〈표 III-6〉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발행건수

(단위: 건)

연도	전체	구매기업	거래기업			
			1~3차	1차	2차	3차
2015	192,619	188,674	3,945	3,831	114	0
2016	577,624	569,371	8,253	7,790	462	1
2017	748,321	737,304	11,017	10,404	611	2
2018	853,709	838,262	15,447	14,982	434	31
2019	969,621	949,425	20,196	19,720	465	11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상생결제 매출채권의 평균 발행건수는 2017년 1,243건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9년 1,024건에 이룸
 - 평균 발행금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19년의 평균 발행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평균 발행건수가 가장 낮았던 해는 2015년으로 573건의 매출채권이 발행됨
 - 구매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됨
 - 2019년 기준 구매기업의 평균 발행건수는 3,859건으로 전체 평균 발행건수의 4배에 가까운 수준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발행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반면 거래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빈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연도별 변동성도 거의 없음

- 2019년 거래기업의 평균 발행건수는 29건으로 평균적으로 한 달에 2~3건의 상생결제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2차와 3차 거래기업의 경우, 연간 평균 발행건수가 각각 7건과 3건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표 III-7>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건수

(단위: 건)

연도	전체	구매기업	거래기업			
			1~3차	1차	2차	3차
2015	573	1,225	22	25	4	0
2016	1,160	3,029	27	30	9	1
2017	1,243	3,478	28	32	10	2
2018	1,123	3,522	30	33	7	6
2019	1,024	3,859	29	31	7	3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기업 규모가 클수록 평균 상생결제 발행건수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발행 건수의 추세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대체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대기업의 평균 발행건수는 6,541건으로 중견기업의 943건과 중소기업의 47건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협력업체도 많고 거래도 많을 것이므로 상생결제 매출채권 발행건수도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대기업의 평균 발행건수 추세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9년 반등하여 가장 많은 발행건수를 기록함
 - 중견기업의 경우 평균 발행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하지만 중소기업의 평균 발행건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단, 구매기업인 중소기업의 평균 발행건수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함
 -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구매기업의 평균 발행건수는 거래기업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I-8> 기업규모별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건수

(단위: 건)

연도	전체			구매기업			1~3차 거래기업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2015	2,399	229	36	2,799	311	230	113	28	14
2016	6,459	599	66	7,340	819	638	192	34	20
2017	6,455	812	60	7,303	1,120	509	129	37	24
2018	6,338	858	49	7,128	1,173	568	143	64	23
2019	6,541	943	47	7,516	1,385	781	113	73	22

연도	1차 거래기업			2차 거래기업			3차 거래기업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상호출자	중견	중소
2015	113	30	16	0	2	5	0	0	0
2016	192	36	23	0	13	8	0	1	0
2017	142	39	27	4	14	10	0	0	2
2018	156	69	26	2	14	7	0	9	6
2019	113	74	24	0	32	6	0	3	3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기업들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 발행하는 매출채권의 평균적인 금액은 1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발행건당 평균 상생결제 매출채권 발행금액은 1억 2천만원 수준이고 이는 상생결제제도 도입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거래기업의 경우 발행건당 평균 발행금액이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고, 2019년 기준 평균 발행금액은 8천만원 수준임

<표 III-9> 상생결제제도 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발행건당)

(단위: 백만원)

연도	전체	구매기업	거래기업			
			1~3차	1차	2차	3차
2015	128	129	81	82	69	0
2016	115	116	104	106	80	100
2017	125	126	93	93	83	100
2018	126	127	85	85	96	58
2019	119	120	84	84	87	36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상생결제가 다른 결제수단과 비교하여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를 점검함
 - 법인세 신고법인 수 대비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의 비중
 - 약속어음 이용 중소기업 수 대비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의 비중
 - 이때 약속어음에는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함
 -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금액 대비 상생결제 발행금액의 비중
 -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에는 전자어음, 약속어음, 기업구매자금융어음, 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 네트워크론 내국신용장 등을 포함함
 -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 건수 대비 상생결제 발행건수의 비중

- 법인세 신고법인 수 대비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의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2017년 기준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64만개,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는 602개로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의 비중은 0.09%로 나타남
 - 2017년의 비중은 2015년의 비중 0.06%보다 0.03%p 높은 수준임

<표 III-10>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단위: 개, %)

사업연도		2015	2016	2017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수	522,225	565,572	643,381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336	498	602
	비중	0.06	0.09	0.09
상호출자제한기업	법인세 신고법인 수	1,686	1,158	1,325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67	73	93
	비중	4.0	6.3	7.0
중견기업	법인세 신고법인 수	2,911	3,194	3,775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114	143	144
	비중	3.9	4.5	3.8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법인 수	517,628	561,220	638,281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155	282	365
	비중	0.03	0.05	0.06

주: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경우, 신고연도 기준 통계로 신고연도는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7~2019)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7.0%, 중견기업의 경우 3.8%, 중소기업의 경우 0.06%로 나타남
 -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의 비중이 대기업, 중소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이는 중소기업의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 비중을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음
 -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제도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됨
- 기업 규모별 상생결제 이용기업 비중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증가하는 추세임
 - 중견기업은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약속어음 이용 중소기업 수 대비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 수의 비중은 상생결제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3.19% 수준에 이룸
 - 2015년 약속어음을 이용한 중소기업은 1만 8,314개, 상생결제를 이용한 중소기업은 155개로 상생결제 이용 비중은 0.85% 수준이었음
 - 2016년 이후 약속어음 이용 중소기업은 감소하고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은 증가하면서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의 비중이 증가해 옴
 - 상생결제제도의 목적이 결제수단 다변화를 통한 어음 이용의 감소인 점에서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III-11〉 약속어음 이용 중소기업 수와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 수

(단위: 개, %)

연도	2015	2016	2017	2018
약속어음 ¹⁾ 이용 중소기업 수 ²⁾	18,314	19,681	15,356	15,214
상생결제 이용 중소기업 수	155	282	365	485
비중	0.85	1.43	2.38	3.19

주: 1. 추정 시, 5인 미만 중소기업 중 약속어음을 이용한 기업의 수는 자료가 없어 5인 이상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함

1) 약속어음에는 전자어음, 전자채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포함함

2) 약속어음 이용 중소기업 수는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추정함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IBK기업은행,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2016~2019)

-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 대비 상생결제의 이용 비중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파악됨
 -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상생결제의 비중은 2015년 0.92%에서 2019년 3.56%로 증가함
 - 결제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중은 2015년 0.31%에서 2019년 0.84%로 증가함
 - 하지만 상생결제의 비중은 2017년 0.89%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18년 감소하였고 다시 2019년에 반등하는 등락을 최근 보임

〈표 III-12〉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와 상생결제

(단위: 십억원, 천건,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어음교환 등 ¹⁾ 지급결제액	2,674,217	3,586,056	2,950,056	2,878,747	3,167,748
상생결제 발행금액	24,570	66,437	92,401	105,256	112,794
비중	0.92	1.85	3.13	3.66	3.56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건수	62,404	85,068	83,033	112,596	114,243
상생결제 발행건수	192	576	739	841	955
비중	0.31	0.68	0.89	0.75	0.84

주: 1) 어음교환 등 지급결제에는 전자어음, 약속어음, 기업구매자금융어음, 전자채권, 외상매출채권, 넷트 워크론, 내국신용장 등을 포함함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금융결제원, 『2019 지급결제통계분석』, p.53~54

- 전반적으로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판단되지만,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낮은 수준임

IV. 효과성 평가



IV. 효과성 평가

- 본 장에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목표 달성 여부와 경제적 효과성을 평가함
 -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상생결제 세액공제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본 조세특례의 상생결제제도 활용도에 대한 기여를 분석함으로써 수행함
 - 경제적 효과성 평가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및 경영성과 지표의 개선효과 분석을 통해 수행함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목표 달성 여부 평가

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활용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실효성 평가를 위해 기업들과 개인 사업소득자들이 본 세액공제제도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이하의 세액공제제도 활용도 분석은 이상엽 외(2017)에서 사용한 분석방식을 따라 『국세통계연보』과 국세청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실행함¹³⁾
 - 법인세의 경우 수혜기업 수, 수혜금액, 종합소득세의 경우 수혜사업 소득자 수,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제도의 ‘절대적 활용도’와 ‘상대적 활용도’를 분석함
- 절대적 활용도 분석은 법인세의 경우 전체 흑자법인 대비,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이 0 이상인 사업소득자 대비 본 세액공제제도가 활용되는 정도를 의미함
 - 흑자법인 또는 종합소득이 0 이상인 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지표의 기준이 됨

13) 이상엽 외(2017)는 2017년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심층평가를 시행하면서 해당 제도의 활용도를 ‘절대적 활용도’와 ‘상대적 활용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상엽 외(2018), 김빛마로 외(2019), 김우현 외(2019) 등에서도 동일한 방법을 활용함

- 상대적 활용도 분석에서는 본 제도가 활용되는 정도를 다음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함
 - 상대적 활용도 1: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기업(법인세의 경우) 또는 사업소득자(종합소득세의 경우) 대비
 - 세액을 공제하는 다른 제도들 대비 본 특례제도가 활용되는 정도를 의미함
 - 상대적 활용도 2: 중소기업 조세지원 경영안정지원 부문 제도들을 활용한 중소기업(법인세의 경우) 또는 사업소득자(종합소득세의 경우) 대비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도를 통한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유사 목적을 가진 조세제도들 대비 본 조세특례제도가 활용되는 정도를 살펴봄
 - 상대적 활용도 3: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특례제도들을 활용한 중소기업(법인세의 경우) 또는 사업소득자(종합소득세의 경우) 대비
 - 본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 있는 상생결제제도와 연계된 제도이므로, 중소기업 부문 조세특례들 대비 본 제도의 활용도를 분석함

- 본 특례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0년 도입되었다가 2013년 일몰된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과거 활용도와도 비교하여 분석함

1) 절대적 활용도

-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본 특례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를 수혜기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본 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신고연도 2018년 기준 전체 흑자법인 45만 4,497개 중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 수(수혜기업 수)는 40개로 전체 흑자기업의 0.009%임
 - 이 중 39개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전체 흑자 중소기업 39만 8,333개 중 0.010%에 해당하고, 1개 기업은 일반기업으로 전체 흑자 일반기업 5만 6,164개 중 0.002%에 해당함
 - 본 조세특례의 정책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므로 전체 일반기업보다 전체 중견기업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으나, 『국세통계연보』상 세액공제 신청 현황은 중견기업을 따로 분류하지 않음

- 대신 법인세를 신고한 중견기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법인세 신고 중견기업 3,775개 중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0.026%를 차지함
 - 만약 흑자 중견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혜 중견기업 비중은 더 높은 수준일 것이므로, 본 세액공제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다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절대적 활용도는 매우 낮음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 수와 흑자법인 수 대비 비중 모두 제도 도입 이후 상승 추세임
- 중견기업의 경우 사실상 2018년부터 본 제도가 적용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만 살펴보면, 2017년 신청기업 수 29개, 비중 0.008%에서 2018년 신청기업 수 39개, 비중 0.010%로 상승함
- 법인기업 대상으로 본 특례제도의 절대적 활용도를 수혜금액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수혜기업 수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특례제도의 절대적 활용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줌
- 2018년 기준으로 총 산출세액 71조 3,022억원 중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금액은 3억원으로 총 산출세액의 0.0004%를 차지함
- 본 특례제도에 의한 수혜금액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의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수혜금액은 중소기업 총 산출세액 15조 4,219억원 중 0.0019%의 비중을 차지함
 - 일반기업의 수혜금액은 200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기업 총 산출세액 55조 8,804억원의 0.000004%, 중견기업 총 산출세액 4조 9,234억원의 0.00004%에 해당함
 - 따라서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소기업이 일반기업(즉, 중견기업)보다 본 특례제도의 절대적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수혜금액 및 총 산출세액 대비 비중 역시 본 조세특례 도입 이후 상승 추세임
- 중소기업의 수혜금액은 2017년 2억원에서 2018년 3억원으로, 비중은 0.0015%에서 0.0019%로 상승함

<표 IV-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절대적 활용도(법인세)

(단위: 개, %, 억원)

기업유형	구분	신고연도	
		2017	2018
중소기업	흑자법인 수(A)	359,039	398,333
	수혜법인 수(B)	29	39
	비중(100*B/A)	0.008	0.010
	산출세액(C)	130,815	154,219
	수혜금액(D)	2	3
	비중(100*D/C)	0.0015	0.0019
일반기업	흑자법인 수(A)	71,842	56,164
	수혜법인 수(B)	0	1
	비중(100*B/A)	0	0.002
	산출세액(C)	469,730	558,804
	수혜금액(D)	0	0.02
	비중(100*D/C)	0	0.000004
전체기업	흑자법인 수(A)	430,881	454,497
	수혜법인 수(B)	29	40
	비중(100*B/A)	0.007	0.009
	산출세액(C)	600,545	713,022
	수혜금액(D)	2	3
	비중(100*D/C)	0.0003	0.00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2019.

- 개인 사업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절대적 활용도 분석에서도 본 특례제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줌
 - 2018년 기준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소득자(수혜인원)는 13명으로, 종합소득이 0 이상인 전체 사업소득신고자 499만 9,909명 중 0.0003%에 불과함
 - 2018년 수혜금액도 1억원으로 총 산출세액 대비 비중은 0.0003%으로 작음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산출세액 값은 사업소득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어서 총 산출세액 대비 본 특례제도의 수혜금액 비중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으로 추측됨

- 수혜인원, 수혜금액 모두 본 조세특례 도입 이후 상승 추세이고, 각각의 비중 역시 상승 추세임
 - 수혜인원은 2016년 3명에서 2018년 13명으로 증가하였고, 비중 역시 0.0001%에서 0.0003%로 상승함
 - 수혜금액은 2016년 6천만원에서 2018년 1억원으로 상승, 수혜금액 비중은 0.0002%에서 0.0003%로 상승함

<표 IV-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절대적 활용도(종합소득세)

(단위: 명, %, 억원)

구분	신고연도		
	2016	2017	2018
사업소득 신고인원(종합소득 0 이상)(A)	4,372,641	4,706,931	4,999,909
수혜인원(B)	3	9	13
비중(100*B/A)	0.0001	0.0002	0.0003
산출세액(비사업자 제외) ¹⁾ (C)	250,895	281,626	302,908
수혜금액(D)	0.6	0.3	1
비중(100*D/C)	0.0002	0.0001	0.0003

주: 1) 비사업자는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 정의하므로 산출세액은 사업소득이 없고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2) 상대적 활용도

□ (상대적 활용도 1: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법인기업 수 대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한 기업 대비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상대적 활용도를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본 특례제도는 다른 세액공제제도에 비해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2018년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활용한 5만 8,850개의 기업 중 0.07%가 본 특례제도를 활용함
 - 본 특례제도는 『국세통계연보』상 구분된 43가지 세액공제 항목(기타 포함) 중 27번째로 많이 활용됨

<표 IV-3>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기업 수 비중(법인세)

(단위: 개, %)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세액공제 활용기업 수	42,413	49,199	9,743	9,651	52,156	58,850
최저한세 적용 제외	64.47	60.19	9.97	9.38	54.29	51.86
외국납부 세액공제	1.69	1.53	9.32	8.81	3.11	2.72
재해손실 세액공제	0.08	0.04	0.00	0.02	0.07	0.04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62.68	58.24	0.50	0.44	51.07	48.76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0.36	N/A	0.02	N/A	0.30
기타	0.02	0.02	0.14	0.09	0.04	0.04
최저한세 적용대상	35.53	39.81	90.03	90.62	45.71	48.14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8.06	7.68	0.06	0.12	6.56	6.4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0.09	0.03	0.07	0.00	0.09	0.0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출연 세액공제	0.00	0.00	0.55	0.67	0.10	0.1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05	0.01	15.25	14.71	2.89	2.42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¹⁾	0.00	N/A	0.57	N/A	0.09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0.53	0.35	3.71	3.72	1.12	0.9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24	0.21	0.02	0.00	0.20	0.1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0	0.02	0.03	0.00	0.01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0.91	0.80	5.03	5.53	1.68	1.58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0.11	0.10	3.20	3.25	0.69	0.62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1.02	0.98	3.24	2.95	1.44	1.30
임시투자 세액공제	1.05	N/A	1.22	N/A	1.09	N/A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4.85	3.78	7.63	7.27	5.37	4.35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0.23	0.20	1.46	1.13	0.46	0.35
고용증대 세액공제	0.36	N/A	0.10	N/A	0.31	N/A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1.27	1.17	33.60	35.90	7.31	6.86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세무법인)	0.07	0.61	3.13	0.74	0.64	0.63

<표 IV-3>의 계속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0.06	0.05	0.50	0.45	0.14	0.12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47	0.45	1.63	1.66	0.68	0.65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0.00	N/A	0.02	N/A	0.00	N/A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비용 세액공제	0.00	0.00	0.04	0.04	0.01	0.0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45	0.53	0.06	0.62	0.38	0.55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9.00	11.98	0.04	0.15	7.32	10.04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33	0.27	2.11	2.38	0.67	0.62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0.01	0.01	0.01	0.02	0.01	0.02
산업수요맞춤형 고교등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0.01	0.01	0.00	0.00	0.01	0.01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0.01	0.03	0.13	0.29	0.03	0.07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0.02	0.02	0.01	0.01	0.02	0.02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0.04	0.08	0.18	0.23	0.07	0.1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0.01	0.01	0.00	0.00	0.01	0.0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24	0.43	1.28	1.27	0.43	0.5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92	9.83	5.52	6.06	5.85	9.2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N/A	0.01	N/A	0.04	N/A	0.0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7	0.08	0.00	0.01	0.06	0.0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0.00	0.00	0.04	0.03	0.01	0.0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N/A	0.04	N/A	0.04	N/A	0.04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N/A	0.04	N/A	0.66	N/A	0.14
기타	0.03	0.02	0.13	0.04	0.05	0.02

주: 1) N/A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기타로 분류되었거나 제도 도입 전 혹은 폐지된 경우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2019.

- 하지만 가장 많이 활용된 5가지 항목들¹⁴⁾의 비중이 81%를 초과하는 것을 감안하면 활용도가 낮은 제도로 평가됨
 - 2018년 기준 중소기업의 상대적 활용도는 0.08%로 일반기업의 상대적 활용도 0.01%보다 높음
 - 본 특례제도는 일반기업 중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중견기업의 활용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세액공제 활용 중견기업 수는 자료가 없음
 - 대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 활용 중견기업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 특례제도를 활용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활용한 1,622개 중견기업 중 0.06%로 나타남
 - 본 특례제도의 상대적 활용도 추이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폭은 작음
 -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제도 중 본 제도를 활용한 비중이 2017년 0.07%에서 2018년 0.08%로 0.01%p 증가함
- (상대적 활용도 1: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법인기업 수혜금액 대비) 수혜금액 기준 세액공제제도 활용 기업 대비 본 특례제도의 상대적 활용도는 세액공제 신청 기업 수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기업의 수혜금액 7조 5,569억원 중 본 조세특례의 비중은 0.004%로, 43가지 세액공제 항목(기타 포함) 중 31번째로 많은 수혜금액임
 - 수혜금액 비중 상위 5개 세액공제 항목들¹⁵⁾은 총 수혜금액의 88.43% 차지함
 - 2018년 수혜금액 기준 상대적 활용도는 중소기업이 0.017%로, 일반기업 0.00003%보다 높음
 -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수혜금액 5,892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본 특례제도를 활용한 중견기업의 비중은 0.0003%로 매우 작음
 - 세액공제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중견기업의 비중이 더 클 것이나, 중소기업의 비중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14) 가장 많이 활용된 5가지 세액공제 항목들은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제 비적용),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임

15) 수혜금액 비중 상위 5개 세액공제 항목들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제 비적용),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최저한세제 적용),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임

- 수혜금액 기준 상대적 활용도도 증가 추세이나 증가폭이 매우 작음
 - 중소기업의 경우, 수혜금액 비중이 2017년 0.014%에서 2018년 0.017%로 0.003%p 증가함

<표 IV-4>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수혜금액 비중(법인세)

(단위: 억원, %)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세액공제 활용기업 수혜금액	15,852	16,893	49,575	58,676	65,427	75,569
최저한세 적용 제외	81,607	77,544	51,899	46,212	59,097	53,216
외국납부 세액공제	5,011	5,396	51,808	46,159	40,470	37,047
재해손실 세액공제	0.178	0.024	0.000	0.000	0.043	0.005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76,417	70,962	0.090	0.044	18,583	15,897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¹⁾	1.150	N/A	0.008	N/A	0.264
기타	0.002	0.012	0.001	0.001	0.001	0.003
최저한세 적용대상	18,393	22,456	48,101	53,788	40,903	46,784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3.107	3.093	0.006	0.013	0.757	0.701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0.015	0.008	0.008	0.000	0.010	0.00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출연 세액공제	0.000	0.000	0.189	0.253	0.143	0.197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114	0.018	20,363	16,254	15,457	12,624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N/A	0.000	N/A	2.123	N/A	1.648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0.230	0.115	3,004	2,104	2,332	1,660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18	0.029	0.000	0.000	0.004	0.006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00	0.000	0.023	0.007	0.018	0.005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1,352	0,984	7,197	19,142	5,781	15,083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0.077	0.083	0.256	0.452	0.213	0.369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0.568	0.573	4,301	1,590	3,397	1,362
임시투자 세액공제	0.378	N/A	2,715	N/A	2,149	N/A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5,327	4,952	7,289	8,595	6,813	7,780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0.195	0.176	0.288	0.376	0.265	0.332
고용증대 세액공제	0.119	N/A	0.015	N/A	0.040	N/A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0.002	0.001	0.002	0.001	0.002	0.001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0.010	0.136	0.045	0.010	0.037	0.038
의약품품질관리개선 시설투자 세액공제	0.240	0.116	0.365	0.261	0.335	0.228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0.168	0.144	0.085	0.099	0.105	0.109

<표 IV-4>의 계속

구분	중소기업		일반기업		전체기업	
	2017	2018	2017	2018	2017	2018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0.000	N/A	0.281	N/A	0.213	N/A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비용 세액공제	0.001	0.003	0.019	0.015	0.015	0.013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128	0.476	0.000	0.064	0.031	0.15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017	3.895	0.002	0.003	0.732	0.87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0.748	0.566	0.736	1.125	0.739	1.000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 현장훈련수당 세액공제	0.005	0.004	0.000	0.000	0.001	0.001
산업수요맞춤형 고교등졸업자 복직 중소기업 세액공제	0.000	0.002	0.000	0.000	0.000	0.000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0.000	0.003	0.277	0.077	0.210	0.060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0.002	0.021	0.002	0.064	0.002	0.054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82	0.139	0.162	0.179	0.143	0.170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436	6.755	0.470	0.724	0.947	2.07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N/A	0.009	N/A	0.001	N/A	0.003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14	0.017	0.000	0.000	0.003	0.004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0.000	0.000	0.001	0.002	0.001	0.00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N/A	0.062	N/A	0.017	N/A	0.027
벤처기업 등 출지에 대한 세액공제	N/A	0.020	N/A	0.224	N/A	0.178
기타	0.036	0.056	0.001	0.014	0.010	0.023

주: 1) N/A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기타로 분류되었거나 제도 도입 전 혹은 폐지된 경우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2019.

- (상대적 활용도 1: 세액공제를 신청한 전체 사업소득자 수 및 수혜금액 대비) 개인사업자는 본 특례제도의 상대적 활용도가 법인기업의 경우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2018년 본 특례제도 적용 사업소득자 수는 세액공제 활용 전체 사업소득자 361만 3,246명의 0.0004%로, 『국세통계연보』상 구분된 세액공제 항목 26개(기타 포함) 중 3번째로 가장 활용되지 않은 항목임

- 2018년 본 제도를 통한 수혜금액은 전체 사업소득자의 세액공제 수혜금액인 7,390억원의 0.01%로, 26개 세액공제 항목 중 5번째로 활용도가 낮음
- 사업소득자의 본 특례제도 상대적 활용도 추이를 살펴보면, 변화폭이 매우 미미하지만 사업소득자 수 기준으로 상대적 활용도는 상승 추세이고 수혜금액 기준으로는 감소 추세임
 - 사업소득자 수 기준 사업소득자의 본 세액공제제도 상대적 활용도는 2016년 0.0001%에서 2018년 0.0004%로 증가함
 - 수혜금액 기준으로는 2016년 0.02%에서 2018년 0.01%로 감소함

<표 IV-5>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사업소득자 수 비중(종합소득세)

(단위: 명, %)

구분	2016	2017	2018
세액공제 활용 사업소득자 인원	2,744,389	3,152,524	3,613,24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001	0.0003	0.0004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0.132	0.146	0.16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0.001	0.000	0.000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154	0.151	0.159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0.002	0.004	0.00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00	0.000	0.00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0.005	0.004	0.00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0.000	0.001	0.000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0.007	0.007	0.009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0.001	0.000	0.00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0.090	0.064	0.020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01	0.004	0.01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120	0.173	0.058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N/A	N/A	0.56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003	0.006	0.008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0.159	0.215	0.513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1.201	1.145	1.090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0.370	0.288	0.336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0.017	0.013	0.019
월세액 세액공제	0.944	1.192	1.27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90.680	90.949	88.87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0.002	0.001	0.001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0.275	0.291	0.395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1.192	1.091	1.22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4.504	4.100	5.037
기타	0.140	0.151	0.234

주: 1) N/A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기타로 분류되었거나 제도 도입 전 혹은 폐지된 경우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표 IV-6> 세액공제 항목별 공제 적용 수혜금액 비중(종합소득세)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세액공제 활용 사업소득자 수혜금액	3,691	4,454	7,39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2	0.01	0.01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2.37	2.63	1.84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0.02	0.02	0.00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9.71	17.86	11.73
연구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0.13	0.37	0.12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0.00	0.00	0.00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0.37	0.35	0.33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0.00	0.04	0.01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0.20	0.20	0.20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0.07	0.02	0.02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3.18	2.31	0.4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0.02	0.09	0.27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5.74	11.89	2.90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N/A ¹⁾	N/A	26.69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0.12	0.57	0.7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19	5.59	7.89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0.73	0.63	0.42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0.71	0.43	0.36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0.09	0.35	0.21
월세액 세액공제	2.42	2.96	2.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8.53	17.20	10.43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0.01	0.01	0.01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1.38	1.39	1.23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7.09	5.93	4.32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29.68	26.05	25.72
기타	2.22	3.09	1.66

주: 1) N/A는 공개된 자료가 없어 기타로 분류되었거나 제도 도입 전 혹은 폐지된 경우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 (상대적 활용도 2: 중소기업 조세지원 경영안정지원부문 제도들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부문 조세지원 제도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줌

- 2017~201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 부문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로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기준 모두에서 매년 99% 이상의 상대적 활용도를 보임
- 중소기업 경영안정 부문 나머지 조세지원제도들의 상대적 활용도는 모두 1% 미만으로 서로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비중은 수혜기업 수 기준 0.02%, 수혜금액 기준 0.02~0.03%로 매년 중소기업 경영안정 부문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줌

<표 IV-7>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경영안정 지원 부문¹⁾ 항목별 공제 적용 중소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법인세)

(단위: 개, 억원, %)

구분	수혜 중소기업 수		수혜금액	
	2017	2018	2017	2018
활용 중소기업 수 및 수혜금액	189,823	202,750	10,185	10,91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2	0.02	0.02	0.03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0.19	0.22	0.35	0.46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0.03	0.03	0.35	0.49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9.77	99.72	99.27	99.02

주: 중소벤처기업부(2019)에서 분류한 기준 참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 (상대적 활용도 2: 중소기업 조세지원 경영안정지원 부문 제도들을 활용한 전체 사업소득자 대비) 개인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본 특례제도의 상대적 활용도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부문 조세지원제도들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매년 수혜인원 기준 75~82%, 수혜금액 기준 80~87%의 비중을 보여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냄
 - 가장 낮은 활용도를 보이는 제도들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제도로 수혜금액 기준으로 0.11~0.13%의 비중을 보여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제도를 제외하면 모두 0.01% 미만의 비중을 나타냄

<표 IV-8>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경영안정 지원 부문¹⁾ 항목별 공제 적용 사업소득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종합소득세)

(단위: 명, 억원, %)

구분	수혜인원		수혜금액	
	2017	2018	2017	2018
활용 사업소득자 수 및 수혜금액	1,135,899	1,156,530	13,041	13,000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008	0.0011	0.002	0.008
월세액 세액공제	3.31	3.98	1.01	1.38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0.81	1.23	0.48	0.70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3.03	3.83	2.02	2.4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11.38	15.74	8.89	14.6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81.47	75.21	87.48	80.71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0.0005	0.0005	0.001	0.008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0.0026	0.0025	0.11	0.12

주: 중소벤처기업부(2019)에서 분류한 기준 참고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 (상대적 활용도 3: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제도들을 활용한 중소기업 대비) 앞선 상대적 활용도 분석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상생결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제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상대적 활용도를 보여줌
- 본 조세특례는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에서 각각 0.01~0.02%와 0.02%의 비중을 차지하여 유일하게 1% 미만 비중을 나타냄
 -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 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매년 수혜기업 수 기준 95% 이상, 수혜금액 기준 87%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표 IV-9>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항목별 공제 적용 기업 수와 수혜금액 비중(법인세)

(단위: 개, 억원, %)

구분	수혜 중소기업 수		수혜금액	
	2017	2018	2017	2018
활용 중소기업 수 및 수혜금액	197,920	211,636	1,405	1,676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1	0.02	0.02	0.02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1.73	1.79	4.31	4.2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57	2.66	7.10	8.4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5.69	95.54	88.58	87.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 (상대적 활용도 3: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제도들을 활용한 사업소득자 대비) 사업소득자의 경우 역시 상생결제 세액공제가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제도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상대적 활용도를 보여줌
 - 수혜기업 수와 수혜금액 기준 본 세액공제제도는 매년 0.01%보다 작은 비중을 차지하여 매우 낮은 활용도를 보여줌
 - 가장 높은 활용도를 보인 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로 매년 수혜기업 기준 97% 이상, 수혜금액 기준 9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

<표 IV-10> 「조세특례제한법」 분류기준상 중소기업 부문 항목별 공제 적용 사업소득자 수와 수혜금액 비중(종합소득세)

(단위: 명, 억원, %)

구분	수혜인원			수혜금액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활용 사업소득자 수 및 수혜금액	885,513	946,012	887,746	11,225	12,463	11,27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0.0003	0.0010	0.0015	0.005	0.002	0.009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0.41	0.49	0.66	0.78	0.94	1.2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36	1.68	1.35	5.75	7.52	5.7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98.23	97.83	97.99	93.47	91.54	93.0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3) 과거 유사 특례제도와 비교: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¹⁶⁾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기업 간 어음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과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자금난과 연쇄부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제도임
 - 동 제도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제도로 2000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일몰 연장되어 오다, 2013년 말 목표 달성을 이유로 일몰됨
 - 제도의 운영방식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유사함¹⁷⁾

16) 한성민 외(2015)의 제1장과 제2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17)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운용 경위는 한성민 외(2015), pp. 5-6 참고

- 지원 대상이 되는 거래는 2006년 이전 거래 양방 중 최소 하나는 중소기업인 거래, 2006년 이후 중소기업 간 거래이고 네트워크론의 경우 판매자가 중소기업인 거래를 포함함
- 지원 대상 결제수단은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 현금성결제로, 본 특례제도가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결제만을 인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결제수단을 인정함
- 세액공제액은 지원 대상 결제수단으로 결제한 금액에서 약속어음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값으로 공제율은 0.15~0.5% 범위에서 여러 차례 변동이 있었음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는 다르게 대기업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었음

□ 과거 제도와 현 제도의 시차가 존재하고 일몰 직전 제도와 도입 초기 제도 간의 비교라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나,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가 활용되었던 정도를 살펴보면, 본 특례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활용도를 보여줌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2009~2013년 평균 수혜기업 수는 2,633개로, 2018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수혜기업 수 40개의 약 65배임
- 수혜금액을 기준으로 2009~2013년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평균 수혜금액은 406억원으로 2018년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수혜금액 3억원의 약 135배임
- 두 제도 간 큰 격차는 지원 대상 결제수단의 범위와 공제율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는 상생결제뿐 아니라 다양한 현금성 결제를 공제대상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상생결제 지급금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는 본 특례제도에 비하여 공제대상금액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일몰 직전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0.5%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최대 공제율 0.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표 IV-1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총계		중소기업		일반법인	
	신고법인 수	금액	신고법인 수	금액	신고법인 수	금액
2013년	2,520	30,569	2,494	29,669	26	900
2012년	2,665	38,716	2,639	36,520	26	2,196
2011년	2,619	42,238	2,589	39,128	30	3,110
2010년	2,463	33,836	2,437	32,229	26	1,607
2009년	2,576	40,728	2,546	36,908	30	3,820
평균	2,633	40,638	2,601	34,819	32	5,819

자료: 한성민 외(2015) p. 26.

4) 소결

- 활용도 분석 내용을 종합하면 본 조세특례의 활용도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최종 판단됨
 - 이는 백강(2019)에서 상생결제 거래기업의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임
 - 유효표본 168개 기업 중 3.8%만 본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응답함

- 본 특례제도의 낮은 활용도는 낮은 공제혜택 수준, 현실적이지 못한 적용 요건,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와 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제대상금액의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다 보니 제도 이용 유인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백강(2019)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의 설문기업들이 타 제도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아 본 특례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7.1%의 기업들은 까다로운 요건을 본 제도 미이용 이유로 응답함
 - 공제혜택 수준과 공제 적용 요건에 대한 분석은 타당성 분석에서 자세히 다룸
 - 상생결제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지만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기업들도 본 특례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2018년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한 1~N차 거래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의 수는 379개이고, 본 조세특례 혜택을 받은 기업은 40개로, 10.6%의 기업만 세제혜택을 받음
- 이는 상당수 기업들이 본 특례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함
- 백강(2019)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표본기업의 38.7%가 본 세액공제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이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3.0%인 것을 고려할 때, 상생결제를 이용하는 기업의 상당수가 세제혜택을 알지 못한다고 추측 가능함

<표 IV-12> 상생결제 세제혜택 미선택 이유(복수 응답)

(단위: 개, %)

구분	전체 기업		구매기업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3차 이하 협력기업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표본	168	100.0	27	100.0	100	100.0	34	100.0	7	100.0
상생결제 미이용	89	53.0	15	55.6	58	58.0	14	41.2	2	28.6
타 항목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음	11	6.5	3	11.1	4	4.0	3	8.8	1	14.3
요건이 까다로움	12	7.1	2	7.4	7	7.0	2	5.9	1	14.3
새무대리인이 추천하지 않음	6	3.6	1	3.7	3	3.0	2	5.9	0	0.0
세액공제 한도 모두 소진	2	1.2	0	0.0	2	2.0	0	0.0	0	0.0
상생결제를 통한 세제혜택 잘 모름	65	38.7	9	33.3	37	37.0	14	41.2	5	71.4
현금 지급 받음	1	0.6	0	0.0	1	1.0	0	0.0	0	0.0
고객사에 불편한 업무 발생 가능	1	0.6	0	0.0	1	1.0	0	0.0	0	0.0
혜택에 대해 잘 모름	4	2.4	0	0.0	2	2.0	2	5.9	0	0.0
없음/무응답	1	0.6	0	0.0	1	1.0	0	0.0	0	0.0

자료: 백강(2019) 요약본 p. 8의 <표 III-13>를 재구성함

나.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에 대한 본 특례제도의 기여도

- 본 조세특례제도가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 제고에 미친 기여도는 다음의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추정함
 - 연도별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한 중견·중소기업 중 본 특례제도를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의 비중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한 중견·중소기업의 수 증가분 대비 본 특례제도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수 증가분의 비중
 - 연도별 증가분과 제도도입 이후 누적 증가분을 기준으로 추정
 - 지표 계산 시,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 이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기여도를 추정할 시 과대추정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함
 - 세액공제 때문에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였는데, 세액공제를 신청했을 가능성이 존재함

[그림 IV-1] 상생결제제도 이용 만족 이유

(단위: %)



주: 상생결제제도 이용에 '보통', '만족', '매우만족' 응답기업 210개사 기준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19년 거래기업 상생결제제도 이용실태 조사』, 2020, p.18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2019년 거래기업 상생결제제도 이용실태 조사」¹⁸⁾ 결과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 이용에 만족의사를 보인 기업들 중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만족 이유로 응답한 기업은 14.3%에 불과함
-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만족 이유는 대금회수의 안정성 보장(65.2%)과 구매기업과 하위 거래기업과의 신뢰관계 강화(46.7%)로 나타남
- 이는 상생결제제도 이용 기업들이 세제혜택보다는 다른 이유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이미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있던 중 세액공제제도의 존재를 뒤늦게 파악하여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이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함

- 상생결제제도 이용기업 수 대비 상생결제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의 비중을 기준으로 본 특례제도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상생결제제도 활용도에 대한 본 특례제도의 기여는 높지 않은 수준으로 판단됨
- 2018년 기준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한 중소기업의 수는 338개인데, 이 중 39개의 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세액공제 신청기업의 비중은 11.5%로 나타남
-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신청한 종합소득세 신고자를 포함하면 비중은 15.4%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IV-13>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대비 본 특례제도 이용기업 수 비중

(단위: 개, %)

신고연도		2017	2018
중소기업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261	338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29	39
	비중	11.1	11.5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종합소득세 신고자 포함)	38	52
	비중	14.6	15.4
중견기업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41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1
	비중		2.4

주: 1.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2. 상생결제제도 이용기업 수의 경우, 사업연도 기준 통계로 사업연도는 신고연도 직전연도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국세청 제공 자료

18) 「2019년 거래기업 상생결제제도 이용실태 조사」는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받은 1차 이하 거래기업의 애로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분석하여 상생결제제도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한 활용하고자 실시함

- 연도별 기여도의 변화는 법인기업만 고려했을 때 0.4%p, 종합소득 신고자 포함 시 0.8%p로 미미한 수준임
 - 중견기업의 경우, 2018년에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은 1개로, 본 특례제도의 상생결제제도 활용도에 대한 기여율은 2.4%로 나타남
 - 본 조세특례가 2017년 12월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중견기업들이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본 특례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상생결제제도 이용기업 수 증가분 대비 상생결제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증가분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 본 조세특례의 기여도는 작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과대추정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기여도는 낮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됨
 - 누적 증가분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본 조세특례의 기여도는 19.6%로 나타났고 종합소득세 신고자까지 포함하면 26.1%임
 - 기간을 2016~2017년과 2017~2018년으로 나누어 기여도의 추세를 살펴보면, 법인기업 기준 기여도가 23.8%에서 13.0%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

<표 IV-14> 상생결제 이용기업 수 증가분 대비 본 특례제도 이용기업 수 증가분 비중

(단위: 개, %)

신고연도		2016~2018	2016~2017	2017~2018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이용기업 수 증가분	199	122	77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증가분	39	29	10
	비중	19.6	23.8	13.0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증가분 (종합소득세 신고자 포함)	52	38	15
	비중	26.1	31.1	19.5
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 이용기업 수 증가분			1
	세액공제 신청기업 수 증가분			1
	비중			100.0

주: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함
 상생결제제도 이용기업 수의 경우, 사업연도 기준 통계로 사업연도는 신고연도 직전연도임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국세청 제공자료

- 결론적으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그 기여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여러 원인으로 본 특례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본 특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면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에 대한 기여도는 개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2. 경제적 효과성

가.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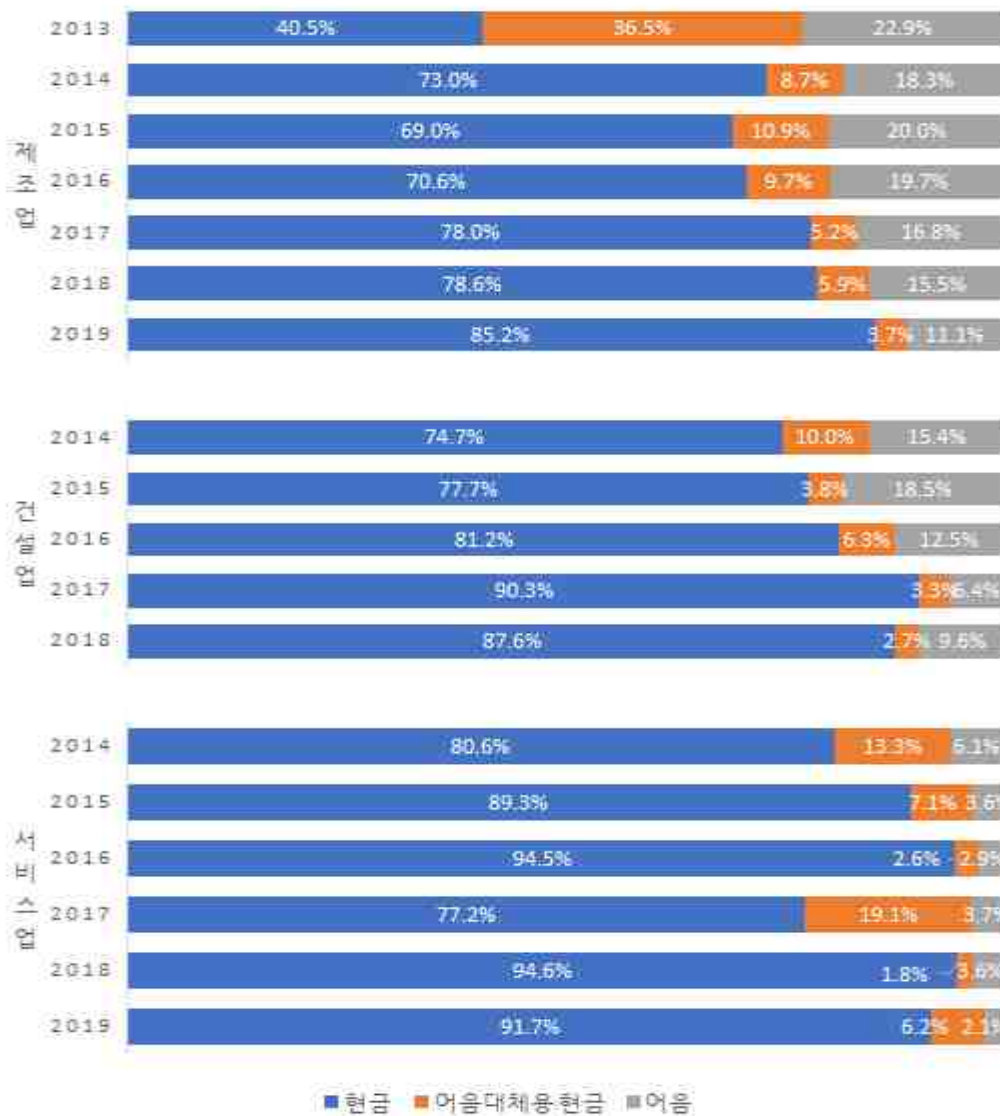
- 본 특례제도는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 이는 상생결제제도가 기업 간 거래 시 부작용이 많은 어음결제보다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의 이용을 장려하기 때문
 - 따라서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와 현금 및 현금성 결제 비중의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또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따라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급(수취)기일과 결제기일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 본 소절에서는 중소기업 결제환경 관련 지표들의 추세를 분석하여 본 조세특례의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효과를 평가함
 - 보다 정확한 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상생결제 세액공제 수혜·비수혜기업 간 비교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자료의 한계로 불가능함
 - 결제환경 관련 지표와 상생결제 세액공제 수혜 여부를 모두 포함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용 자료를 가지고 상생결제 세액공제 도입 전후 결제환경 지표들의 변화를 분석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함
 - 분석자료는 중소기업의 결제수단별 판매·구매대금 결제 비중, 어음의 지급(수취) 및 결제기일 등을 조사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함

1) 결제수단별 평균 수취 및 지급비율

- 결제수단별 평균 판매(공사, 용역)대금 수취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어음과 어음대체용 현금(현금성 결제) 수취비율은 감소하고 현금 수취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 제조업의 경우, 2013년 판매대금의 평균 수취비율은 현금 40.5%, 어음대체용 현금 36.5%, 어음 22.9%에서 2014년 현금 73.0%, 어음대체용 현금 8.7%, 어음 18.3%로 큰 변화가 있는 이후, 현금 수취비율은 상승하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의 수취비율은 감소함
 - 2019년 기준 현금 수취비율은 85.2%로 나타나 2014년 대비 증가함
 - 2019년 기준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의 수취비율은 각각 3.7%와 11.1%로 2014년 대비 감소함
 - 건설업종에서는 결제수단별 평균 공사대금 수취비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등락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현금 수취비율은 증가 추세,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 수취비율은 감소 추세로 나타남
 - 현금 수취비율은 2014년 74.7%에서 2018년 87.6%로 상승함
 -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의 수취비율은 각각 2014년 10.0%와 15.4%에서 2018년 2.7%와 9.6%로 감소함
 - 서비스업종의 경우 현금과 어음대체용 현금 수취비율이 크게 등락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현금 수취비율은 증가, 어음대체용 현금 수취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
 - 현금 수취의 경우 그 비중이 2014년 80.6%에서 2019년 91.7%로 증가함
 - 어음대체용 현금 수취비율이 2014년 13.3%에서 2019년 6.2%로 감소함
 - 어음 수취비율은 매년 10%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4년 6.1%에서 2019년 2.1%로 감소함
 - 업종 간 비교를 해보면, 제조업이 대체적으로 어음결제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2019년에도 여전히 10%를 상회함
 - 서비스업의 어음결제 비중은 2014년을 제외하면 2~3%대로 낮은 수준임
- 매출액 규모별로 평균 판매(공사, 용역)대금 수취비율을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 수취비율은 줄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 수취비율은 늘어남

-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 25억원 미만 제조업의 경우 현금, 어음대체용 현금, 어음의 수취비율이 각각 87.3%, 3.5%, 9.2%,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의 경우 각각 76.2%, 5.5%, 18.2%로 나타남
- 특히 현금과 어음 수취비율의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거래 규모 또한 커질 수 있으므로 현금 거래에 여러 제약이 존재할 수 있고, 어음 거래는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제약이 덜하기 때문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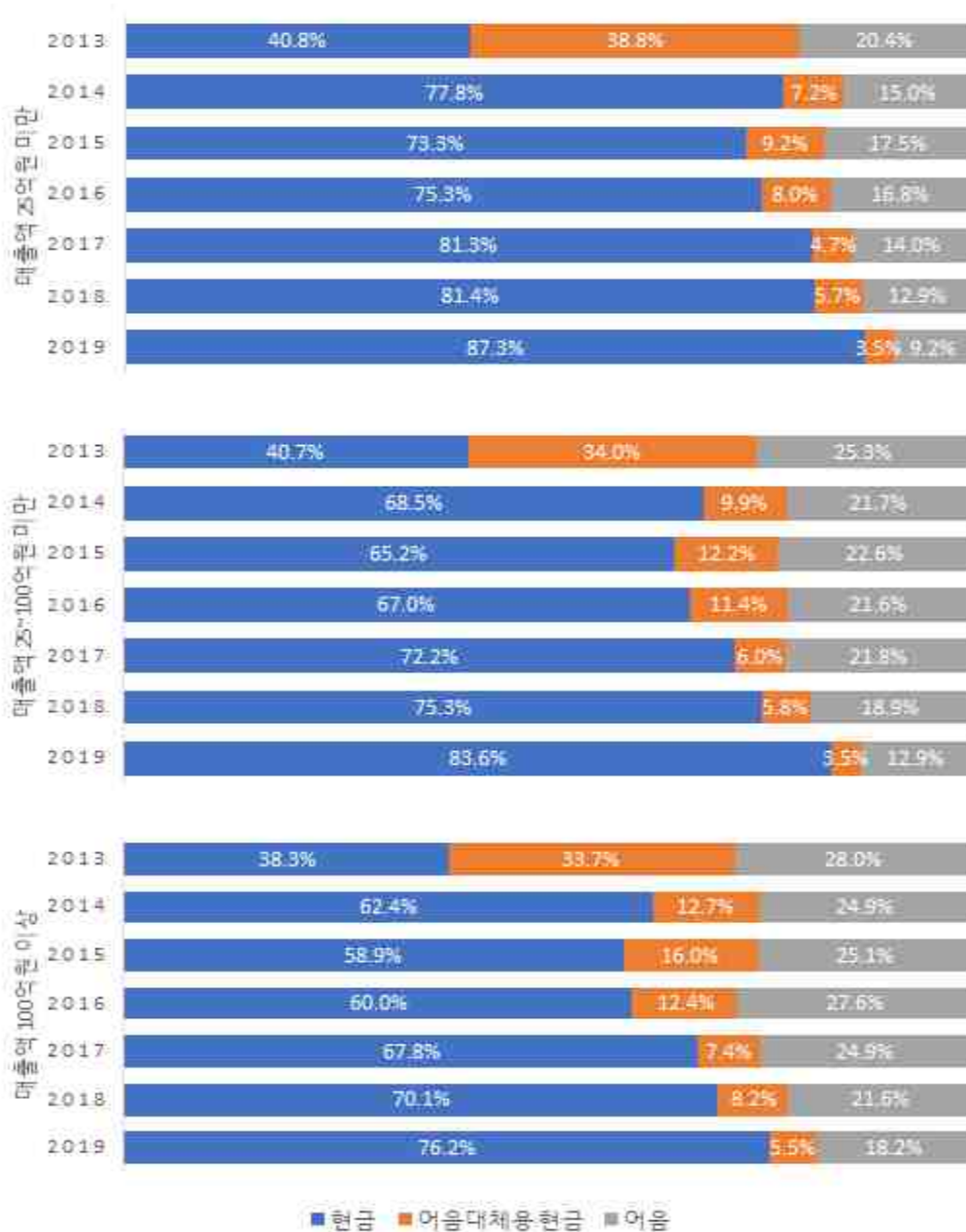
[그림 IV-2] 판매(공사, 용역)대금 평균 수취비율



주: 어음대체용 현금에는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건설업과 서비스업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줌¹⁹⁾
- 결제수단별 평균 수취비율의 추세는 매출액 규모에 상관없이 현금 수취비율이 증가하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의 수취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줌

[그림 IV-3] 판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수취비율(제조업)



주: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9) 부록의 [부도 1]과 [부도 2] 참고

- 구매대금의 평균 지급비율 역시 판매대금의 경우와 비슷하게 현금 지급비율은 증가하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 지급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제조업을 기준으로 현금 지급비율은 2013년 71.1%에서 2019년 94.1%로 증가하였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의 경우 각각 2013년 17.5%와 11.4%에서 2019년 2.3%와 3.6%로 감소함
 - 판매대금 결제수단별 수취비율과 비교했을 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부분 현금결제로 이루어지고 어음결제의 비율이 판매대금 수취의 경우보다 절반 이하로 낮음
 - 이는 원자재 등 구매 규모보다 판매 규모가 크고 판매 상대기업은 대기업이고 구매 상대기업은 중소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음

[그림 IV-4] 구매대금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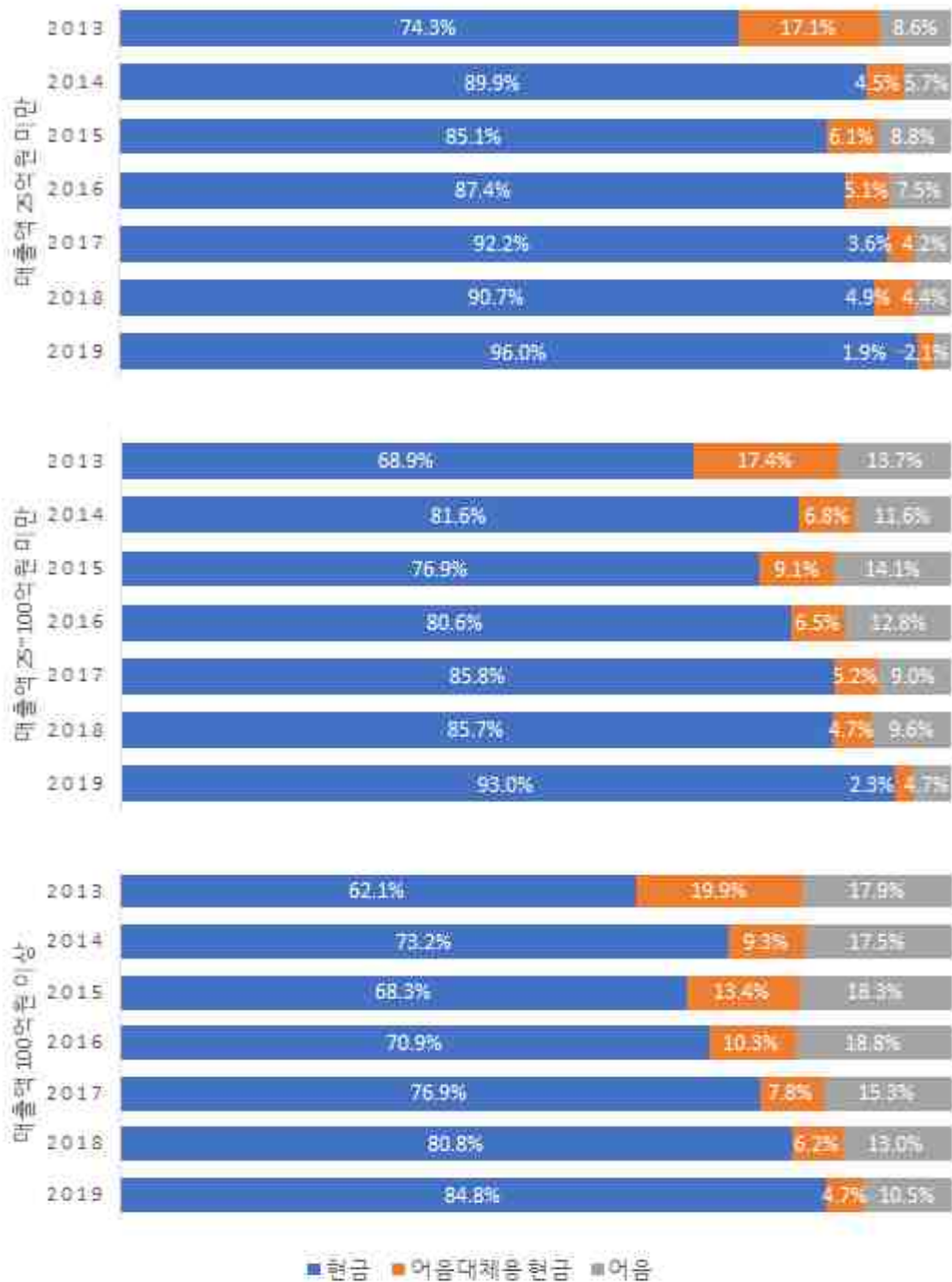


주: 어음대체용 현금에는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구매대금의 결제수단별 평균 지급비율을 매출액 규모와 구매금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매출액 또는 구매금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현금 지급비율의 수준은 낮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의 지급비율 수준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제조업 기준, 매출액 25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2019년 현금, 어음대체용 현금, 어음의 지급비율은 각각 96.0%, 1.9%, 2.1%이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84.8%, 4.7%, 10.5%임
 - 2019년 기준, 구매금액 10억원 미만 중소기업(제조업)의 현금, 어음대체용 현금, 어음의 지급비율은 각각 96.4%, 1.7%, 2.0%이고, 구매금액 4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경우 각각 86.6%, 3.8%, 9.6%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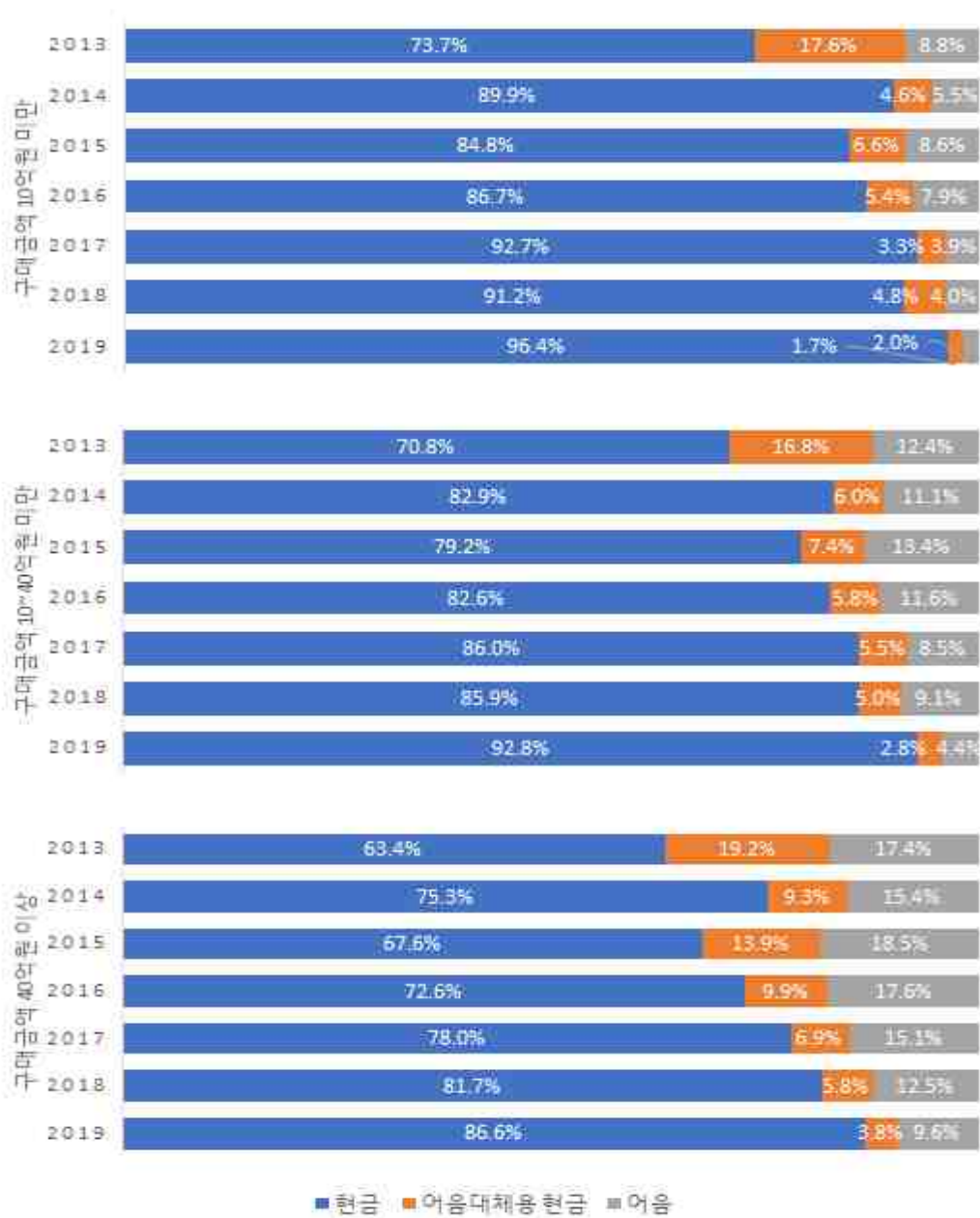
- 평균 지급비율의 추세는 매출액과 구매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현금 지급비율이 증가하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의 지급비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여줌

[그림 IV-5] 구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주: 어음대체용 현금에는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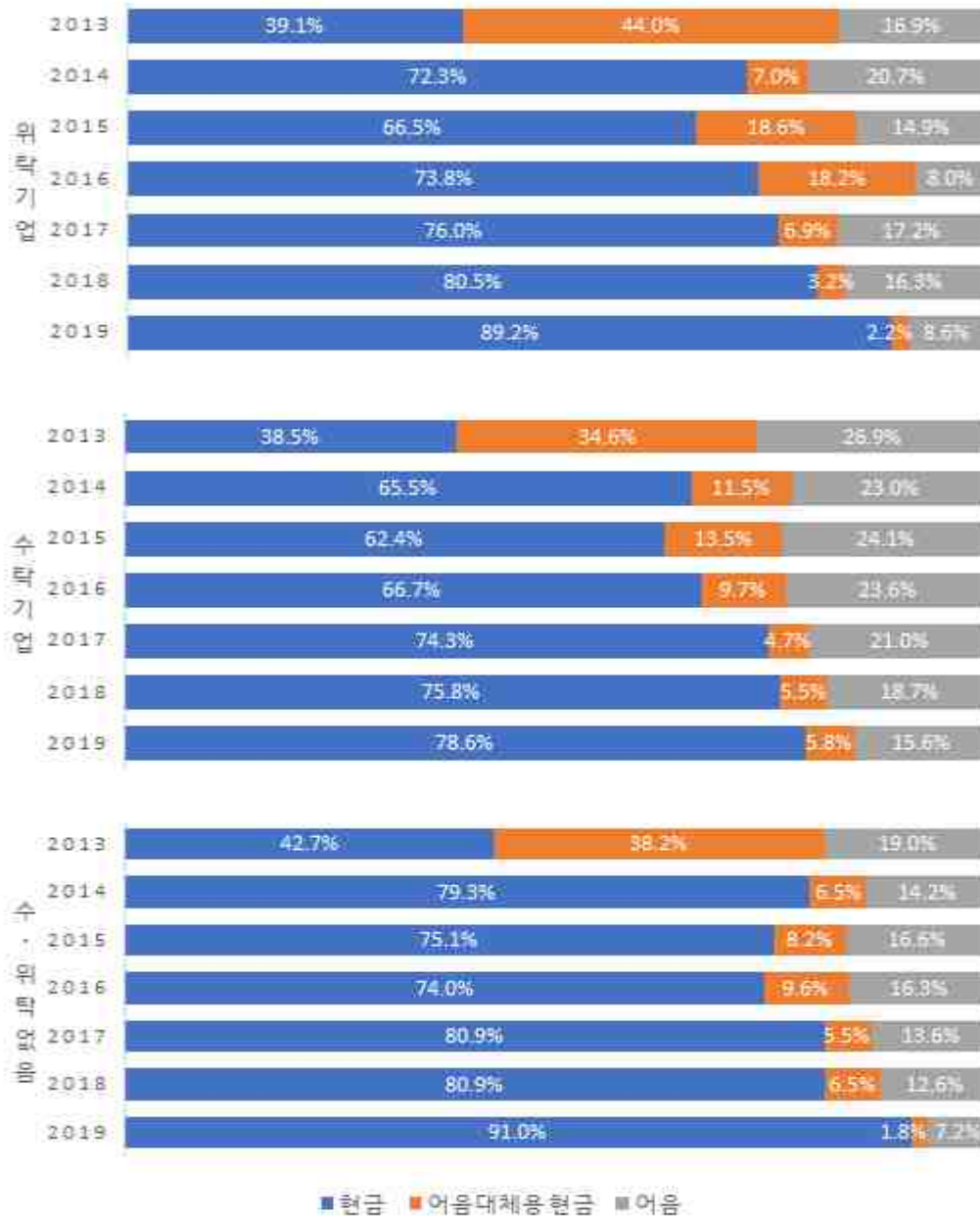
[그림 IV-6] 구매대금 구매금액 규모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주: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결제수단별 판매대금 수취비율을 수·위탁기업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과 수·위탁이 없는 기업에 비해 높은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 결제비율을 보여줌
 - 수탁기업의 경우 2019년 기준 어음 수취비율은 15.6%로, 위탁기업 8.6%, 수·위탁이 없는 기업 7.2%에 비해 높은 수준임

[그림 IV-7] 판매대금 거래형태별 평균 수취비율(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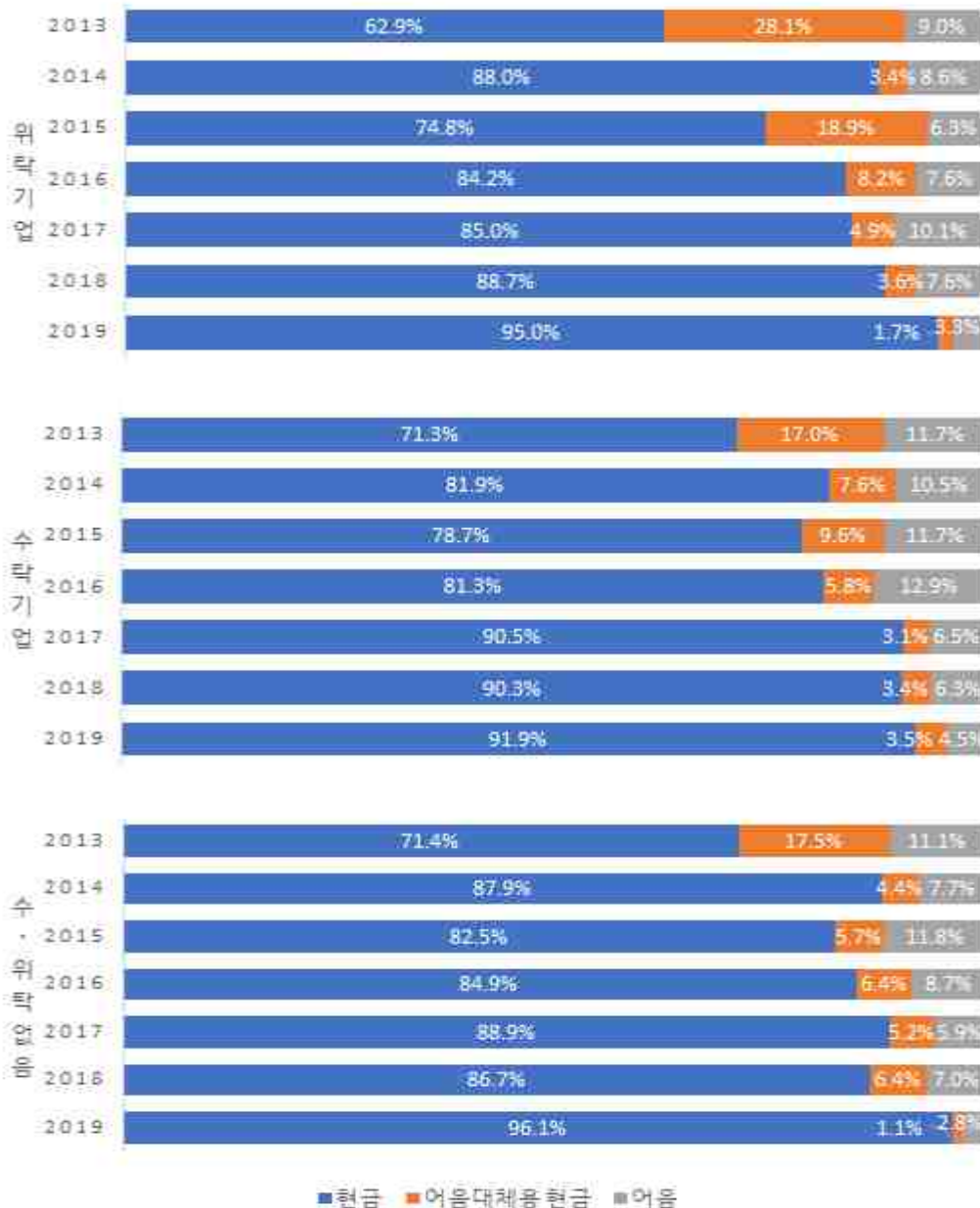


주: 1.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2.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아 재위탁을 하는 기업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어음대체용 현금 역시 5.8%로 다른 거래형태의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
- 현금 수취비율은 78.6%로 다른 거래형태의 기업보다 낮은 수준임
- 결제수단별 구매대금 지급비율의 경우 거래형태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으나 수탁기업이 다른 거래형태의 기업보다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 지급비율이 높고 현금 지급비율이 낮음

- 수탁기업을 수탁 단계별로도 살펴보았는데, 상위 단계에 있는 기업일수록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 결제비율이 높고 현금 결제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여줌²⁰⁾
- 대금 수취 및 지급비율의 추세는 거래형태와 수탁단계와 상관없이 현금 결제 비중이 증가하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결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줌

[그림 IV-8] 구매대금 거래형태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주: 1.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2.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아 재위탁을 하는 기업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0) 부록의 [부도 3]과 [부도 4] 참고

2) 어음 수취 및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은 30~40일, 평균 결제기일은 70~80일 선에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업종별로 받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과 결제기일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기일이 상대적으로 가장 길고 건설업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실상 업종 간 차이는 미미한 수준으로, 업종과 무관하게 평균 수취기일은 30~40일, 평균 결제기일은 70~80일 선을 유지함
 - 제조업 기준 매출액 규모별 평균 수취기일과 결제기일의 차이는 거의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동도 없음
 -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도 유사한 양상을 보여줌²¹⁾
 - 제조업 기준 거래형태별 평균 수취기일과 결제기일의 경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수·위탁이 없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기일이 긴 경향이 있으나 기일의 차이는 미미함
 - 거래형태별 평균 수취기일과 결제기일의 추세도 큰 변동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줌
 - 수탁기업 거래단계별로 평균 수취기일과 결제기일도 살펴본 결과, 거래단계에 따라 기일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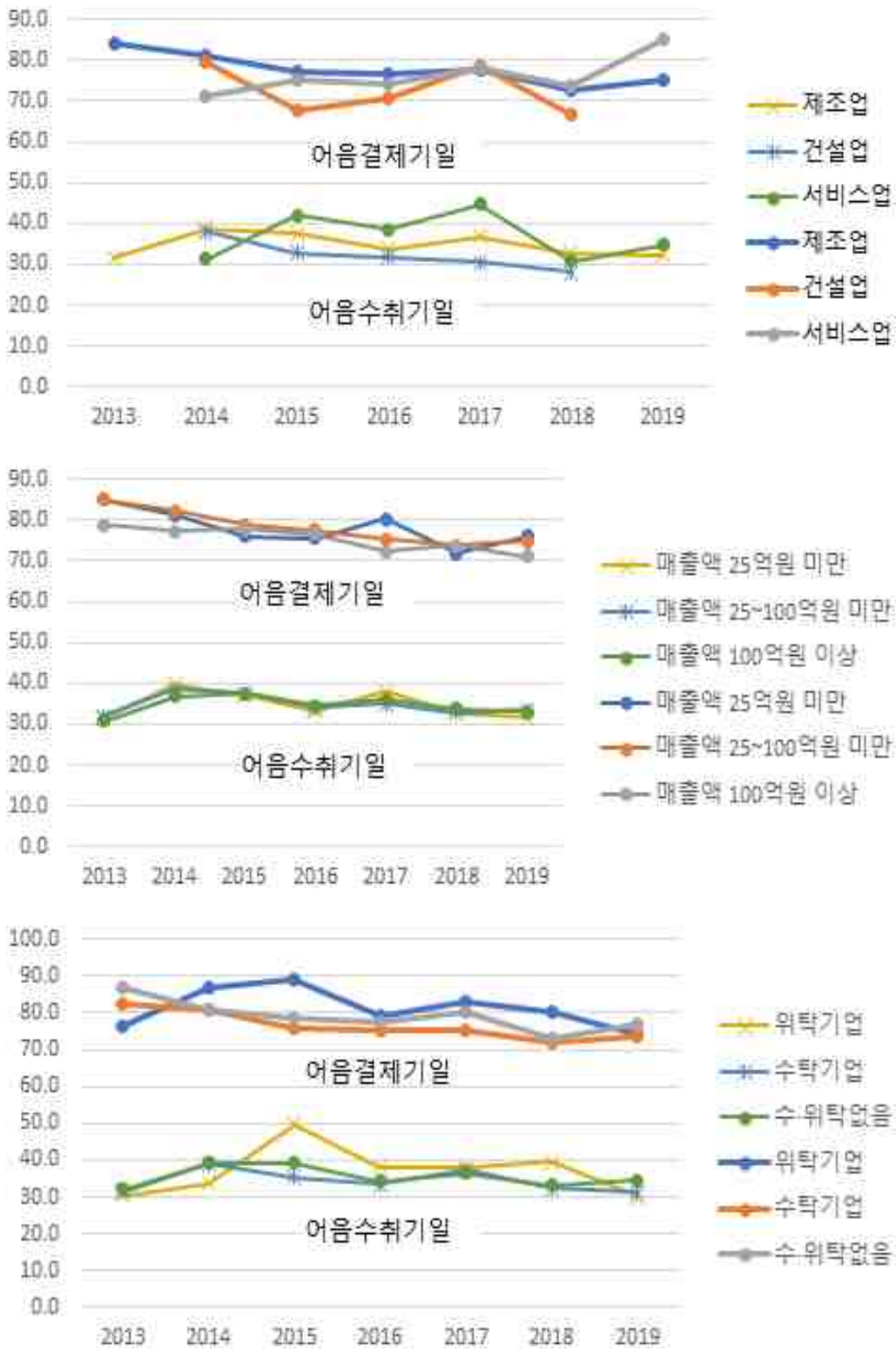
-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평균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역시 큰 변동 없이 유지되어 오는 추이를 보임
 - 제조업 기준 지급어음의 평균 지급기일은 30~40일, 평균 결제기일은 70~80일 범위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기준으로 매출액 규모, 구매금액 규모, 수·위탁기업 여부 등에 따른 지급어음의 평균 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²³⁾

21) 부록의 [부도 5]와 [부도 6] 참고

22) 부록의 [부도 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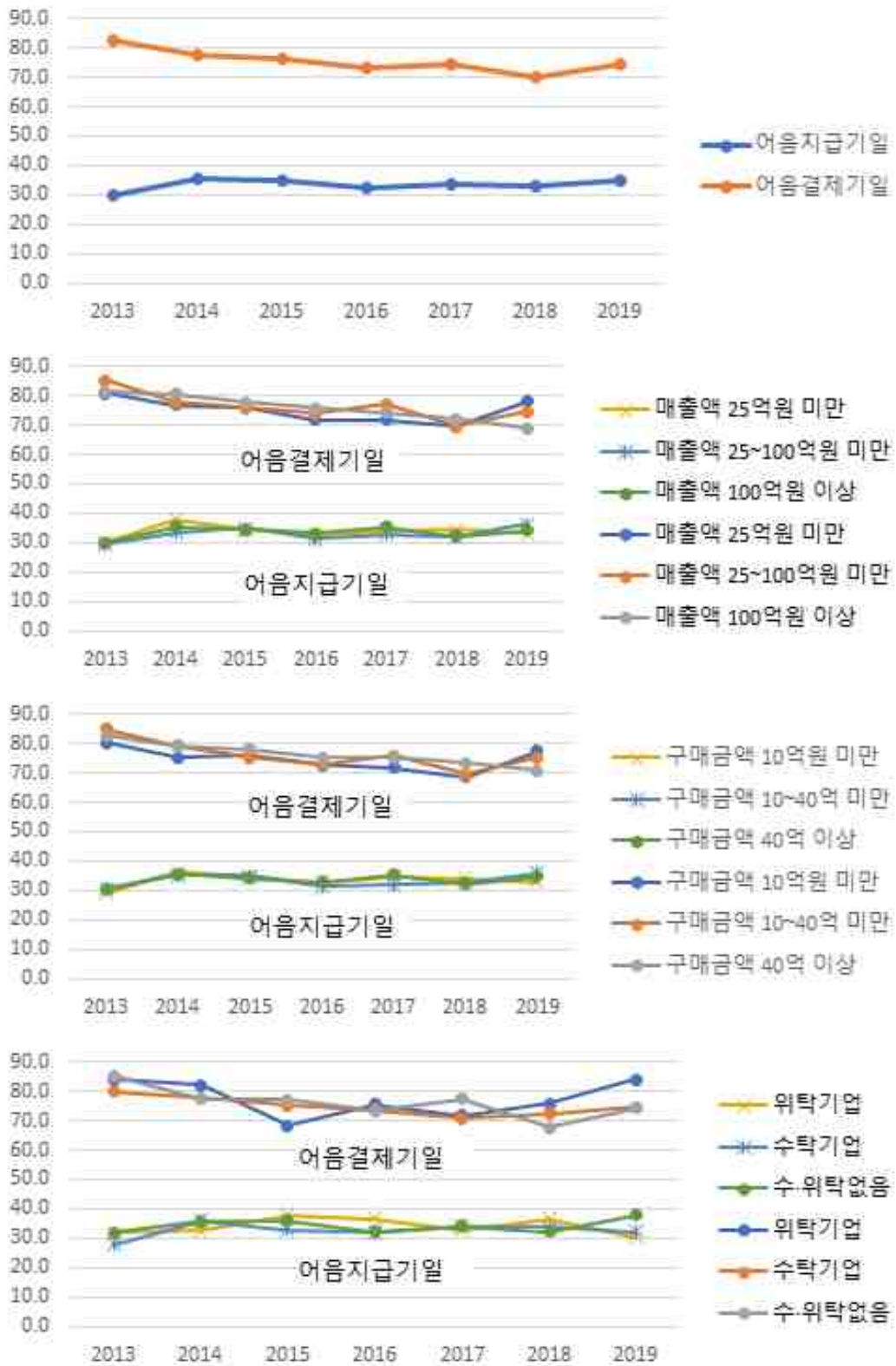
23) 수탁기업 거래단계별 평균 지급기일과 결제기일은 부록의 [부도 7]과 [부도 8]을 참고

[그림 IV-9]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추세



주: 매출액 규모별과 수·위탁기업별 추세는 제조업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10]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추세



주: 제조업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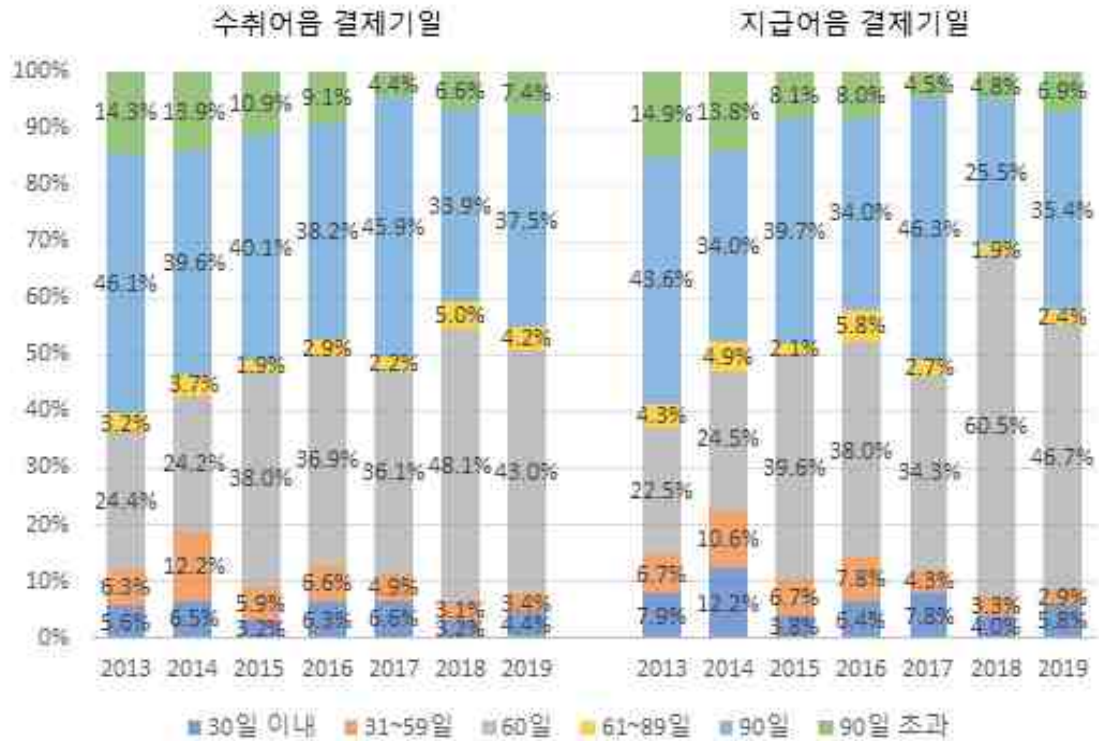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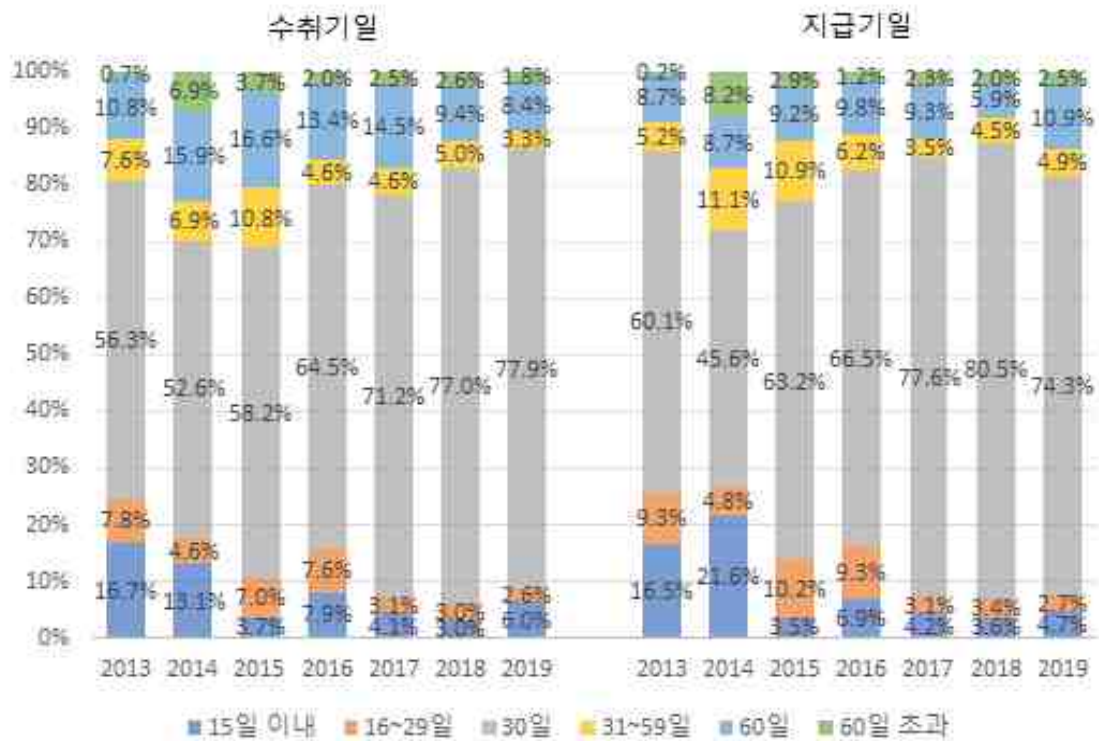
3) 소결

- 결제수단별 수취 및 지급비율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금결제의 비중은 높아지고 어음대체용 현금과 어음결제의 비중은 낮아짐
 - 따라서 본 특례제도가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어음결제 비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상생결제제도가 도입된 이후 어음결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고 상생결제 세액공제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

- 전반적으로 어음결제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특정 기업집단의 경우 어음결제 비중이 여전히 10%를 상회하여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의 필요성을 보여줌
 - 제조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어음결제 비중이 높음
 - 매출액 규모가 100억 이상인 경우 어음결제 비중이 20% 가까이 높은 수준임
 - 수탁기업의 경우도 어음결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상위 거래단계의 수탁기업의 경우 거의 20% 가까운 어음결제 비중을 보여줌

- 본 특례제도와 상생결제제도의 중소기업 어음 수취·지급·결제기일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결제 관행의 영향으로 추측됨
 - 중소기업의 수취어음의 평균 수취기일과 지급어음의 평균 지급기일의 분포를 살펴보면, 연도별 변화가 다소 있으나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 수취기일과 지급기일이 매년 30일에 집중하여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결제기일의 경우도 연도별 변화가 있지만 대부분 기업들의 평균 결제기일이 매년 60일과 90일에 집중하여 분포해 있음
 - 이는 기업경영 현장에서 관행상 또는 기업운영 편의상 따르는 수취·지급·결제기일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함

[그림 IV-11] 어음 수취 및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분포



주: 제조업 기준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나.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선 효과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은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이는 상생결제제도 이용으로 금융비용 절감,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의 안정성 개선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

- 본 소절에서는 상생결제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평가하기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경영성과 관련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함
 - 본 장의 제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은 많지 않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엄밀한 미시계량분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 수혜기업 관측치가 적어서 특정 기업의 식별 가능성과 통계적 유의성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
 - 대신 본 연구에서는 상생결제 세액공제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경영성과지표의 평균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본 특례제도의 효과를 평가함
 - 다음 두 가지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으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수행함
 - 본 특례제도의 수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중소기업의 2014~2018년 연도별 경영성과지표 비교
 - 2017년과 2018년 각 신고연도별 본 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과 수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지표 비교

- 상생결제 세액공제 수혜 경험 유무에 따라 경영성과지표를 비교해 보면, 수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수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서 성과가 더 높게 나타남
 - 수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500억~600억원 수준으로 매출액 규모가 200억원대인 수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두 배 이상 큰 규모임
 - 영업이익의 경우, 수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30억~40억원대인 반면 수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은 10억~20억원대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도 수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수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경우, 본 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과 없는 중소기업 간 격차가 본 특례제도 도입 이후 더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2014~2015년 두 기업집단의 매출액 격차는 약 280억원 수준이었는데, 2018년 그 격차가 375억원 수준으로 확대됨
 - 두 기업집단 간 영업이익 격차는 2017년 가장 작았지만 2018년 28억원으로, 본 특례제도 도입 이전 영업이익 격차 20억~25억원 수준에서 크게 확대됨
 - 당기순이익에서는 이러한 두 기업집단 간 격차의 확대가 발견되지 않음

<표 IV-15> 특례제도 수혜 유·무 경험 중소기업 간 성과지표 비교

(단위: 백만원)

신고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출액 평균의 차이					
수혜기업 평균	50,855	51,645	53,227	53,742	59,301
비수혜기업 평균	22,255	23,320	23,502	23,371	21,773
평균값 차이	28,600	28,325	29,726	30,371	37,528
표준오차	7,837	8,112	8,405	8,377	8,345
t값	3.649	3.492	3.537	3.625	4.497
p값	0.000	0.001	0.000	0.000	0.000
영업이익 평균의 차이					
수혜기업 평균	3,337	3,822	3,860	4,158	4,853
비수혜기업 평균	1,339	1,370	1,913	2,473	2,012
평균값 차이	1,998	2,452	1,946	1,685	2,841
표준오차	886	1,108	1,303	1,422	1,273
t값	2.256	2.213	1.493	1.185	2.232
p값	0.025	0.028	0.136	0.237	0.027
당기순이익 평균의 차이					
수혜기업 평균	3,065	3,722	3,592	4,052	3,704
비수혜기업 평균	1,010	1,248	1,806	2,000	1,703
평균값 차이	2,056	2,474	1,786	2,053	2,001
표준오차	768	949	1,065	1,203	1,029
t값	2.678	2.605	1.678	1.706	1.944
p값	0.008	0.010	0.094	0.089	0.053

주: 수혜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는 중소기업이고 비수혜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적은 있으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중소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신고연도 2017년과 2018년에 본 조세특례의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지표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단 2018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매출액 격차는 통계적으로 유의함
 - 수혜기업의 매출액이 비수혜기업의 매출액보다 237억원 큰 것으로 나타남

<표 IV-16> 특례제도 수혜·비수혜 중소기업 간 성과지표 비교

(단위: 백만원)

신고연도	2017	2018
매출액 평균의 차이		
수혜기업의 평균	39,768	54,750
비수혜기업 평균	47,588	31,083
평균값 차이	-7,820	23,668
표준오차	15,922	10,840
t값	-0.491	2.183
p값	0.624	0.031
영업이익 평균의 차이		
수혜기업 평균	1,980	3,604
비수혜기업 평균	5,843	3,236
평균값 차이	-3,864	368
표준오차	2,863	1,829
t값	-1.350	0.201
p값	0.178	0.841
당기순이익 평균의 차이		
수혜기업 평균	1,763	2,852
비수혜기업 평균	4,957	2,963
평균값 차이	-3,194	-111
표준오차	2,354	1,648
t값	-1.357	-0.067
p값	0.176	0.946

주: 수혜기업은 해당 신고연도에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던 중소기업이고 비수혜기업은 해당 신고연도에 세액공제는 받았으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수혜기업의 2017년 성과지표는 비수혜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비수혜기업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변화함

- 2017년 수혜기업의 매출액은 비수혜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18년 수혜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비수혜기업보다 더 커짐
-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7년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보다 낮은 수준이었는데 2018년에는 두 기업집단이 비슷한 수준을 보여줌
- 결과적으로 수혜기업의 경영성과는 개선되는 추세, 비수혜기업은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줌

□ 본 소절에서의 분석결과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지표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보여줌

○ 하지만 매출액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의 중소기업 경영성과지표 개선에 대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본 특례제도 도입 이전부터 본 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본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줌
- 또한 수혜기업들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상승 추세인 것은 이러한 지표들 수준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수혜기업으로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함

○ 경영성과지표가 높은 수준인 기업들만 세제혜택을 받는 양상이 나타난 것은 제도 설계상 경영성과지표가 낮은 수준인 기업들에 본 특례제도 이용을 유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을 시사함

V. 타당성 평가



V. 타당성 평가

- 본 장에서는 다음의 관점에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을 분석함
 -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정책여건을 분석하여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검토함
 -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 등의 측면에서 본 조세특례가 본래 취지에 맞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함
 - 본 특례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제도들이 있는지 조사하여 재정적 관점에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지 점검함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 일반적으로 정부는 형평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장실패를 교정하거나 재분배(redistribution)를 통해 시장에 개입함
 - 정부는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제도, 재정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
 - 이러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개선될 경우 시장의 효율성 및 사회적 후생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의 효율성 또는 형평성이 개선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기대하지 않았던 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님

- 기업의 대금결제수단에 정부가 개입하는 정당성의 근거는, 중소기업 금융의 관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찾을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현금, 현금성 결제, 어음 등을 통해 판매대금을 받음
 -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받을수록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강화됨
 - 어음 결제의 비중이 높을수록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은 취약해짐

- 특히 어음 결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단점과 부작용이 있음
 - 결제일 이전, 할인을 통해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경우 금융비용이 발생함²⁴⁾
 - 어음 결제일이 늦어지게 되면 기업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
 -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을 수취한 기업은 자금 회수가 어려워져 부도 확률이 높아지고, 이는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어음의 비중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본 절에서는 현재 경제 및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금융 관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시장실패 가능성 여부를 진단하고 정부 시장개입의 타당성을 분석함
- 분석을 위해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자금조달사정 여건 등을 살펴봄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의 영향을 받음
 -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분석에는 다음의 경제지표를 이용함
 -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 수익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 안정성: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 중소기업 자금조달사정 여건 분석에서는 다음 지표들을 살펴봄
 - 자금조달사정 SBHI 지표
 - 어음·수표 사용 비중
 - 어음부도율

가.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 2013~2015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 기업의 성장성은 2017년까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다시 둔화됨
- 매출액 증가율은 2013년 2.1%에서 2015년 0.3%로 둔화되었으나 2017년 9.2%로 개선됨
 - 하지만 2018년 매출액 증가율은 4%로, 전년 대비 5.2%p 하락함

²⁴⁾ 할인이란 기업이 약속어음을 은행에 양도하고 은행은 이에 대한 대가로 약속어음 금액의 일부(할인 수수료 등)를 제한한 후 현금을 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총자산 증가율은 2013년 4.6%에서 2014년 4.3%로 소폭 둔화된 이후, 2017년 7.6%로 개선됨
 - 2018년 총자산 증가율은 5.8%로 전년 대비 1.8%p 하락함
- 기업의 성장성을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대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되고 중소기업의 성장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성 지표는 모두 하락함
 - 2014~2016년 대기업의 성장성은 둔화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당히 개선됨
 - 2014~2016년 대기업 매출액증가율은 음(-)의 값을 가져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상승함
 - 2014~2015년 대기업 총자산 증가율은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상승함
 - 2018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성장성 지표가 하락하였는데, 특히 매출액 증가율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남
 - 2018년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의 경우 전년 대비 5.2%p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7.8%p 하락함
 - 2018년 총자산 증가율은 대기업이 전년 대비 2.4%p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은 1.3%p 하락함
 -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최근 중소기업의 둔화 폭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난 반면, 총자산 증가율의 경우 대기업의 둔화 폭이 중소기업보다 소폭 크게 나타남

<표 V-1> 기업의 성장성

(단위: %)

연도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13	2.1	0.3	5.6	4.6	3.6	7.9
2014	1.3	-0.4	4.4	4.3	3.3	7.5
2015	0.3	-4.7	8	5.7	2.6	12.1
2016	2.6	-1.6	8.9	6.3	3.7	11.6
2017	9.2	7.9	11	7.6	5.7	11.5
2018	4.0	2.7	3.2	5.8	3.3	10.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기업의 수익성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다가 2018년 다소 악화됨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3년 4.1%에서 2017년 6.1%로 상승하였다가 2018년 5.6%로 전년 대비 0.5%p 하락함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2013년 2.9%에서 2017년 6.1%로 상승한 후, 2018년에는 0.8%p 하락하여 5.3% 수준임

-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수익성을 살펴보면, 최근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모두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모두 악화 추세로 돌아섬
 - 하지만 2018년 수익성 악화 정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났고, 특히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지표에서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2018년 대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2%로 전년 대비 0.4%p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 3.5%로 전년 대비 0.5%p 하락함
 - 2018년 대기업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6.8%로 전년 대비 1%p 하락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1%로 전년 대비 3.7%p 하락함

<표 V-2> 기업의 수익성

(단위: %)

연도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13년	4.1	4.7	3.2	2.9	3.0	2.6
2014년	4.0	4.4	3.1	3.3	3.7	2.7
2015년	4.7	5.5	3.5	4.4	5.4	3.1
2016년	5.5	6.6	3.9	4.7	5.5	3.5
2017년	6.1	7.6	4.0	6.1	7.8	6.8
2018년	5.6	7.2	3.5	5.3	6.8	3.1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 기업의 안정성은 대체로 개선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비율은 2013년 141.0%에서 매년 하락하여 2018년에 111.1%에 이룸
 - 차입 의존도는 2013년 31.5%에서 2014년 소폭 상승한 이후 개선 추세에 있음
 - 2018년 차입 의존도는 28.8%로, 2013년 대비 2.7%p 하락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업의 안정성을 비교해 보면, 중소기업의 안정성 수준은 여전히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2015년 크게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부채비율 하락 폭은 대기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2018년 대기업 부채비율은 2013년 대비 41.4%p 크게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8.8%p 하락하는 수준에 그침
 - 대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매년 하락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승 추세를 보여줌
 - 2018년 대기업 차입금 의존도는 23.8%로 2013년 대비 7.1%p 하락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8.2%로 2013년 대비 4.7%p 상승함

<표 V-3> 기업의 안정성

(단위: %)

연도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2013년	141.0	133.5	168.3	31.5	30.9	33.5
2014년	134.5	127.0	161.4	32.2	30.8	36.7
2015년	128.5	107.7	182.0	31.5	27.3	39.4
2016년	121.3	100.1	175.9	29.9	25.2	38.7
2017년	114.1	95.5	163.2	28.8	24.4	37.6
2018년	111.1	92.1	159.5	28.8	23.8	38.2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 연도

나. 자금조달 여건

- 본 소절에서는 Small Business Health Index(SBHI), 결제수단별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진단함
 - SBHI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위해 매월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생성·제공하는 지표로,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를 나타냄²⁵⁾

25) 설문조사는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의 경기 판단,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고용수준, 기업경영상 애로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계 경영계획 수립 및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함

- 경영 부문 항목을 매우 호전, 호전, 동일, 다소 악화, 매우 악화로 조사하여 각 척도별로 0~200점 점수를 부여한 후 가중치를 활용하여 종합지수를 작성함
- SBHI는 100 이상과 100 이하로 구분하여 해석이 가능한데, 100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 건강도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함
- 결제수단별 이용 현황 분석에서는 어음결제 비중, 어음부도율, 어음 지급기일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최근 SBHI 지표는 2015년과 비교하여 다소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특히 2020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격히 악화된 모습을 보여줌
- 2015년 이후 SBHI 지표는 100 이하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상황이 좋다’라고 응답한 기업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음
- 소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V-1] SBHI 추세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SBHI 지표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비제조업보다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제조업의 자금조달 사정은 비제조업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제조업의 경우 제조업과 비교하여 SBHI 지표가 더 낮지만, 그 추이는 대체로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업종에 상관없이 2020년 이후 자금조달 사정은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대비 최근 SBHI 지표는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더 악화됨
- 소기업과 중기업 간의 지표 차이는 비제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

[그림 V-2] 자금사정 실적 SBHI 지표: 제조업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V-3] 자금사정 실적 SBHI: 비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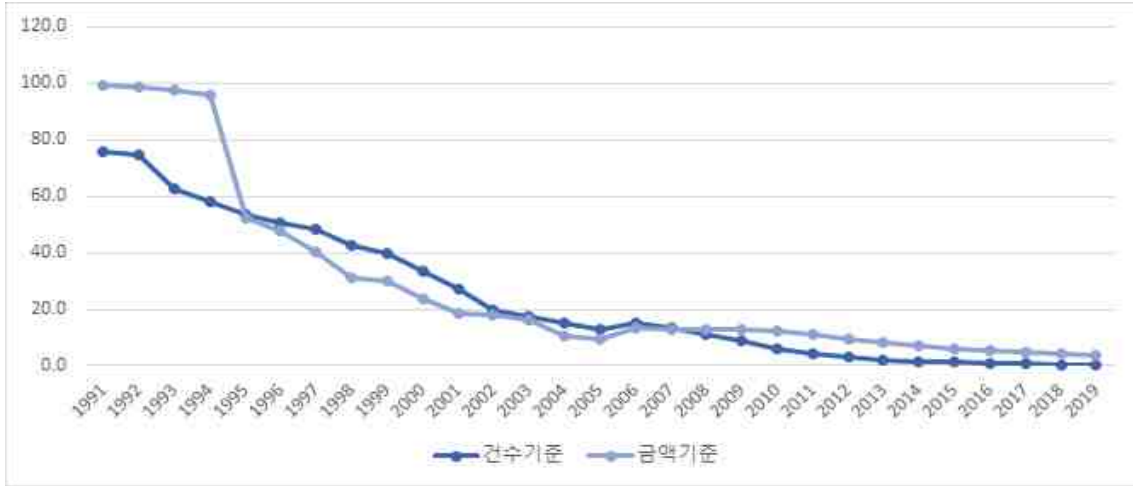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기업 간 어음·수표 사용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음
 - 신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어음·수표 사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991년 어음·수표 사용 비중은 결제건수 기준 75.9%, 결제금액 기준 99.1%로 어음·수표의 활용도가 높았음
 - 하지만 2019년 어음·수표 사용 비중은 결제건수 기준 0.3%, 결제금액 기준 3.6%로 어음의 활용도가 크게 낮아짐

[그림 V-4] 지급수단별 어음 및 수표 비중

(단위: %)



주: 1. 한국은행의 지급결제통계를 활용하여 각 연도 어음 및 수표의 비중을 산출함

2. 지급결제수단은 어음 및 수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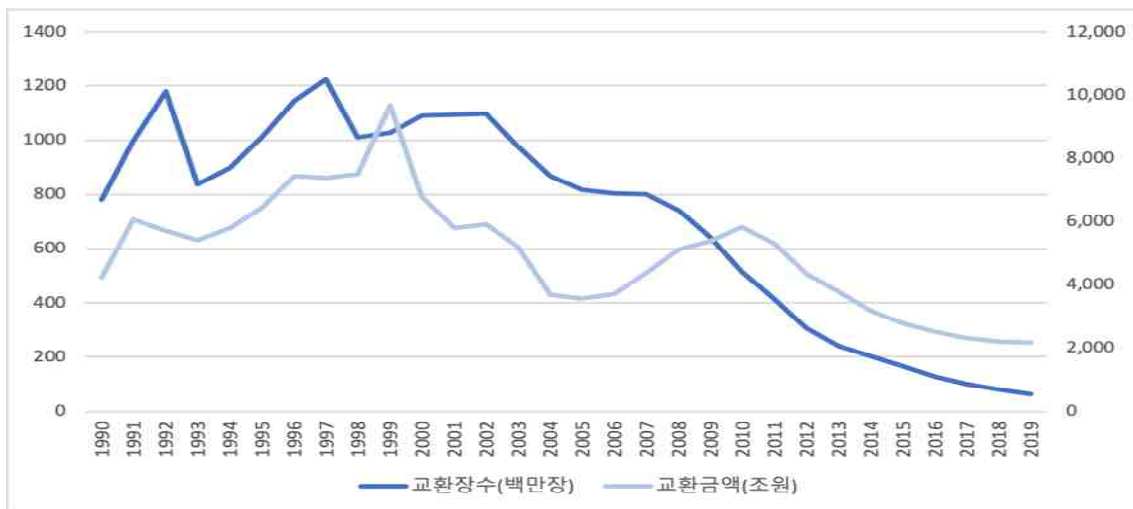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지급결제통계」

□ 어음교환금액 및 건수는 2008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2000년부터 어음대체 결제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어음교환금액 및 건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어음대체 결제제도에는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업전용 카드 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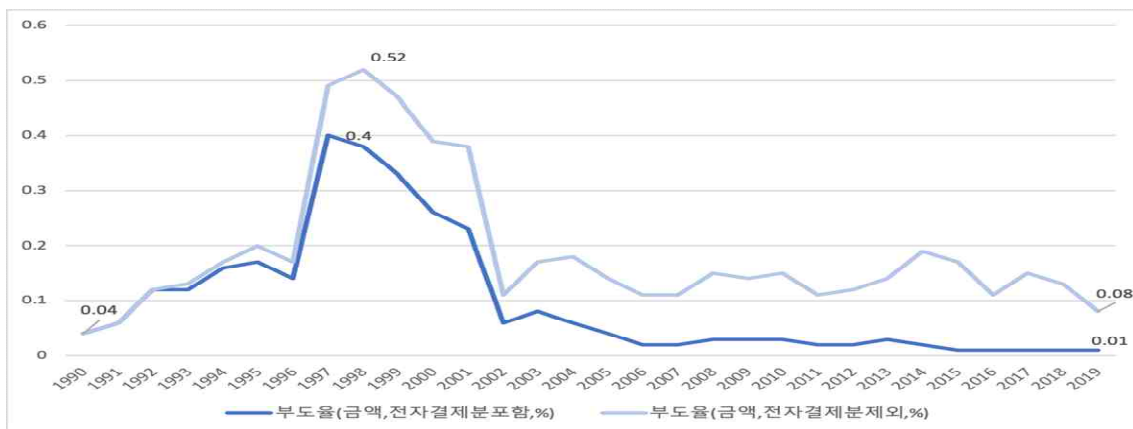
[그림 V-5] 지급수단별 어음교환금액 및 장수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지급결제통계」

- 어음부도율은 2000년대 초반 급격히 하락한 이후 다소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하락추세는 전자결제분을 포함한 지표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전자결제분 포함 어음 부도율은 0.01%로, 1990년 이후 최저점임
 - 2019년 기준 전자결제분 미포함 어음 부도율은 0.08%로, 1990년대 중후반 어음부도율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1990~1991년 시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임
 - 하지만 전자결제 시 기업부도가 잘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실질적인 어음부도율은 더 높은 수준일 수 있음²⁶⁾

[그림 V-6] 어음부도율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지급결제통계」

- 중소기업의 판매 및 구매대금 결제수단별 이용 비중을 살펴보면, 현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판매대금 결제 시 현금을 이용한 기업의 비중은 55.2%이고, 구매대금 결제 시 비중은 69.4%임
 - 현금 다음으로 신용카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판매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이용 비중은 28.1%이고, 구매대금 결제 시에는 17%로 나타남
 - 결제수단 중 현금과 약속어음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고 신용카드의 비중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26) 오상훈(2006) p.5 참고

<표 V-4> 판매대금 및 구매대금 결제수단

(단위: %)

연도	판매대금 결제수단				구매대금 결제수단			
	현금	약속어음	신용카드	외상 및 기타	현금	약속어음	신용카드	외상 및 기타
2014	56.8	8.3	27.2	7.6	79.4	3.4	10.9	6.3
2015	60.5	8.0	27.1	4.3	84.3	3.7	7.8	4.1
2016	59.6	7.4	26.9	6.0	76.4	4.1	15.0	4.5
2017	56.0	6.8	28.8	8.4	76.4	2.8	14.7	6.2
2018	55.2	6.0	28.1	10.6	69.4	2.7	17.0	0.2

주: 현금은 수표를 포함하며, 약속어음은 전자방식을 포함함
 자료: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각 연도

- 판매대금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업종에 따라 주로 활용하는 주요 결제수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건설업에서는 현금, 제조업에서는 약속어음, 서비스업에서는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제조업의 약속어음 결제 비중은 14.6%로 다른 업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이는 전체 평균 6%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임
 - 건설업의 현금결제 비중은 75.3%로 다른 결제수단인 약속어음과 신용카드의 결제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 서비스업의 신용카드 결제 비중은 41.8%로 다른 업종의 결제 비중 1~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표 V-5> 2018년 업종별 판매대금 결제수단

(단위: %)

업종	판매대금 결제수단			
	현금	약속어음	신용카드	외상 및 기타
제조업	62.5	14.6	2.4	20.5
건설업	75.3	6.0	1.2	17.6
서비스업	49.5	2.9	41.8	5.8

자료: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각 연도

- 업종별 연도별로 약속어음 비중을 살펴보면, 대체로 약속어음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제조업의 약속어음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그 비중은 매년 하락함

- 약속어음 비중의 하락 추이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서도 나타남
- 2018년 제조업의 약속어음 비중은 2014년 대비 5.8%p 하락하였으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3.2%p,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0.2%p 하락함

<표 V-6> 연도별·업종별 약속어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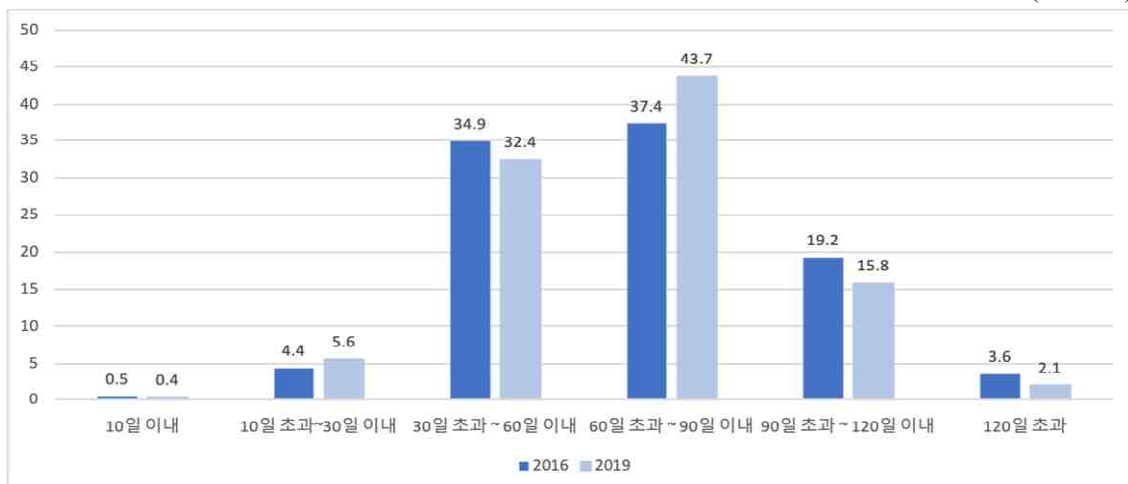
연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14	20.4	9.2	3.1
2015	19.4	7.9	3.1
2016	16.7	10.1	3.1
2017	16.8	7.5	2.5
2018	14.6	6.0	2.9

자료: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각 연도

-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의 평균 지급(결제)기한의 분포를 살펴보면, 과반수가 넘는 기업들이 30일 초과 90일 이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기준, 받은 약속어음의 평균 지급기일이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기업의 비중은 76.1%로 나타남
 - 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은 60일 초과 90일 이내로, 그 비중은 2019년 기준 43.7%임
 - 2016년과 2019년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 분포를 살펴보면, 분포의 평균은 증가하고 분산은 작아졌음을 알 수 있음

[그림 V-7]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일: 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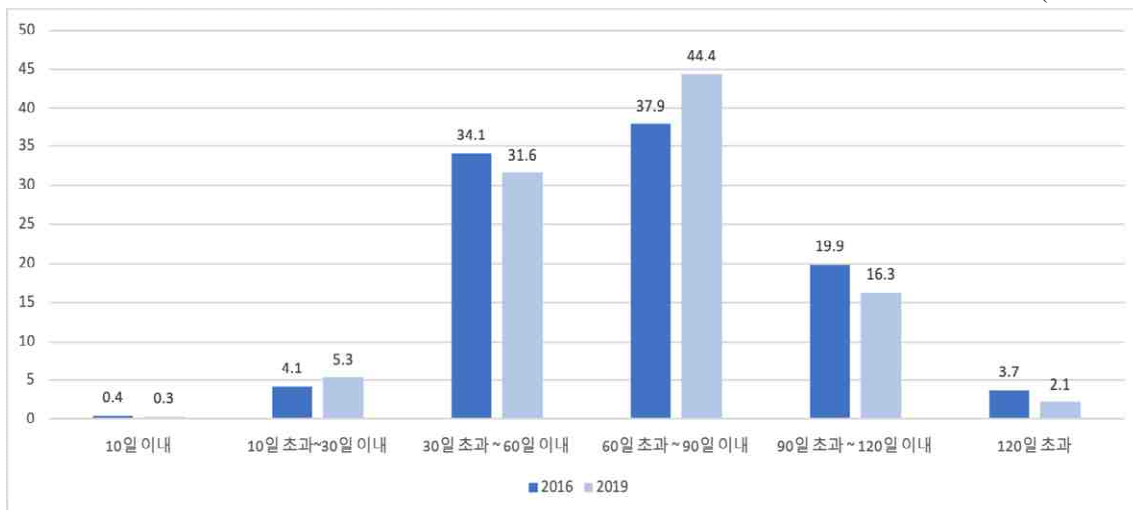


자료: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소기업의 수취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한 분포는 전체 기업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남
 - 2019년 기준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 60일 초과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급기일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31.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두 지급기일 구간에 대한 기업의 비중은 76%로 상당히 높음
 - 2019년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 분포의 평균은 2016년 대비 증가함

[그림 V-8]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일: 소기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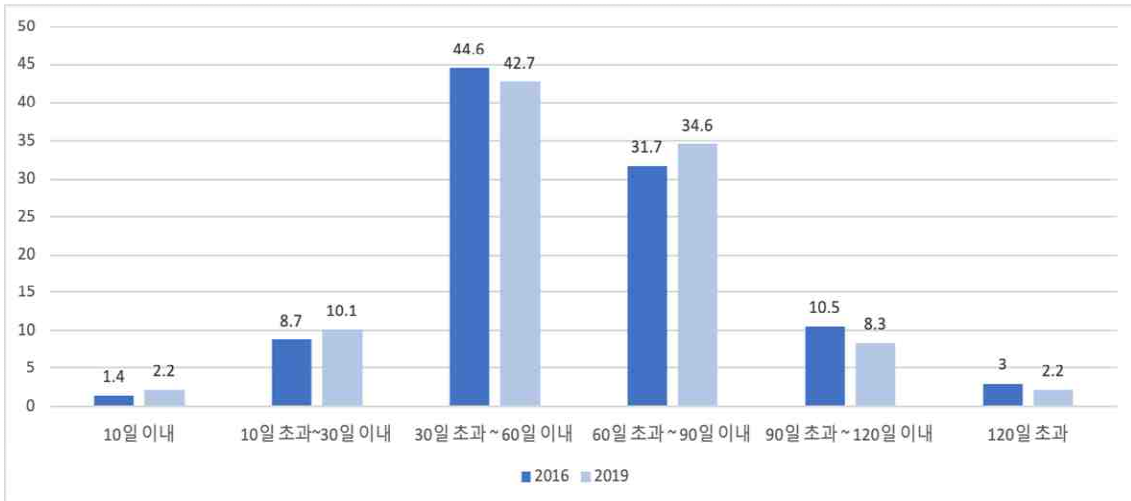


자료: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중기업의 경우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한은 평균적으로 소기업의 경우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남
 - 소기업의 경우와 달리, 2019년 기준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 30일 초과 6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급기일 60일 초과 9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의 비중은 34.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하지만 두 지급기일 구간에 대한 기업의 비중은 77.3%로, 소기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
 - 2019년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 분포의 평균은 2016의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함

[그림 V-9] 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일: 중기업

(단위: %)



자료: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기업들은 대체로 수취한 약속어음을 조기 할인하여 현금화하거나 만기까지 소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약속어음을 만기까지 소지한 기업의 비중은 45.1%이고, 은행할인을 한 기업의 비중은 41.2%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취 약속어음을 활용함

<표 V-7> 수취 약속어음 활용방법

(단위: %)

연도	은행할인	비은행금융기관 할인	사채업자 할인	지급수단으로 활용	만기까지 소지
2014	37.0	0.3	0.5	19.2	42.9
2015	33.4	0.6	0.6	20.8	44.6
2016	36.6	0.3	0.4	26.2	36.5
2017	35.0	1.1	0.5	19.7	43.7
2018	41.2	0.3	0.7	12.7	45.1

자료: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각 연도

- 최근 조기 할인하는 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 때문으로 생각됨

- 수취 약속어음 평균 지급(결제)기한 분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분포의 평균이 최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의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길어짐을 의미함
- 지급기일이 길어지게 되면 기업들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현금화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이는 은행할인에 따른 이자비용 등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다. 경제상황에 따른 어음의 활용 및 부도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향후 경제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어음 활용 및 부도 위험 수준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즉 경제여건이 악화될수록 약속어음 활용 및 부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경제여건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소절에서는 경제여건이 어음의 활용 및 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여건과 어음 활용 및 부도 간의 관계를 추정함
 - Prais-Winsten AR(1) 추정방법
 - 차분한 회귀방정식을 OLS 추정
 -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1995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시계열자료를 활용함
 - 종속변수로 어음교환장수와 어음으로 인한 부도업체 수의 로그값을 사용함
 -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을수록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이는 어음발행건수 및 어음부도에 양(+)의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스크 프리미엄을 설명변수에 포함함
 - 리스크 프리미엄 변수는 회사채 3년 평균 수익률(AA-등급)에서 국고채(무위험채권) 3년 평균 수익률을 차감하여 생성함
 - 경제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설명변수에 포함함
 - 동행지수 순변동치가 100보다 크면 현재 경기가 추세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작으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하고 있음을 의미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00보다 크면 경기가 앞으로 추세 이상 성장할 것임을 나타내고 100보다 작으면 추세 이하 성장할 것임을 보여줌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100을 차감한 값으로, 0보다 크면 추세 이상의 성장을 의미하고 0보다 작으면 추세 이하의 성장을 의미함
-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음

$$y_t = \alpha + X_t\beta + \gamma t + \epsilon_t$$

- y_t : 어음교환장수의 로그값, (어음으로 인한) 부도업체 수의 로그값
- X_t : 리스크 프리미엄, 경제성장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
- t : 시간 추세를 통제하기 위해 시간변수를 설명변수에 포함함
- ϵ_t : 오차항

□ 추정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는 <표 V-8>에 정리되어 있음

<표 V-8> 기초통계량

(단위: 건, 개, %)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오차	최솟값	최댓값
교환장수	300	54,227	33,293	3,823	110,862
부도업체수	300	386	513	15	3,377
리스크 프리미엄	300	0.79	0.91	-0.19	9.35
경제성장률	300	1.02	1.30	-6.80	4.40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0]	299	0.46	1.90	-7.00	5.20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	299	0.35	2.17	-8.00	5.10

주: 현금은 수표를 포함하며, 약속어음은 전자방식을 포함함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리스크 프리미엄의 상승은 어음교환 및 부도업체 수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추정방법에 상관없이 리스크 프리미엄과 어음교환 및 부도업체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짐

- 또한 Prais-Winsten AR(1) 추정 결과, 향후 경기가 악화되는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음으로 인한 부도업체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0보다 작을수록 부도업체 수가 증가함을 의미함

<표 V-9> 경제여건과 어음 활용 및 부도 간의 관계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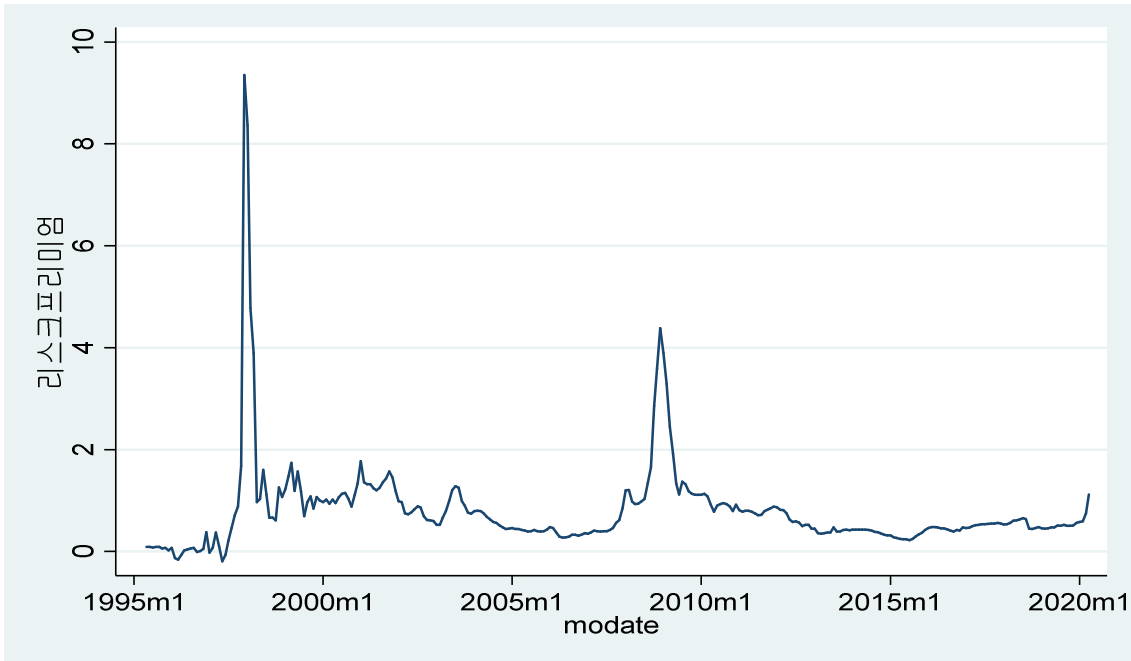
모형	1	2	3	4
추정방법	Prais-Winsten AR(1)	Prais-Winsten AR(1)	OLS	OLS
종속변수	log (어음교환장수)	log (부도업체 수)	d.log (어음교환장수)	d.log (부도업체 수)
리스크 프리미엄	0.013*** (0.005)	0.085*** (0.016)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0]	0.021 (0.016)	0.015 (0.01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	0.001 (0.010)	-0.064*** (0.013)		
시간변수	-0.010*** (0.002)	-0.013*** (0.000)		
d.리스크 프리미엄			0.013*** (0.005)	0.080*** (0.013)
d.[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0]			0.021 (0.016)	-0.045 (0.031)
d.[선행지수 순환변동치-100]			0.001 (0.010)	-0.027 (0.023)
상수	16.059*** (1.244)	12.711*** (0.168)	-0.010* (0.005)	-0.014 (0.011)
표본수	299	299	298	298

- 주: 1. d는 차분을 의미함
 2. () 안은 강건한 표준오차를 의미함
 3.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저자 작성

- 본 소절의 추정결과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불안정해질수록 어음교환 및 부도업체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즉 코로나-19 이후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어음교환 및 부도업체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경제가 불안정했던 시기에 높게 나타났음
 - 2020년에 들어서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은 증가할 조짐을 보임

[그림 V-10] 리스크 프리미엄 추세



자료: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제공한 회사채 3년 평균 수익률(AA-등급)과 국고채(무위험 채권) 3년 평균 수익률을 사용하여 저자 작성

라. 소결

-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는 대체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안정성 지표의 경우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개선 속도가 대기업에 비해 느리고 차입금 의존도는 다소 높아지는 모습을 보임
 - 소기업의 자금사정 여건은 중기업보다 더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인해 어음결제 비중 및 어음 부도율이 감소하고 현금성 결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는 긍정적으로 평가됨
 - 지급결제수단 다양화 정책으로 어음의 사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음 부도율 역시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에 있음
 - 하지만 2018년 기준 제조업의 경우 약속어음 비중이 14.6%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이는 제Ⅳ장 제2절에서 다른 자료를 활용하여 보여준 결과와도 유사함

- 상당수 기업의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은 6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며 소기업의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이 중기업의 경우보다 더 길게 나타남
 - 약속어음 평균 지급기일이 짧을수록 자금조달은 원활하게 이루어짐
 - 하지만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길수록 기업들은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은행할인을 통한 조기 현금화를 더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이는 기업의 은행할인 이자비용 등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많은 기업들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조기 현금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약속어음 수취기업 중 은행할인을 통해 조기에 현금화한 기업의 비중은 약 41%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경제여건이 악화될수록 은행할인 비중이 증가할 수 있음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향후 경제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어음 활용 및 부도업체 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본 절에서 수행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리스크 프리미엄 증가로 인해 어음 활용도 및 부도업체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예상되고, 그 결과 리스크 프리미엄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향후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될수록 부도업체 수가 증가함을 보여줌

- 경제 및 경영여건을 종합해 볼 때 중소기업 금융의 관점에서 결제수단에 따른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장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한 본 조세특례의 필요성은 인정됨
 - 어음 결제는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늦은 결제일로 인한 자금 운용의 어려움, 할인에 따른 비용, 연쇄부도 위험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현금결제 비중이 증가하고 어음결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업종,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여전히 높은 수준의 어음결제 비중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하고, 결제기한 역시 좀 더 단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제 및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존재함
 -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어음의 대체수단 중 하나인 상생결제제도는 약속어음 이용비율을 줄이고 어음의 부작용 및 부도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어음은 현금 유동성을 약화시키지만 상생결제제도는 이를 강화시킴
 - 어음 발행기업의 부도는 어음 수취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 위험을 증가시키는 반면, 상생결제제도는 연쇄부도 위험이 없음
 - 상생결제제도는 하도급 대금결제에도 활용이 가능함
 - 상생결제제도하에서는 구매기업의 신용도로 할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인비용이 낮으며, 이는 자금조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2.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의 적절성

- 본 절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를 중심으로 본 조세특례가 상생결제제도의 경제적 유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함

가. 지원 대상

- 본 조세특례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경영자로,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제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여기서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의미함²⁷⁾
 - 중소기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주된 업종이 소비성 서비스업 등이 아닌 기업
 -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27)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 대기업은 세제혜택이 아니더라도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존재하여 지원 대상 배제의 타당성이 인정됨
 - 대기업의 경우 상생결제제도 이용실적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존재함
 -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같은 유인이 존재하지 않고 본 특례제도를 통한 세제혜택이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유인할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됨
- 본 조세특례 적용 대상은 협력기업(1~N차 거래기업)인 중견·중소기업으로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은 본 조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됨
- 이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다른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발행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 일반적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최상위 구매기업이지만, 신용등급이 우수한 중견·중소기업도 최상위 구매기업이 될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제도상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은 없음
 - 2018년 9월부터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이 제도는 최상위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하위 거래단계에만 적용되는 제도임
-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라는 본 조세특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상생결제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상위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활발한 거래가 필수적임
 - 상생결제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는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에서 더 기대되기 때문에 중견·중소기업의 상생결제제도 활용도 제고는 중요함
 -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파급효과에 의해 더 많은 중견·중소기업들을 제도권 안으로 유인할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상생결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상생결제제도 최상위 구매기업 중 대기업·공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나 중견·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공공기업 비중은 2015년 38.6%에서 2019년 49.8%로 상승함
 - 반면 중견·중소기업 비중은 2015년 61.4%에서 2019년 50.2%로 감소함
 -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의 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하는 속도가 대기업보다 느려서 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중견·중소기업의 수가 많지 않은 영향도 있을 수 있겠으나,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 제공 부족으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 없음

〈표 V-10〉 상생결제 최상위 구매기업 수

(단위: 개, %)

연도	대기업	공공기관	대기업·공공기관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중소기업		구매기업 전체
			소계	비중			소계	비중	
2015	57	4	61	38.6	81	16	97	61.4	158
2016	64	22	86	41.0	103	21	124	59.1	210
2017	82	24	106	44.9	103	27	130	55.1	236
2018	94	32	126	46.7	121	23	144	53.3	270
2019	99	47	146	49.8	126	21	147	50.2	293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현금성 결제 비율과 약속어음 결제금액에 대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들은 본 특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존재하여 보완이 요구됨
 - 전체 구매대금 지급금액 중 현금성 결제 금액의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상생결제를 현금성 결제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제도의 목적인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을 저해할 수 있음
 - 상생결제를 현금성 결제로 간주하지 않을 경우 상생결제 이용이 현금성 결제 비중을 낮춰 본 조세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약속어음 결제금액이 직전 과세연도 수준보다 높아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은 비중이 아닌 금액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경제가 성장하거나 위축될 때 현금결제, 현금성 결제, 상생결제, 어음결제의 사용 증감 여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각 지급수단별 금액이 아니라 각 지급수단별 비중임
- 예를 들어, 기업이 성장하거나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 모든 지급결제수단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어음 결제금액도 증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때 현금 및 현금성 결제금액의 증가 속도가 어음 결제금액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다면 어음 결제금액의 비중은 감소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는 현금 및 현금성 결제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음결제 이용을 줄이는 본 조세특례의 취지에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어음 결제금액의 증가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지원 방법 및 지원 규모

- 상생결제제도는 특정 기업집단 간 거래가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일반거래에 적용되므로 조세지출이 재정지출보다 더 바람직함
 - 상생결제 적용 대상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지며, 잠재적으로 거래를 하는 모든 기업이 적용 대상이므로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보다는 조세지출이 좀 더 바람직함
- 본 조세특례의 목적은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여 상생결제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임
 - 본 조세특례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부담 경감 편익이 기업의 상생결제 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함
 - 중견·중소기업은 세부담 경감 정도와 상생결제제도 이용에 따른 비용을 고려하여 상생결제제도 이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본 조세특례로 인한 경제적 유인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부담 경감 편익이 상생결제수단 이용에 따른 비용보다 커야 함
- 상생결제제도 이용에 따른 비용에는 명시적 비용뿐 아니라 다양한 암묵적 비용도 발생함

-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려면 구매기업과 거래기업의 거래은행이 동일해야 함
 - 만약 주거래 은행이 다르다면 계좌 개설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함
 - 상생결제제도 이용 시 시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상위 협력기업이 상생결제제도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최상위 구매기업이 결제한 판매대금 중 하위 협력기업의 채권 지급액은 은행의 결제금액 예치계좌에 예치되어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만약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하위 협력기업의 채권 지급액을 결제기한까지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해당 투자수익률만큼 기회비용이 발생함
 - 기업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은 세부담 경감 편익이 위와 같은 상생결제수단 이용에 따른 명시적·암묵적 비용보다 커야만 생겨남
- 본 조세특례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하여 공제율을 적용하므로 상생결제 지급금액이 클수록 공제혜택은 커짐
- 본 조세특례는 지급기일에 따라 결제금액의 0.1% 또는 0.2%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한도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임
 - 따라서 거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지급금액 규모가 클 것이므로 본 조세특례에 의한 세부담 경감 편익, 즉 공제혜택 수준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중견·중소기업의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매출채권 발행금액 통계를 보면, 공제혜택의 규모는 대체적으로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이, 2차 협력기업보다는 1차 협력기업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기준 중견기업의 상생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은 81억원으로, 중소기업의 평균 발행금액 15억원보다 4배 이상 많음
 - 중소기업 기준, 2019년 1차 협력기업의 상생매출채권 평균 발행금액은 17억원으로 2차 협력기업의 3억원보다 5배 이상 큼
 - 중견기업의 경우, 2018년까지 1차 협력기업의 평균 발행금액이 2차 협력기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2019년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한 2차 협력단계 중견기업이 1개만 존재했는데, 해당 중견기업의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이 1차 협력단계에 있는 중견기업들의 평균 발행금액보다 크게 나타남

- 상생결제제도상 협력단계가 하위로 갈수록 거래 규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상생 매출채권 발행금액의 규모 역시 하위 협력단계로 갈수록 작아짐
 - 이는 하위 협력단계로 갈수록 본 특례제도의 공제혜택이 작아짐을 의미함
 - 물론 기업들은 특정 협력단계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협력단계에서 거래하므로 실질적인 공제혜택 수준은 각 협력단계별로 얼마나 상생결제 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했느냐에 따라 결정됨

<표 V-11> 협력기업의 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

(단위: 억원)

연도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		3차 협력기업		1~3차 협력기업	
	중견	중소	중견	중소	중견	중소	중견	중소
2015	30	8	10	2	0	0	28	7
2016	66	15	58	4	1	0	64	13
2017	84	17	69	5	0	2	83	15
2018	95	17	74	3	1	4	92	15
2019	80	17	177	3	0	1	81	15

자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공 자료

- 본 조세특례를 통하여 일정 수준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지급금액의 규모가 상당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본 특례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 실제로 본 조세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의 규모는 흑자 중소기업의 약 10배 혹은 그 이상임
 - 2018년 기준 본 특례제도 수혜기업의 평균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48억원과 29억원인데, 흑자 중소기업의 경우는 각각 34억원과 2억원 수준임
 - 제IV장 제2절에서도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 비교를 통하여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규모가 큰 기업을 중심으로 본 조세특례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줌
 - 또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 공제혜택이 적기 때문에 본 조세특례의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 제공 측면에서 본 특례제도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

- 본 특례제도의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수혜기업의 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을 추정해 보면, 수혜기업들의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거래 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파악됨
 - 평균 상생결제 세액공제금액을 공제율인 0.1%와 0.2%로 나누어 평균 상생결제 지급금액을 추정해 보면, 2017년 기준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최소 415억원 최대 830억, 2018년 기준으로는 최소 1,840억, 최대 3,680억원으로 추정됨
 - 상생결제 지급금액은 기업의 전체 구매대금 지급금액의 일부이므로 수혜기업의 거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됨

<표 V-12> 본 조세특례 수혜기업과 흑자 중소기업의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수혜기업	흑자 중소기업	수혜기업	흑자 중소기업
평균 수입금액	39,768	3,429	54,750	3,403
평균 당기순이익	1,763	194	2,852	21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8~2019.

<표 V-13> 기업 평균 상생결제공제액 및 한도

(단위: 백만원)

변수	2017	2018
상생결제 공제 가능 금액	83	368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 공제받은 금액	8	7
상생결제금액(추정)	최댓값	83,000
	최솟값	41,500
		184,000

주: 상생결제금액 최솟값은 상생결제 공제액/0.1%로, 최댓값은 상생결제 공제액/0.2%로 산출함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

- 본 특례제도의 공제율은 제도의 이용을 유인하기에 다소 낮은 수준이라 판단됨
 - 2018년 중소기업의 평균 수입금액(매출액) 25억원을 기준으로 공제율 0.1%를 적용하여 본 특례제도의 공제혜택 수준을 여러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약 13만원 정도로 계산됨
 - 이는 중소기업의 평균 공제 감면금액, 1천 300만원의 1%에 해당함

- 또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 공제 혜택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 있음
 -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은 과세표준 수준에 따라 10%, 12%, 17%를 적용함
 - 2017년 기준 수혜기업의 본 특례제도를 통한 공제가능 금액의 평균은 8천 300만원이지만, 최저한세 적용으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의 평균은 800만원임
 - 2018년에는 수혜기업의 공제 가능 금액의 평균은 3억 7천만원이지만, 최저한세 적용 후 실제 공제금액의 평균은 700만원으로 나타남
 - 앞서 추정된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최솟값이 2017년 415억원, 2018년 1,84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공제 혜택 수준은 상생결제 지급금액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표 V-14>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세액공제 공제 혜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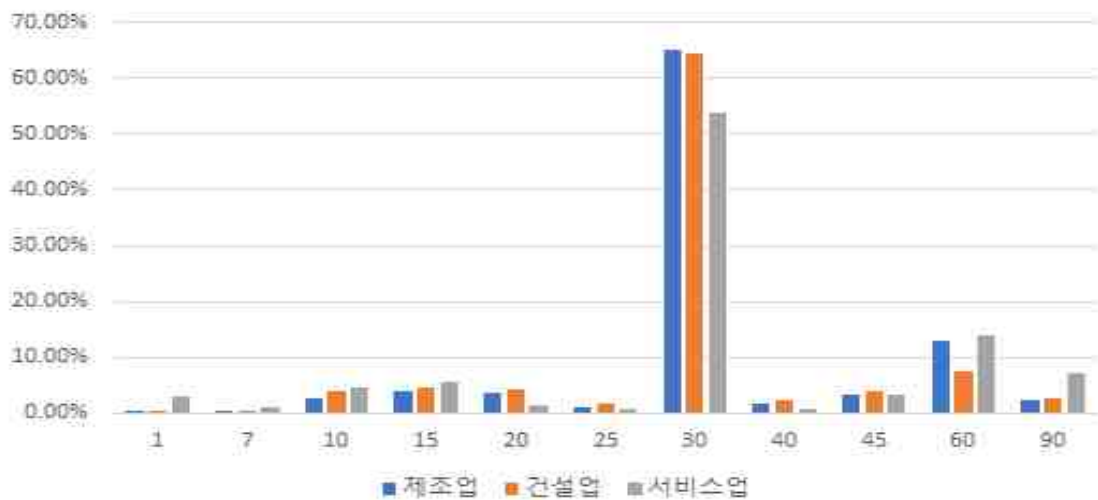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고
평균 수입금액(매출액)	25억원	- 2019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소기업 평균 수입 금액 이용
예상 구매대금 지급액	13억원	- 수입금액의 약 50% 적용 - 「중소기업실태조사」의 제조업 기준 매출액 대비 구매대금 지급액의 비율은 약 50%
예상 상생결제 지급금액	1.3억원	- 구매대금 지급액의 10% 적용 - 평균 어음결제 비중보다 높은 비율 적용
예상 상생결제 세액공제금액	13만원	- 평균 상생결제 지급기일이 30~35일이므로 공제율 0.1%를 적용
공제감면금액 대비 비중	1%	- 2019년 『국세통계연보』 기준 중소기업 평균 공제 감면금액은 1천 300만원 적용

자료: 저자 작성

- 공제율을 기업 규모 또는 거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공제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중견·중소기업 모두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어음 결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이 중견기업보다 큼
 -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거래 규모도 크지 않아 공제 혜택의 수준이 낮을 것임

- 본 조세특례는 지급기일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지급기일 구간을 세분화하여 높은 공제율 적용 가능성을 확대하면서 지급기일 단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 공제율은 지급기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0.2%, 15일 초과 60일 이내인 경우 0.1%로 적용하고 있으나, 높은 공제율을 적용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한 중견·중소기업들의 상생매출채권 평균 지급일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각각 35.2일과 31.3일로 나타남
 - 또한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일에 대한 대리변수로서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을 살펴보면, 2013~2019년 중소기업들의 평균 어음 수취기일은 30일(54~65%)과 60일(8~14%)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음
 - 평균 어음 수취기일이 15일 이내인 중소기업의 비중은 8~16%로 높지 않음

[그림 V-11]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 수취기일(2013-2019)



주: 모든 업종에서 비중이 1% 미만인 수취기일은 제외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 소결

- 본 조세특례는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여 기업의 지급결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을 본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한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음

-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를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함
 - 하지만 대기업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은 최상위 구매기업으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경제적 유인이 부족함
- 본 조세특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성 결제 비중 및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은 보완이 필요함
- 상생결제를 현금성 결제로 인정하지 않아서 현금성 결제의 비중 산출 시 상생결제제도의 이용이 오히려 현금성 결제 비중을 낮추는 상황이 발생함
 - 본 특례제도는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가 목적이므로 상생결제를 현금성 결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어음 결제금액보다는 그 비중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기업의 성장 또는 거래 규모의 증가로 어음 결제금액은 증가하지만 그 비중은 유지하거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
- 본 조세특례의 공제 혜택 수준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낮은 공제율로 인해 일정 수준의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규모가 상당해야 함
 -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 위주로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본 제도를 통한 공제 혜택 수준은 크지 않고, 이로 인해 제도의 이용 유인도 낮을 것이라 생각됨
 - 기업의 규모 또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공제 혜택의 수준은 최저한세를 적용하게 될 경우 더욱 낮아짐
- 기업들의 결제행태를 고려하여 공제율 적용 지급기일 구간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어음 등 결제수단의 평균 지급기일은 30일과 60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급기일 구간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을 높여주고 지급기일 단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재정지출 및 다른 지출제도와 중복성 검토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세·재정지출제도는 없음
 - 본 조세특례의 주 목적은 상생결제제도 이용의 활성화로 이를 통해 어음 이용을 줄이고 현금과 현금성 결제 이용을 장려하여 중소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재정지출제도는 존재하지 않음
 -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재정지출제도 대신 동반성장지수 평가제도를 통해 상생결제제도 사용을 유도하고 있음
 - 하지만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본 특례제도를 제외하고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유인하는 정책은 없음
- 2018년 9월부터 시행된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본 조세특례와 중복성이 존재하지만 상호보완적인 측면도 있음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구매대금 지급 시 판매대금 중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의 비율 또는 그 이상으로 현금 또는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하도록 함
 - 즉 동 법안은 상생결제제도 거래단계상 1~N차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 활용도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 본 조세특례와 중복성이 존재함
 - 하지만 상생결제뿐 아니라 현금 결제도 가능하므로 본 조세특례와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온전하게 중복되지 않음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유인하지는 못함
 - 본 특례제도의 경우, 1차 협력기업이 구매기업과의 거래에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경우 2차 협력기업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존재함

- 따라서 본 조세특례는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 시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을 제공하고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1~N차 협력기업 간 거래 시 상생결제제도 이용을 유인하므로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조세특례제도는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있으나, 이는 본 조세특례 도입 이전 일몰된 제도임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VI.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본 연구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또는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일몰 연장 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됨

- 효과성 분석에서는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 본 제도의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및 경영성과 개선효과를 평가함
 - 분석결과, 본 특례제도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상생결제제도에 대한 기여도도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됨
 - 중소기업 결제환경 개선효과는 명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상생결제제도 및 본 특례제도의 도입 이후 중소기업의 결제환경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본 특례제도의 효과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본 조세특례 세제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은 경향이 있어 본 특례제도의 중소기업 경영성과 개선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 지원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의 적절성, 다른 조세·재정지출제도와 중복성 등을 평가함
 - 본 특례제도를 통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 상생결제제도는 결제수단의 다변화로 어음결제 비중을 줄이고 어음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결제환경을 개선하고 결제수단에 따른 시장실패의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생결제제도는 대·중견·중소기업 간 일반거래에 적용되므로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적절함

- 현금성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은 본 특례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측면이 존재함
 -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상생결제가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지 않음
 - 기업의 성장 또는 거래 규모의 증가로 어음 결제금액이 증가하더라도 어음 결제 비중은 유지 또는 감소할 수 있는 현실이 반영되지 않음
 - 공제 혜택의 수준은 다소 낮아 제도 이용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함
 - 공제율 수준이 낮아서 상생결제를 통한 지급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커야만 일정 수준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중견·중소기업 위주로 본 특례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공제율은 지급기일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기업의 결제행태를 고려하여 지급기일 구간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본 특례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조세·재정지출제도는 없으나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법안은 중복성이 존재함
 - 하지만 온전히 중복되지 않아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일 것으로 평가됨
- 본 장에서는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 및 일몰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은 연장될 필요가 있음
-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결제환경과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려할 필요성이 인정됨
 - 어음결제 비중 감소 및 결제수단의 다변화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현금 유동성 및 대금지급, 할인비용 절감, 연쇄부도 위험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최근 악화된 경제 및 경영 여건은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을 시사함
 -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와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되는 추세임
 -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으로 어음의 이용이 증가하고 부도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임

- 중견·중소기업에 상생결제제도 이용 유인을 제공하는 제도는 본 특례제도가 유일하므로 일몰 연장을 통해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 하지만 본 특례제도는 현재 그 실효성이 미미한 수준이고 상생결제제도의 활용도 제고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우선적으로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본 조세특례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있고 제도의 활용도가 낮으므로 제도의 효과성 여부를 명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상생결제제도의 여러 장점은 기업의 결제환경 및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
 - 본 조세특례의 낮은 실효성은 기업들의 제도 이용 유인을 저해하는 제도상 문제들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됨
 -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상생결제제도 이용 활성화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본문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특례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적용요건, 공제율, 지급기일 등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만 함
- 최상위 구매기업인 중견·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견·중소기업이 최상위 구매기업으로서 상생결제제도를 이용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음
 - 최상위 구매기업과 1차 협력기업 간 거래가 이루어져야 1~N차 협력기업 간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생결제제도의 특성상 이는 상생결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항임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결제 비중과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함
 - 상생결제를 현금성 결제로 인정하거나 현금성 결제 비중 산출 시 전체 결제금액에서 상생결제금액을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적극적인 상생결제 이용으로 본 조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제거하여 제도의 목적 달성을 견인할 수 있음

- 어음 결제금액 유지 요건을 삭제 또는 금액이 아닌 비중으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경제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결제수단 이용행태를 반영하여 현실성을 높이면 서 어음결제 비중의 감소도 기대할 수 있음

- 공제율 인상을 검토하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우선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
 - 공제 혜택의 수준은 상생결제 지급금액 규모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급금액의 규모가 작은 경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중소기업은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규모도 작을 것임
 - 상생결제 지급금액의 규모가 작으면 본 특례제도의 공제 혜택 수준도 낮을 것이고 본 특례제도와 상생결제제도의 이용 유인 또한 낮아질 수 있음
 - 공제율 수준 결정 시 본 특례제도 이전에 운영되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참고할 수 있음
 -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지급기일이 30일 이내일 경우 0.5%로, 같은 지급기일에서의 본 특례제도 공제율 0.1% 또는 0.2%보다 5배 또는 2.5배 높은 수준임
 - 또한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액은 다양한 현금성 결제 지급금액에서 약속어음 결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상생결제 지급금액만 대상으로 하는 본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액보다 그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특례제도가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의 공제 혜택 수준에 상응하는 공제 혜택을 가지려면 공제율 수준은 0.5%를 초과할 수도 있음
 - 하지만 공제율을 0.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최대 공제율이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율을 인상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VI-1> 본 특례제도와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비교

(단위: %)

구분	적용대상액	공제율		
		15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상생결제 세액공제	상생결제 지급금액	0.2	0.1	0.1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	환어음 등 ¹⁾ 지급금액 - 약속어음 결제금액	0.5	0.5	0.15

주: 1) 환어음 등에는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7조의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 공제율 인상과 함께 최저한세의 적용 해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최저한세는 낮은 공제 수준을 더욱 낮추어 제도 이용 유인을 저해할 수 있음

- 현재 공제율은 지급기일을 두 구간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세 구간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많은 중소기업들의 평균 어음 지급·수취기일이 30일인 것을 감안하여 지급기일 구간을 15일 이내, 15일 초과 30일 이내, 30일 초과 60일 이내로 나누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때 15일 초과 30일 이내 구간의 공제율은 최대 공제율과 최소 공제율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음
 - 새로운 지급기일 구간의 적용은 지급기일이 30일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지급기일을 30일 이내로 줄이는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제도 이용 유인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2019.
- 금융결제원, 『2019 지급결제통계 분석』, 2020.
- 김빛마로·우석진·이동규,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김우현·윤성주·홍우형, 『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2019년 거래기업 상생결제제도 이용실태 조사』, 2020.
-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9.
- 백강, 『상생결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부, 2019.
- 오상훈, 『최근 어음부도율 하락원인과 지표의 유용성 점검』, KOSBI Issue Paper, 제21호, 중소기업연구원, 2006.
- 이상엽·홍우형·조형태,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V):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이상엽·김빛마로·홍우형·윤성만,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XI):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이항구, 『상생결제시스템 파급효과분석』, 산업연구원, 2014.
-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19.
- 한성민·남창우·이세환·유한욱·서은숙, 『201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중소기업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2018.
-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소기업금융실태조사」, 각 연도.
- 금융결제원, 「지급결제통계」, <http://www.kftc.or.kr/mobile/data/MobileStatsSubMain.do>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http://www.winwinpay.or.kr>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통계DB, 「중소기업실태조사」, 각 연도,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19>.

_____, 중소기업통계DB,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각 연도,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319>.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아직도 어음결제를 받나요? 이제, ‘상생결제’ 제도를 이용하세요!」,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222701921>, 검색일자: 2020. 4. 2.

_____, 「상생결제 100조 시대, 협력기업에 안전하고 이익이 되는 결제방법입니다」, <https://blog.naver.com/bizinfo1357/221422777792>, 검색일자: 2020. 4. 2.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지급결제통계」,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55/list.do?menuNo=2004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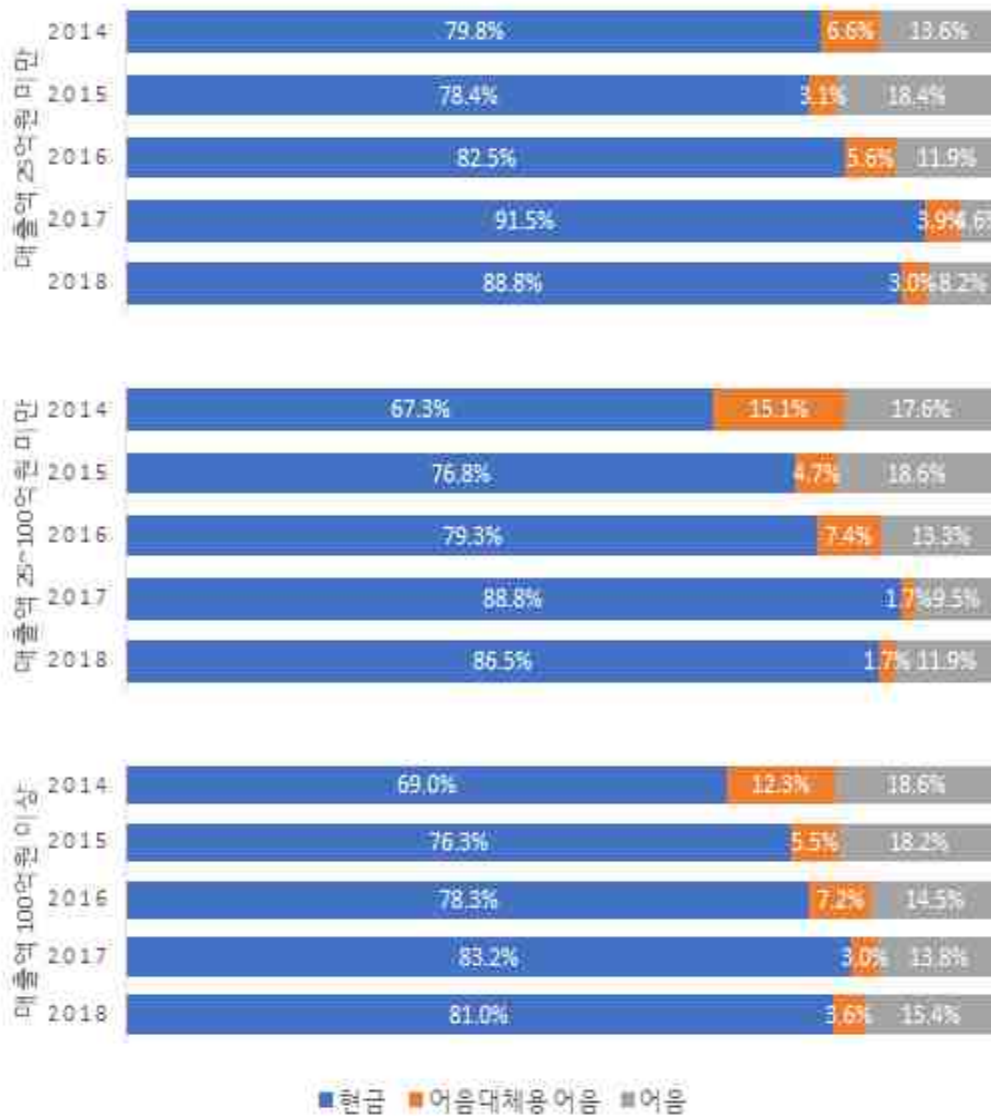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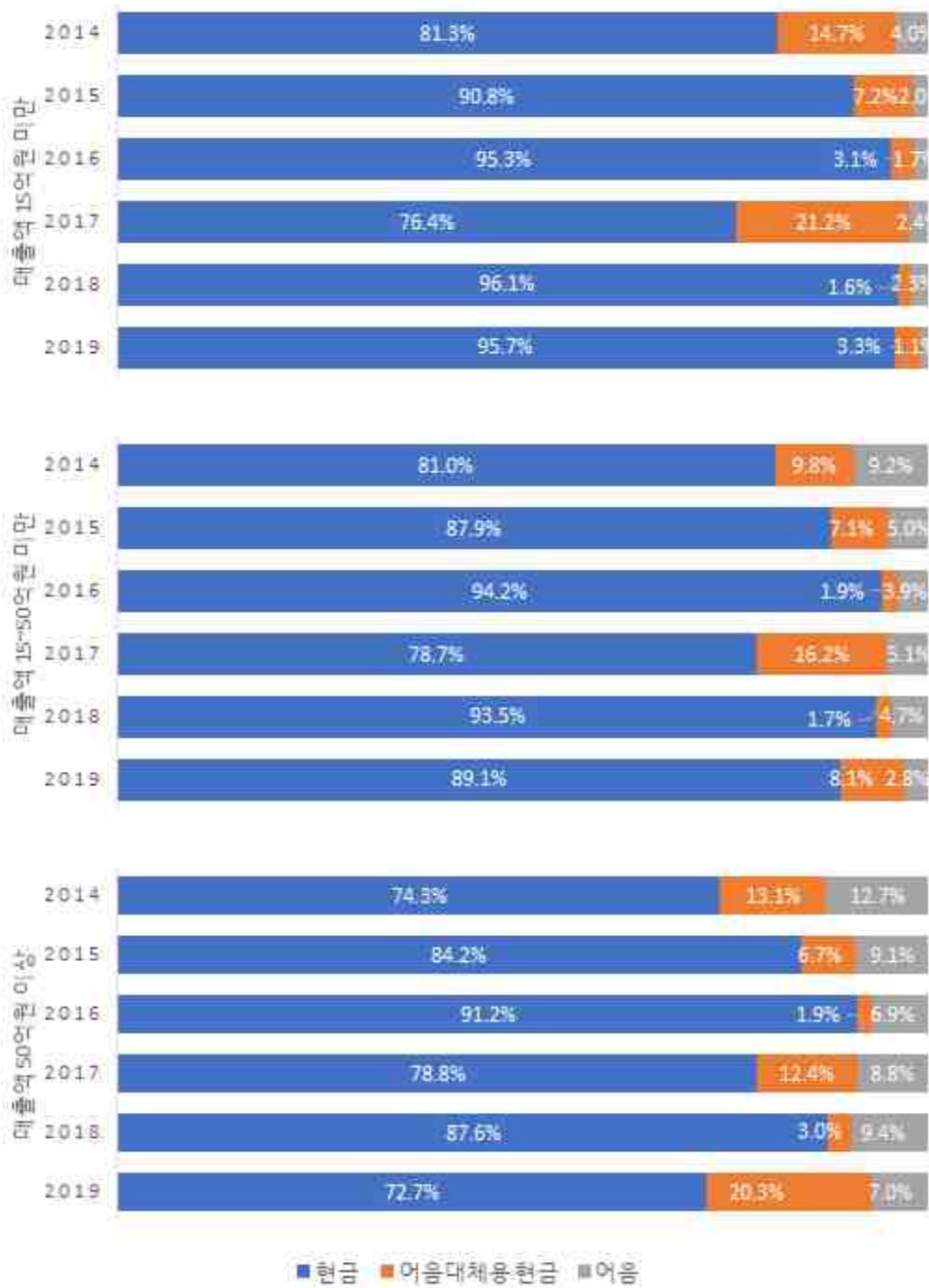
부 록

[부도 1] 판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수취비율(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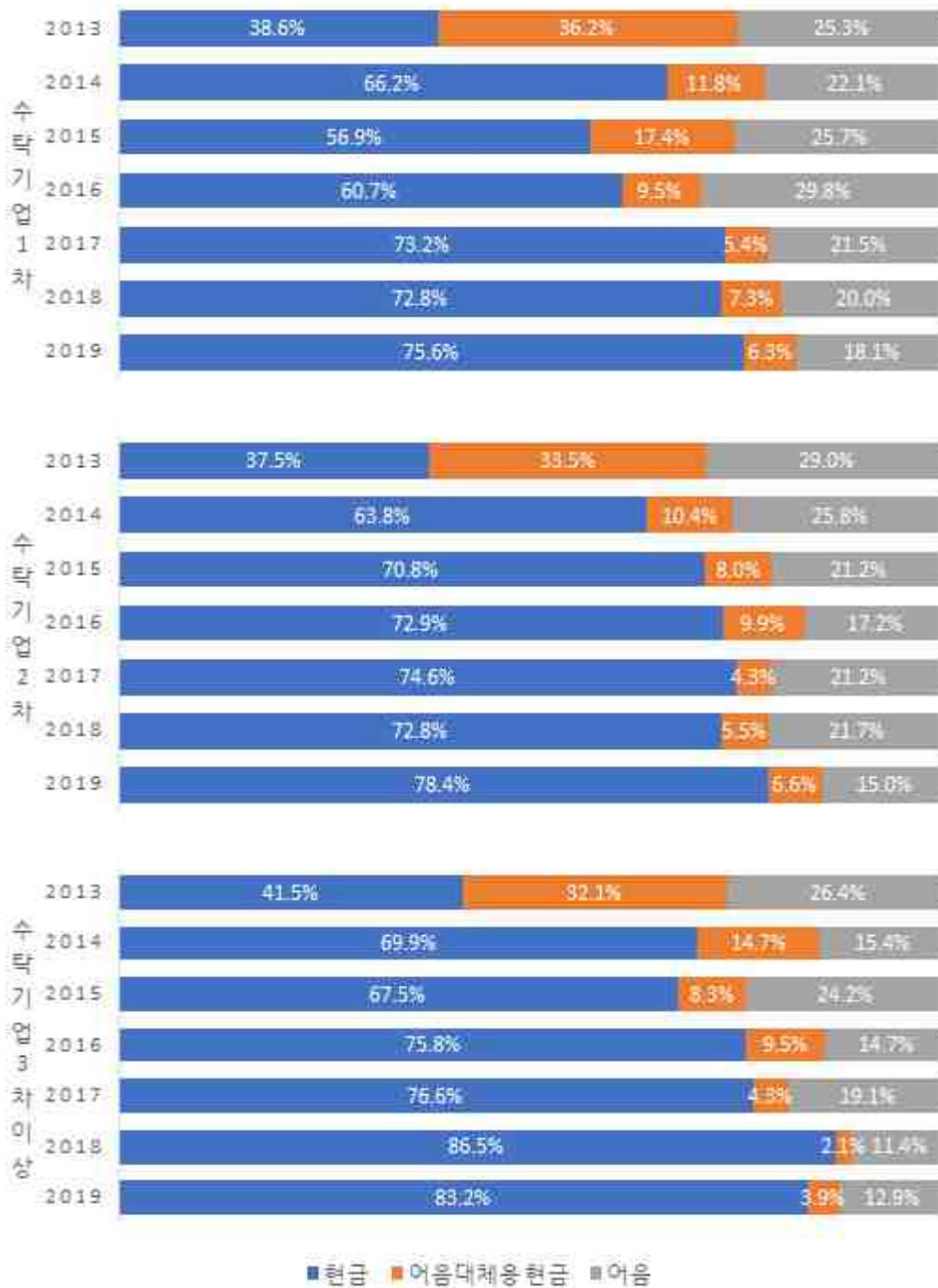
주: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2] 판매대금 매출액 규모별 평균 수취비율(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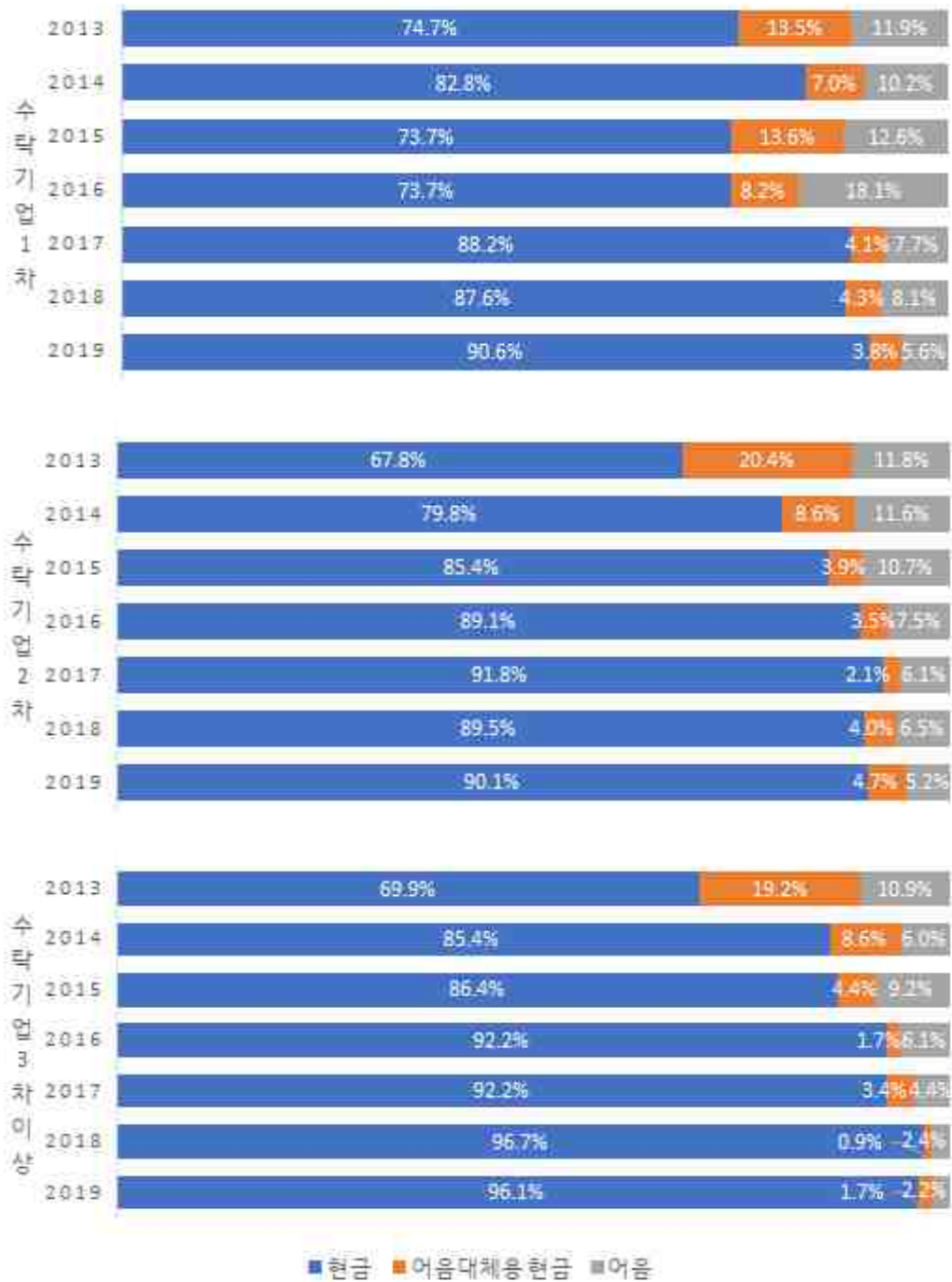
주: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3] 판매대금 수탁단계별 평균 수취비율(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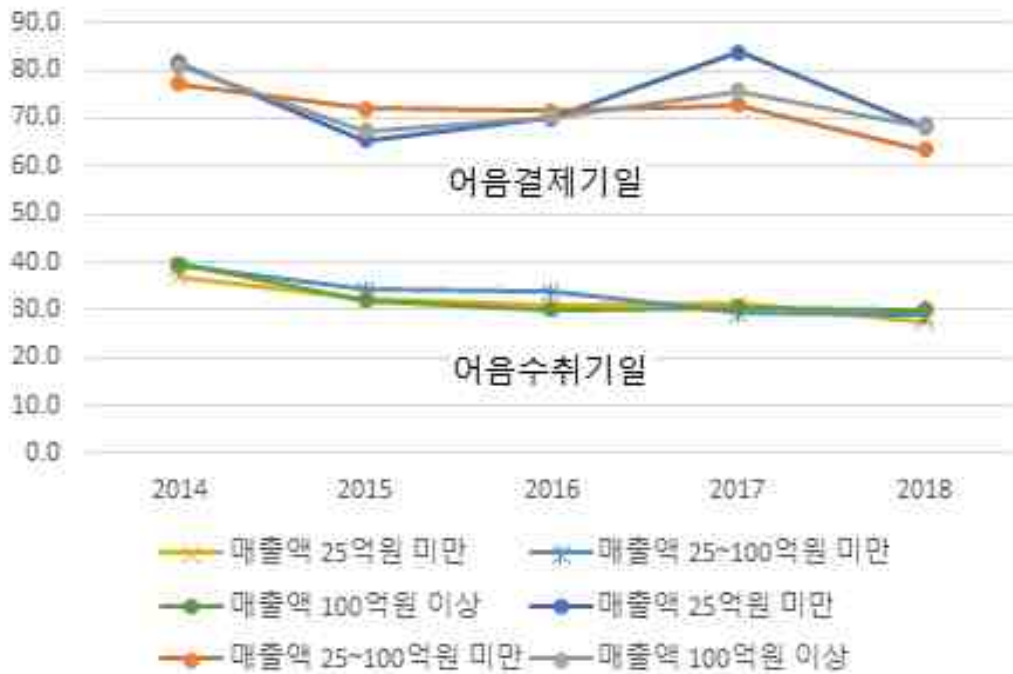
주: 1.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2.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아 재위탁을 하는 기업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4] 구매대금 수탁단계별 평균 지급비율(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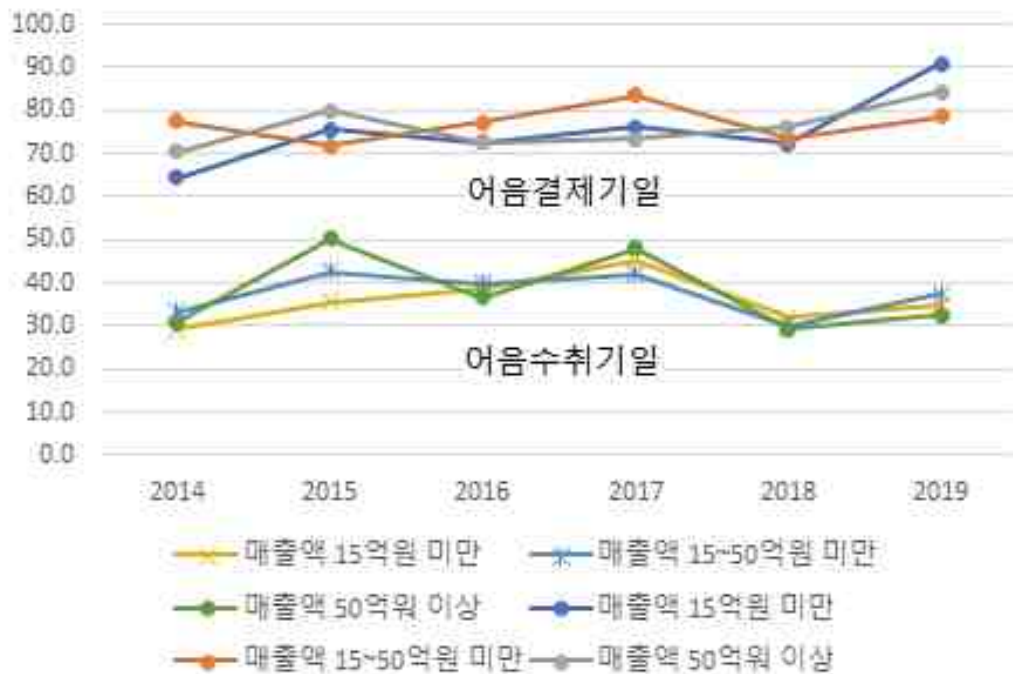
주: 1. 어음대체용 현금은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2.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아 재위탁을 하는 기업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5]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매출액 규모별 추세(건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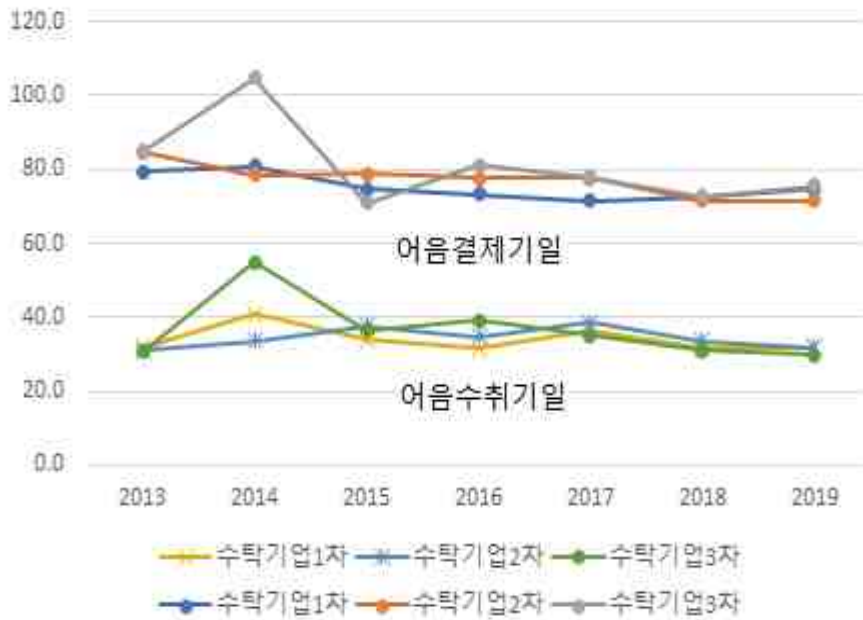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6]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매출액 규모별 추세(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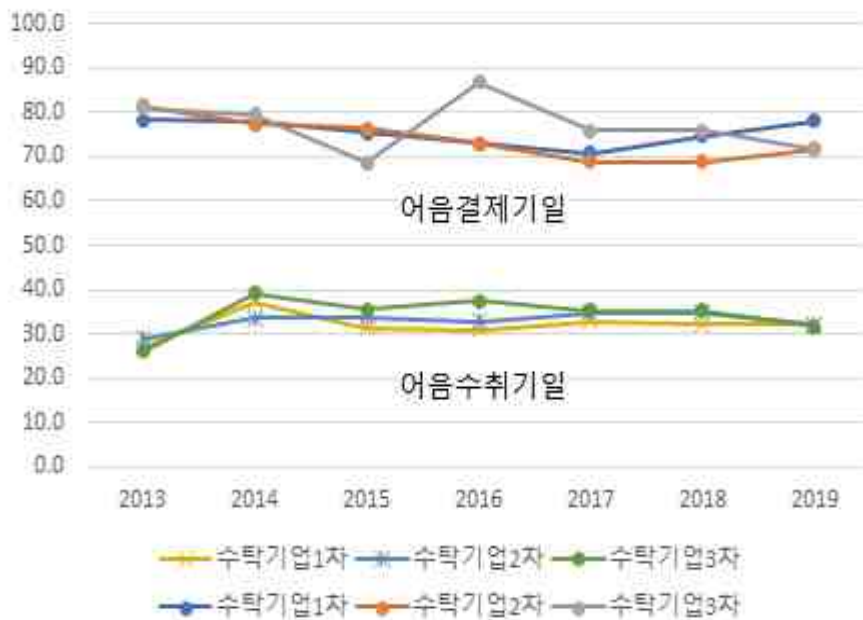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7] 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수취기일과 결제기일 수탁단계별 추세(제조업)



주: 1. 어음대체용 현금 =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2.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아 재위탁을 하는 기업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부도 8]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의 지급기일과 결제기일 수탁단계별 추세(제조업)



주: 1. 어음대체용 현금 = 구매자금대출, 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네트워크론 등을 포함
 2. 수탁기업은 위탁을 받아 재위탁을 하는 기업도 포함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2013~2019)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